

「천안 이동녕선생 생가지」 등 112건 충청남도 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천안 이동녕선생 생가지」 등 112건의 충청남도 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10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고 시 명 : 「천안 이동녕선생 생가지」 등 112건 충청남도 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사항

가. 대상 문화유산

연번	시군	지정종목	문화유산명	소재지	비고
1	천안	기념물	이동녕선생 생가지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동리 79-2	
2		문화유산자료	전씨시조단소 및 재실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금호1길 117-10	
3		문화유산자료	홍양호묘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 산 29-3	
4	공주	기념물	공주 황새바위 천주교순교유적	공주시 교동 1-20 외	통합고시
5		유형문화유산	공주향교	공주시 금성동 산5-1	
6		유형문화유산	공주 박약재	공주시 반포면 공암리 415-3	통합고시
7		문화유산자료	충현서원	공주시 반포면 공암리 381	
8		기념물	충현서원 유적	공주시 반포면 공암리 369-2	
9		기념물	공주 신관리석실고분	공주시 신관동 산14	
10		기념물	공주목 관아지	공주시 중동 330-1	통합고시
11		기념물	공주 중동성당	공주시 중동 31-2	
12		기념물	옥녀봉성	공주시 옥룡동 산 2-1	
13		기념물	공주 수원사지	공주시 옥룡동 111	통합고시
14		기념물	공주 금학동고분군	공주시 금학동 45-5	
15		기념물	공주 남혈사지	공주시 금학동 93	

16	보령	유형문화유산	대천 한내돌다리	보령시 동대동 809-1	
17		문화유산자료	보령 경찰서망루	보령시 대천동 171	
18		문화유산자료	이지함선생묘	보령시 주교면 고정리 산27-3	
19	아산	기념물	김옥균선생 유허	아산시 고군길 41	통합고시
20		기념물	아산향교	아산시 영인면 여민루길 82	
21		유형문화유산	여민루	아산시 여민루길 20	
22		문화유산자료	영인석불	아산시 영인면 아산리 615	
23		문화유산자료	영인오층석탑	아산시 영인면 아산리 615	
24		문화유산자료	관음사석조여래불상	아산시 영인면 아산리 668	
25		문화유산자료	관음사석탑	아산시 영인면 아산리 668	
26		기념물	배방산성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산49	통합고시
27		문화유산자료	김육비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310-1	
28		문화유산자료	신창 척화비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280-1번지	
29		기념물	신창향교	아산시 신창면 서부남로840번길 29	
30		문화유산자료	영괴대	아산시 온천대로 1459	통합고시
31		문화유산자료	온천리석불	아산시 온천대로 1459	
32		문화유산자료	이충무공사적비	아산시 온양2동 69-10	
33		문화유산자료	신정비	아산시 온천대로 1459	
34		문화유산자료	온양어의정	아산시 온천동 578	
35	서산	유형문화유산	서산객사	서산시 동헌로 149	통합고시
36		유형문화유산	서산 관아문및외동헌	서산시 관아문길 1	
37		유형문화유산	서산 동문동당간지주	서산시 동문동 832-34	
38		유형문화유산	서산 동문동오층석탑	서산시 동문동 832-14	
39		문화유산자료	읍내리귀부석	서산시 관아문길 1	
40		기념물	서산향교	서산시 향교1로 26	통합고시 (서산향교은행나무)
41		문화유산자료	성암서원	서산시 성암1로 45	
42	논산	유형문화유산	연산아문	논산시 황산벌로 1528-7	
43		유형문화유산	은진관촉리비로자나 석불입상	논산시 관촉로31번길 18-1	
44		기념물	은진향교	논산시 은진면 교촌리 19	통합고시
45		유형문화유산	익성군신도비 및 무석	논산시 은진면 용산리 산93-3	
46		유형문화유산	임리정	논산시 강경읍 금백리 20-8	통합고시
47		유형문화유산	팔괘정	논산시 강경읍 황산리 86	
48		문화유산자료	죽림서원	논산시 강경읍 금백로 20-3	
49	계룡	문화유산자료	염선재	계룡시 사계로1길 16	
50		문화유산자료	모원재	계룡시 왕대2길 6-10	통합고시
51		문화유산자료	두마신원재	계룡시 두마면 왕대2길 43	

52		유형문화유산	계룡산신도내주초석석재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1-2	
53		민속문화유산	계룡산 삼신당	계룡시 신도안면 용동리 565 외	
54		기념물	계룡 사계고택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96	
55	당진	기념물	당진면천읍성	당진시 동문1길 12-14	통합고시
56		기념물	면천향교	당진시 동문2길 36-7	
57		기념물	당진향교	당진시 교동2길 33-18	
58		기념물	당진 합덕제	당진시 합덕읍 성동리 395번지 일원	통합고시
59		기념물	당진합덕성당	당진시 합덕읍 합덕리 274번지	
60		문화유산자료	채운포석교비	당진시 채운동 1123	
61	부여	기념물	동남리전천왕사지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	통합고시 (낙화암)
62		기념물	부여구아리백제유적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 64 외	
63		기념물	부여부소산성 서복사지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 24외	
64		기념물	부여쌍북리요지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641-5 외	
65		기념물	부여향교	부여군 부여읍 의열로 21-3 외	
66		유형문화유산	금성산석불좌상	부여군 계백로 334-47	
67		유형문화유산	부여동헌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15	
68		유형문화유산	의열사비	부여군 석탑로남령길 36	
69		문화유산자료	고란사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산1번지	
70		문화유산자료	군창지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678-2	
71		문화유산자료	도강영당	부여군 부여읍 관북리 40-1번지	
72		문화유산자료	박물관석조여래입상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	
73		문화유산자료	백화정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678-2	
74		문화유산자료	사자루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678-2	
75		문화유산자료	삼층사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40-1번지	
76		문화유산자료	영일루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463	
77		문화유산자료	의열사	부여군 의열로29번길 11-33	
78		문화유산자료	팔각정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47	
79		문화유산자료	동사리석탑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	
80		문화유산자료	박물관석탑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	
81		문화유산자료	의열사	부여군 부여읍 의열로 29번길 11-33	
82		기념물	동남리사지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211-1외	
83		기념물	은산당산성	부여군 은산면 은산리 산1-1외	
84		기념물	호암사지	부여군 규암면 호암리 156-2외	통합고시 (천정대)
85		문화유산자료	홍산태봉산성	부여군 홍산면 북촌리 산12	

86	서천	기념물	비인향교	서천군 비인면 비인로 136번길 68	통합고시
87		문화유산자료	비인읍성	서천군 비인면 성내리 544-1 외	
88		기념물	서천 장암진성	서천군 장항읍 장암리 산1-1	
89		기념물	한산향교	서천군 한산면 한산향교길 76-31	통합고시
90		문화유산자료	한산읍성	서천군 한산면 지현리 152-3번지 외	
91		문화유산자료	지현리 삼층석탑	서천군 한산면 지현리 18	
92		기념물	서천향교	서천군 서천읍 서천향교길 53-5	
93	청양	기념물	우산성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산4-1 일원	
94		기념물	정산향교	청양군 정산면 서정향교길 20	
95		기념물	청양향교	청양군 청양읍 향교길 20-3	
96	홍성	기념물	결성향교	홍성군 결성면 홍남서로707번길 21-8	통합고시
97		기념물	홍성 결성읍성	홍성군 결성면 읍내리 산28-2번지	
98		문화유산자료	결성동헌	홍성군 결성면 홍남서로738번길 23	
99		기념물	홍주향교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1575번길 93	통합고시
100		문화유산자료	광경사지 삼층석탑	홍성군 홍성읍 도청대로 29-21	
101		문화유산자료	대교리 석불입상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540	
102		민속문화유산	김우열가옥	홍성군 갈산면 갈산로 79	통합고시
103		민속문화유산	전용일가옥	홍성군 갈산면 상촌로9번길 21-1	
104	예산	기념물	예산산성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275-8	통합고시
105		기념물	예산성당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 161번길 10	
106		기념물	예산 호서은행 본점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2	
107		기념물	예산향교	예산군 예산읍 향교길 31	
108	태안	기념물	태안읍성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299 일원	통합고시
109		기념물	태안향교	태안군 태안읍 백화1길 7	
110		유형문화유산	경이정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2길 1	
111		유형문화유산	태안 목애당	태안군 백화로 54	
112		문화유산자료	남문리 오층석탑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436-1	

나. 변경사유

- 「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주거·상업·공업 지역의 규제 범위 조정
- 「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에 따른 구역 조정, 허용기준 변경

다. 관련근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제74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 「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 「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

라. 기준의 적용

- 본 허용기준은 『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에 적용하며, 같은 조례 제26조 및 제27조 내 범위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함
- 고시일 이전에 현상변경 등 허가가 접수된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 고시를 적용함
-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약식영향진단을 생략함

마. 충청남도 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 충청남도 홈페이지(<https://www.chungnam.go.kr>)-알림마당-도정공고-공고·고시

3. 시 행 일 : 도보 고시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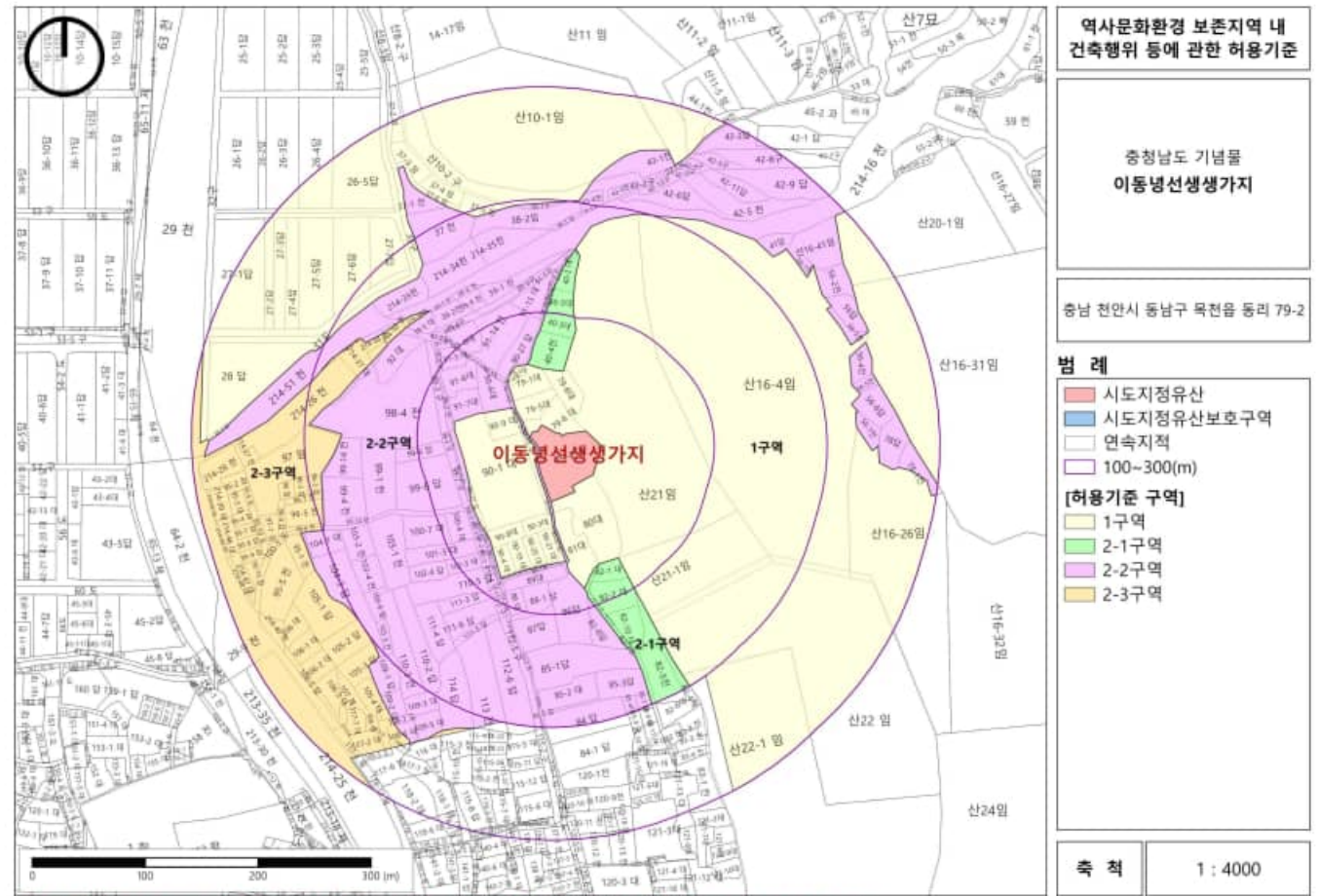
4. 연락처

- 충청남도 문화유산과 : 전화) 041-635-2452
 - 주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청 문화유산과
- 천안시 관광과 : 전화) 041-521-5180
 -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번영로 156, 천안시청 관광과
- 공주시 문화유산과 : 전화) 041-840-8424
 -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 문화유산과
- 보령시 관광과 : 전화) 041-930-6584
 - 주소 :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산로 77, 보령시청 관광과
- 아산시 문화유산과 : 전화) 041-536-8497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아산시청 문화유산과
- 서산시 문화예술과 : 전화) 041-660-2247
 - 주소 : 충청남도 서산시 관아문길 1, 서산시청 문화예술과

- 논산시 문화예술과 : 전화) 041-746-5416
 - 주소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논산시청 문화예술과
- 계룡시 문화체육관광실 : 전화) 042-840-2404
 - 주소 : 충청남도 계룡시 장안로 46, 계룡시청 문화체육관광실
- 당진시 문화예술과 : 전화) 041-350-3583
 - 주소 :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1로 1, 당진시청 문화예술과
- 부여군 문화유산과 : 전화) 041-830-2630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부여군청 문화유산과
- 서천군 문화체육과 : 전화) 041-950-4764
 - 주소 : 충청남도 서천군 서림로 19, 서천군청 문화체육과
- 청양군 문화체육과 : 전화) 041-940-2487
 - 주소 :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청양군청 문화체육과
- 홍성군 문화유산과 : 전화) 041-630-1693
 - 주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홍성군청 문화유산과
- 예산군 문화관광과 : 전화) 041-339-7332
 -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예산군청 문화관광과
- 태안군 문화예술과 : 전화) 041-670-5963
 - 주소 :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백화로 202, 태안군청 문화예술과

붙임 1. 이동녕선생 생가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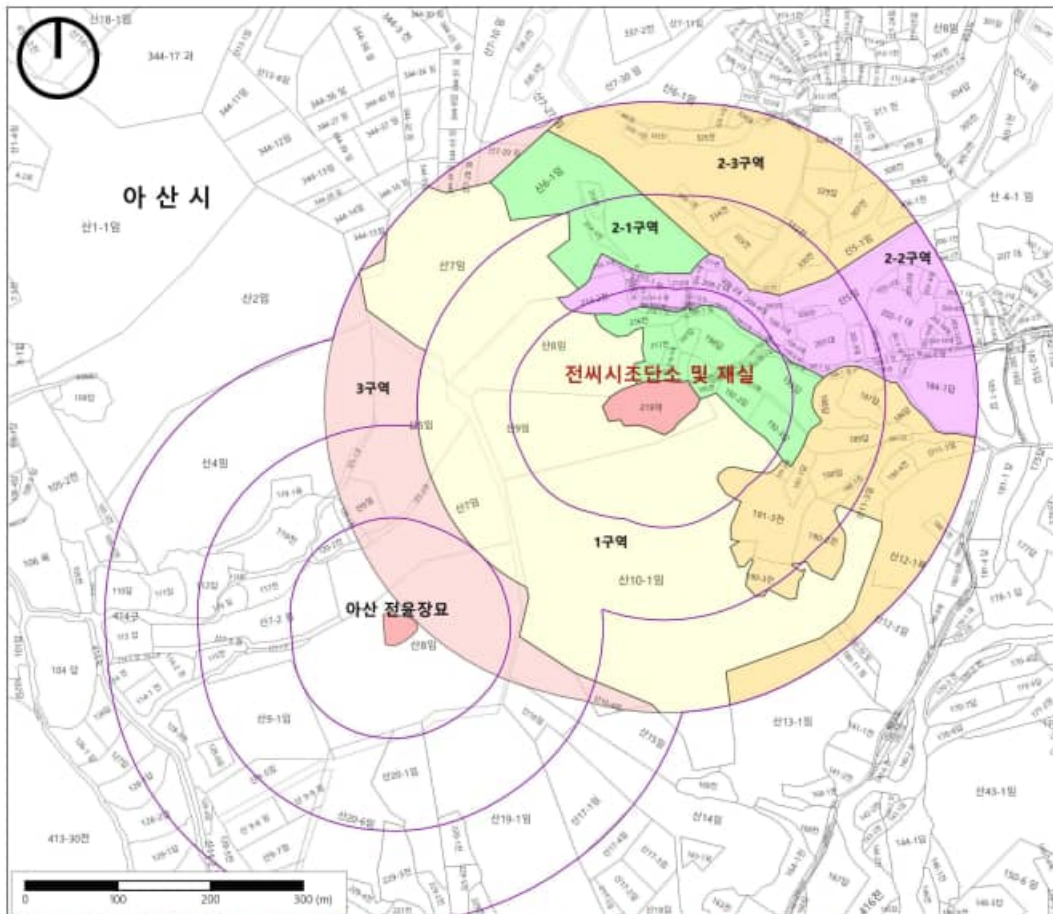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개별검토	
2구역	2-1	최고높이 5m 이하	최고높이 7.5m 이하
	2-2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2-3	최고높이 11m 이하	최고높이 15m 이하
공통사항		<개별검토 대상>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한 번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땅깍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지하 50m 이상 굴착 행위는 개별 검토함.	
		<참고사항>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상위지역 기준을 적용함. (예: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매장유산 유존지역 발굴행위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충청남도 지사와 사전 협의함.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붙임 2. 전씨시조단소 및 재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개별검토	
2구역	2-1	최고높이 5m 이하	최고높이 7.5m 이하
	2-2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2-3	최고높이 11m 이하	최고높이 15m 이하
3구역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개별검토 대상>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땅깍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지하 50m 이상 굴착 행위는 개별 검토함.	
		<참고사항>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상위지역 기준을 적용함. (예: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매장유산 유존지역 발굴행위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충청남도 지사와 사전 협의함.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충청남도 문화유산자료
전씨시조단소 및 재실

충남 천안시 동남구
봉서면 금호1길 117-10

범례

- 시도지정유산
- 시도지정유산보호구역
- 연속지적
- 100~300(m)
- [허용기준 구역]
- 1구역
- 2-1구역
- 2-2구역
- 2-3구역
- 3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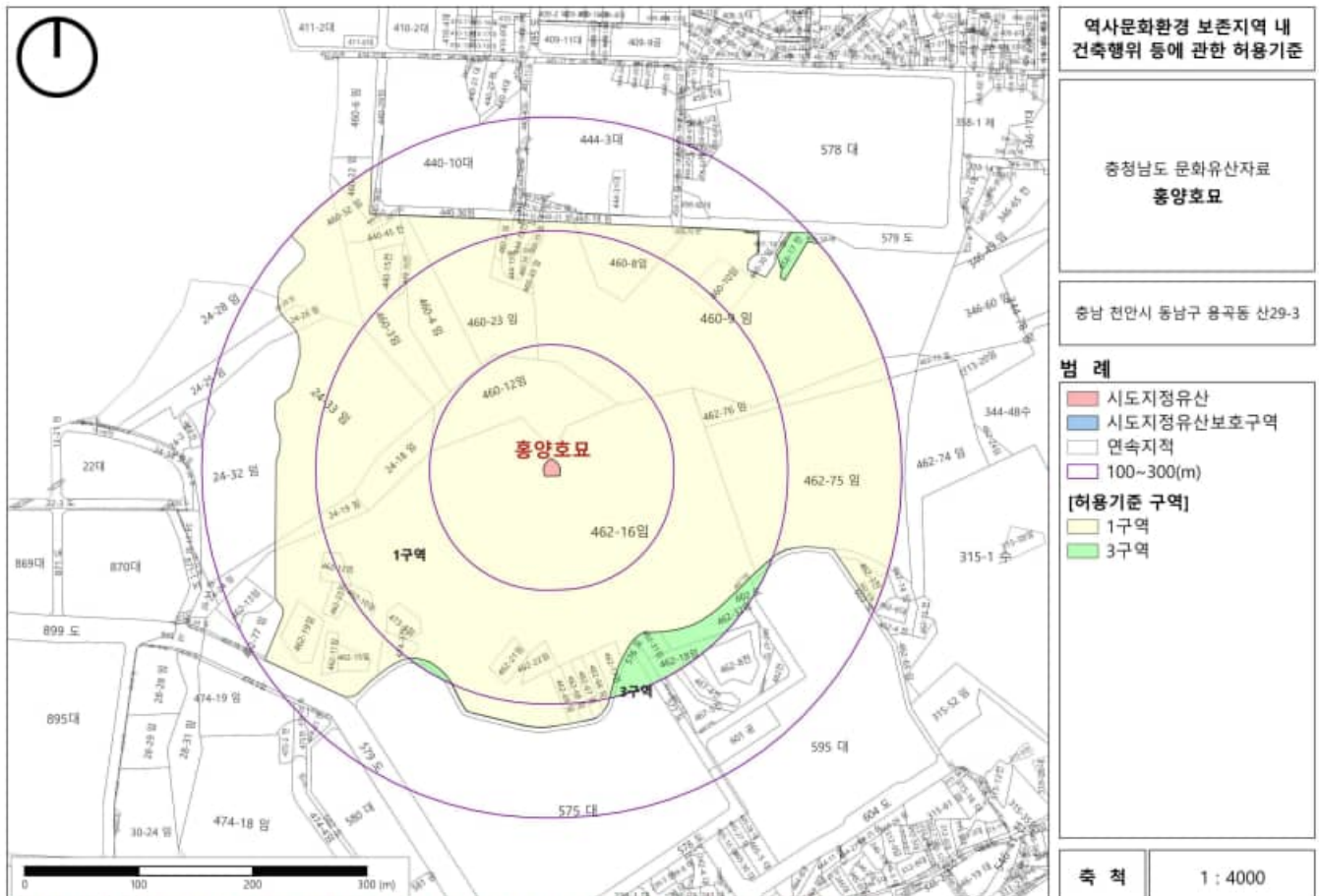
축척

1 : 5000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및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붙임 3. 홍양호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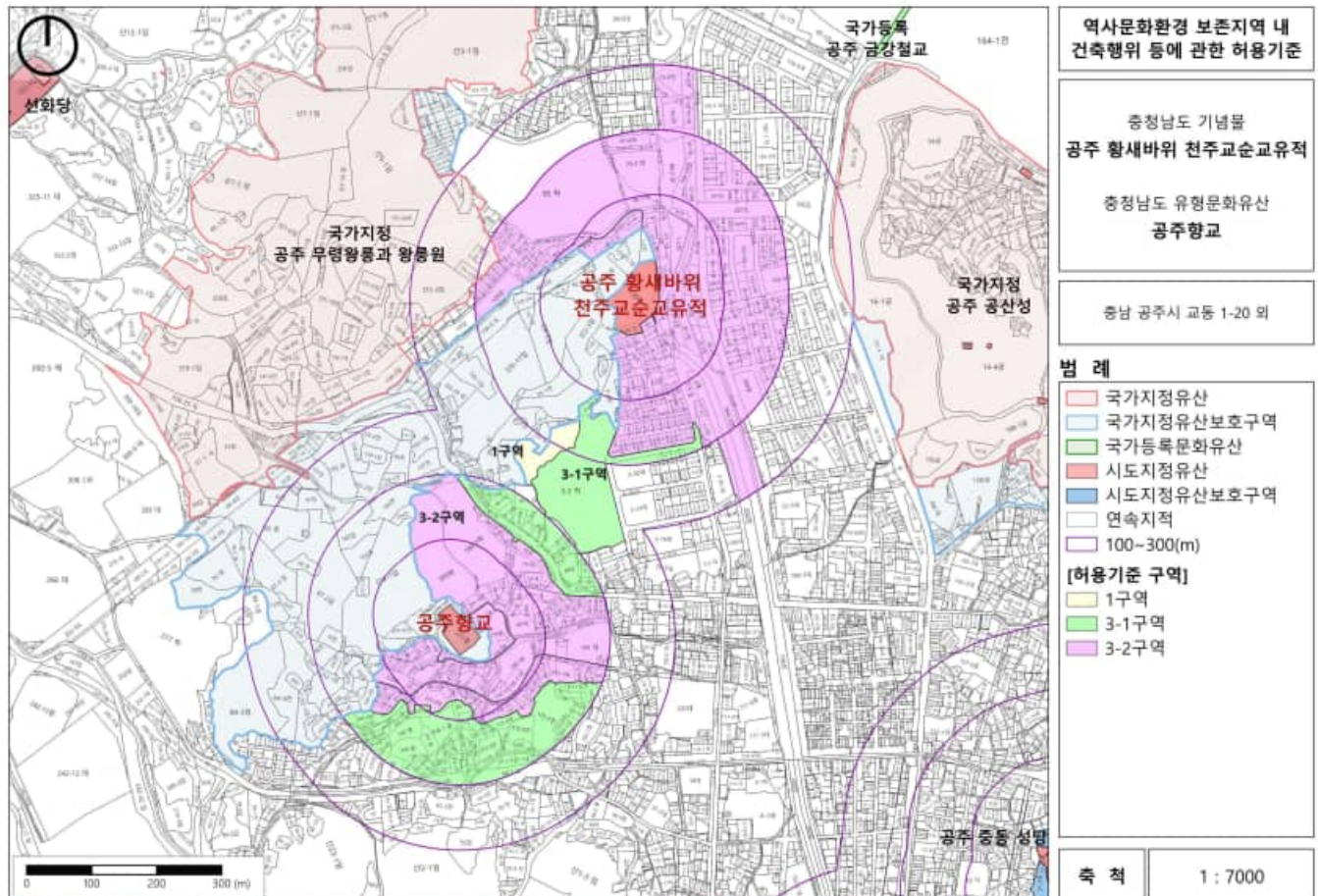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개별검토	
3구역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개별검토 대상>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땅깁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지하 50m 이상 굴착 행위는 개별 검토함. <참고사항>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상위지역 기준을 적용함. (예: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매장유산 유존지역 발굴행위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충청남도 지사와 사전 협의함.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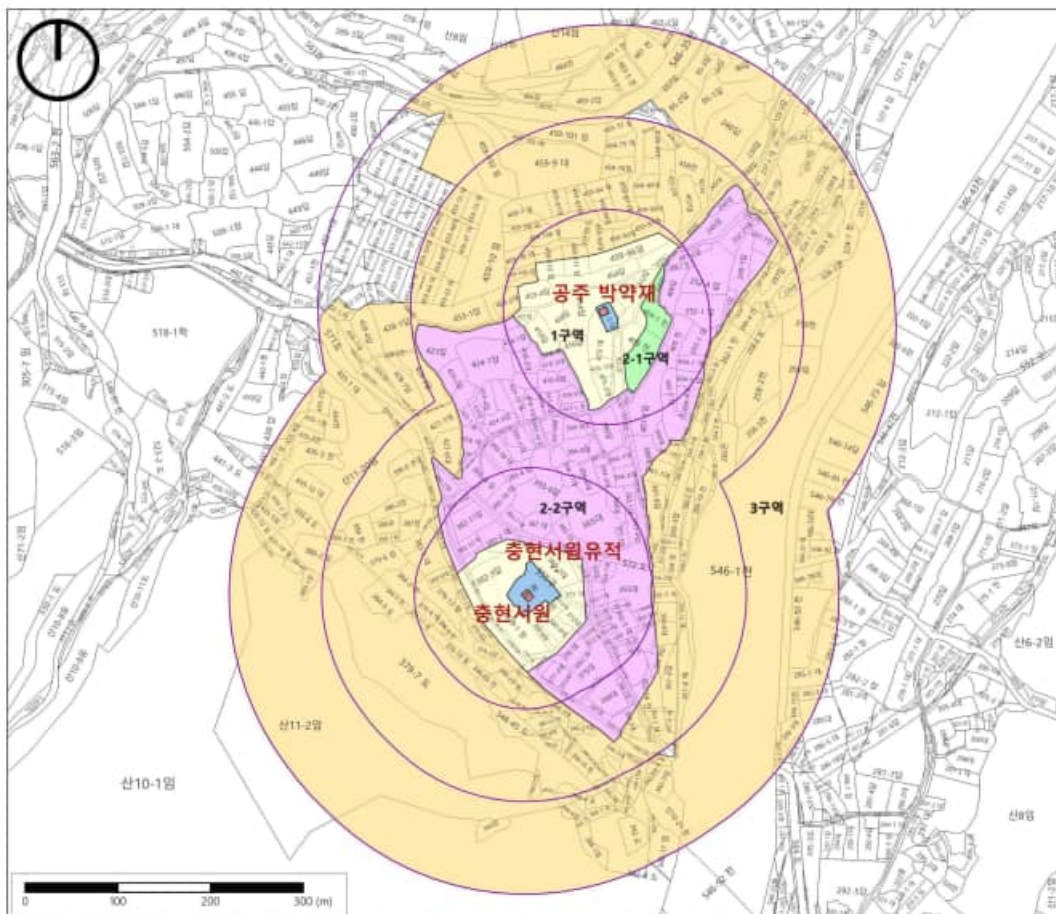
붙임 4. 공주 황새바위 천주교 순교유적, 공주향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개별검토	
3구역	3-1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3-2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로서 고도보존 및 옥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개별검토대상>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땅깍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지하 50m 이상 굴착 행위는 개별 검토함. <참고사항>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상위지역 기준을 적용함. (예: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매장유산 유존지역 발굴행위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충청남도 지사와 사전 협의함.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붙임 5. 공주 박약재, 충현서원, 충현서원유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개별검토	
2구역	2-1 최고높이 5m 이하	최고높이 7.5m 이하
	2-2 최고높이 14m 이하	최고높이 18m 이하
3구역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개별검토대상>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망각기·출상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지하 50m 이상 굴착 행위는 개별 검토함. <참고사항>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상위지역 기준을 적용함. (예: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매장유산 유존지역 발굴행위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충청남도 지사와 사전 협의함.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충청남도 유형문화유산
공주 박약재

충청남도 문화유산자료
충현서원

충청남도 기념물
충현서원유적

충남 공주시 반포면 공암리 415-3
충남 공주시 반포면 공암리 381 외

범 례

- 시도지정유산
- 시도지정유산보호구역
- 연속지적
- 100~300(m)

[허용기준 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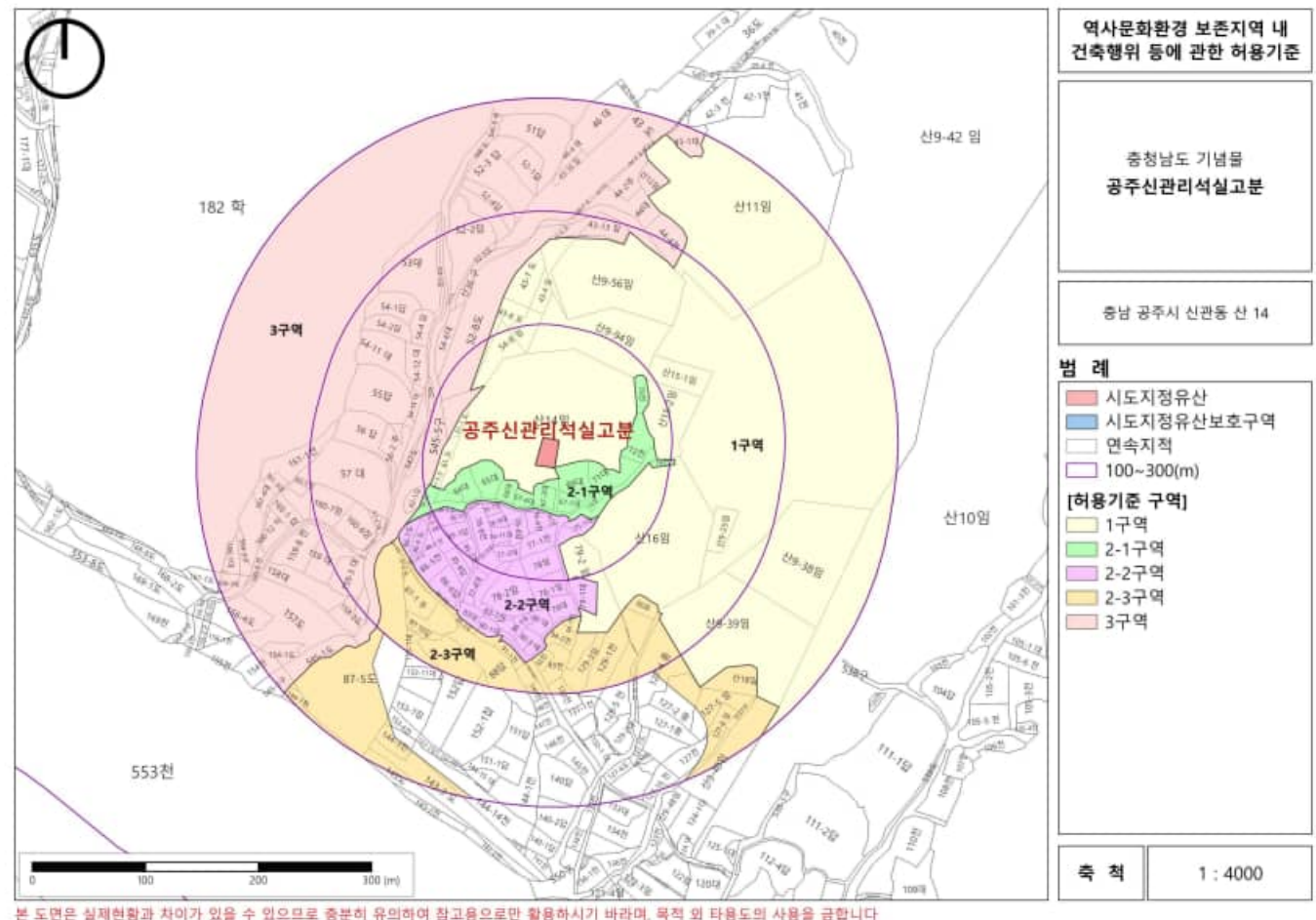
- 1구역
- 2-1구역
- 2-2구역
- 3구역

축 척 1 : 5000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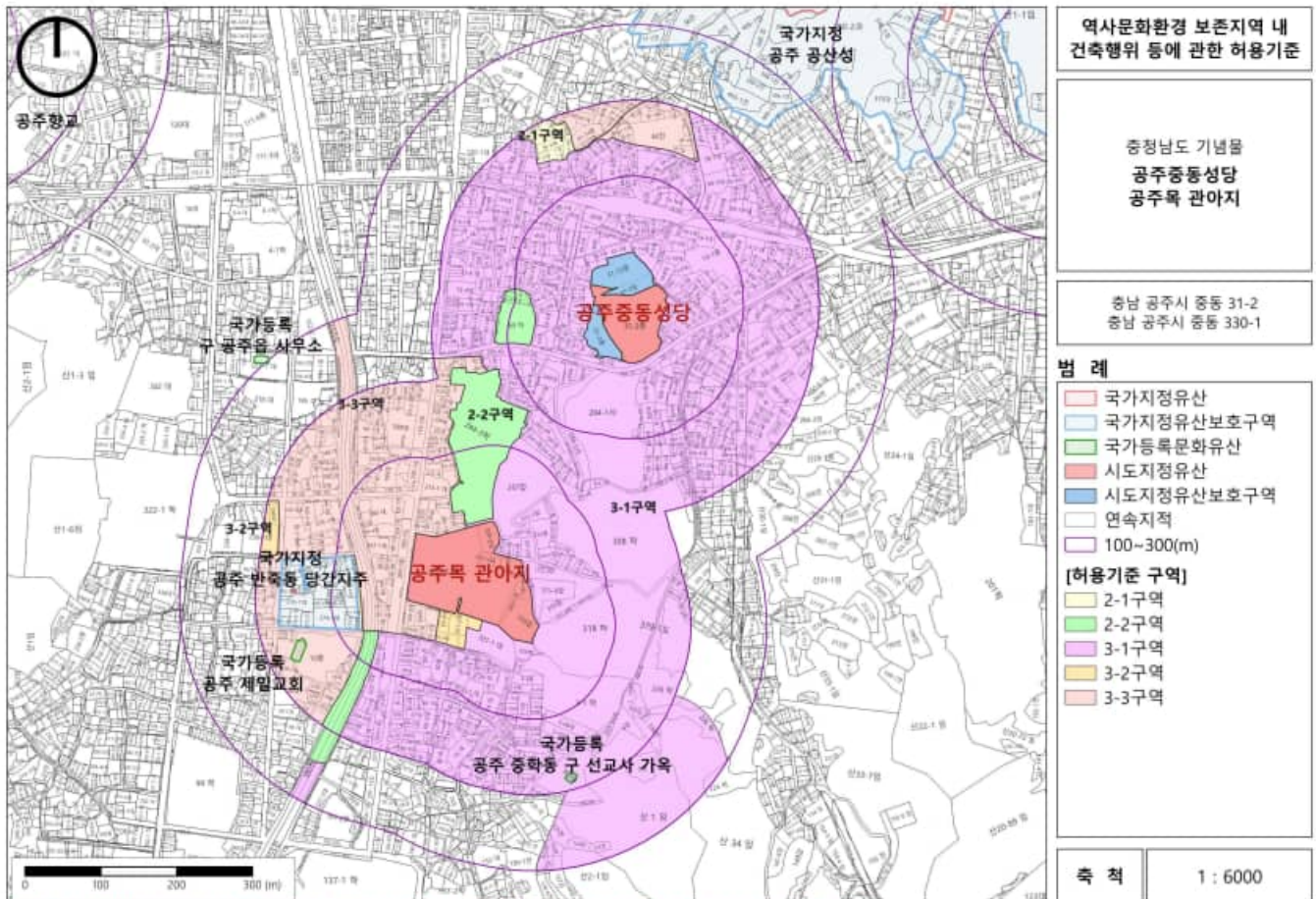
붙임 6. 공주 신관리석실고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개별검토	
2구역	2-1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2-2	최고높이 11m 이하	최고높이 15m 이하
	2-3	최고높이 17m 이하	최고높이 21m 이하
3구역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개별검토대상>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한 번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땅깍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지하 50m 이상 굴착 행위는 개별 검토함. <참고사항>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상위지역 기준을 적용함. (예: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매장유산 유존지역 발굴행위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충청남도 지사와 사전 협의함.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붙임 7. 공주목 관아지, 공주 중동성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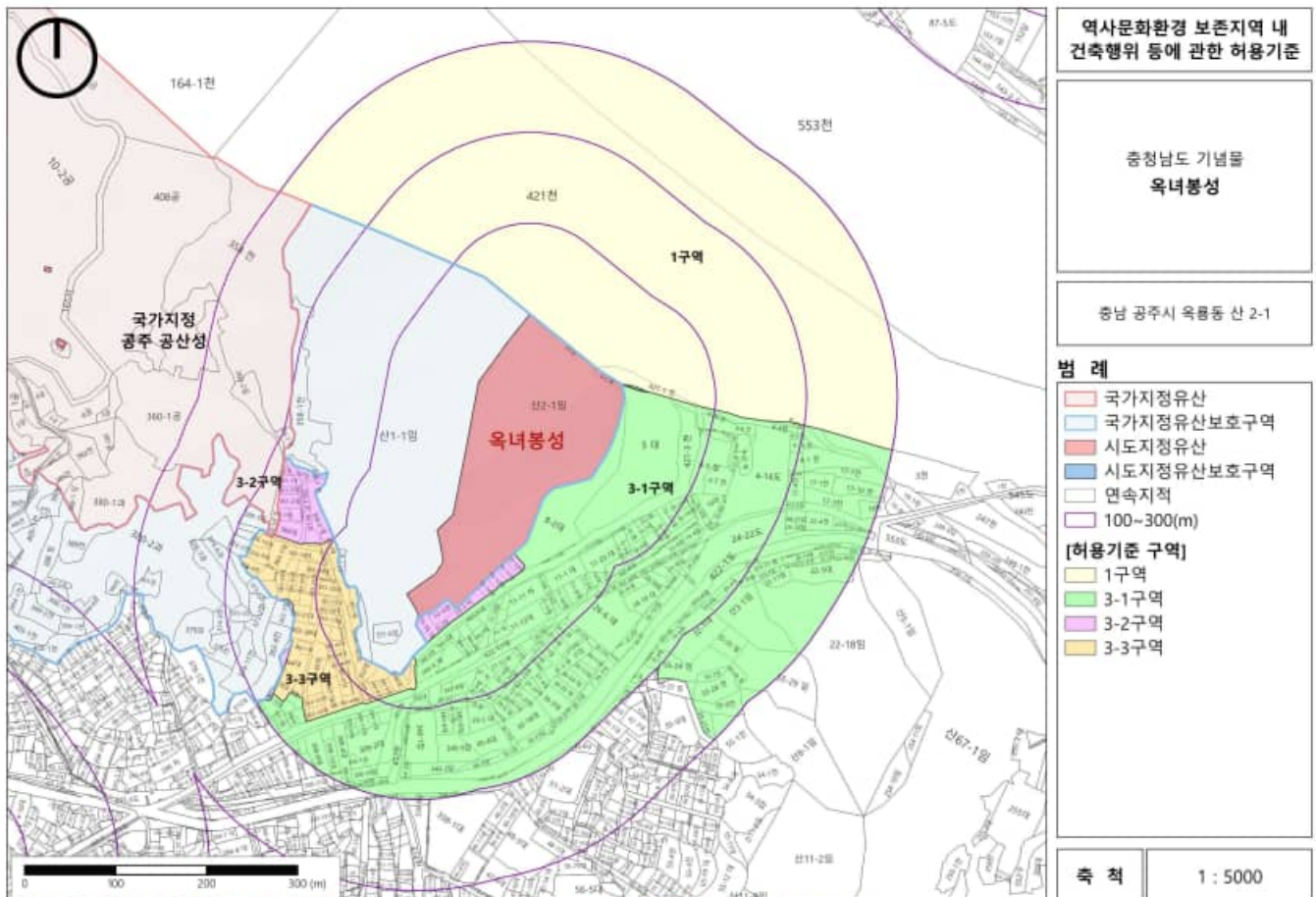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2구역	2-1	최고높이 11m 이하	최고높이 15m 이하
	2-2	최고높이 14m 이하	최고높이 18m 이하
3구역	3-1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3-2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로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처리	
	3-3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로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개별검토 대상>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땅깍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지하 50m 이상 굴착 행위는 개별 검토함.	
		<참고사항>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상위지역 기준을 적용함. (예: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매장유산 유존지역 발굴행위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충청남도 지사와 사전 협의함.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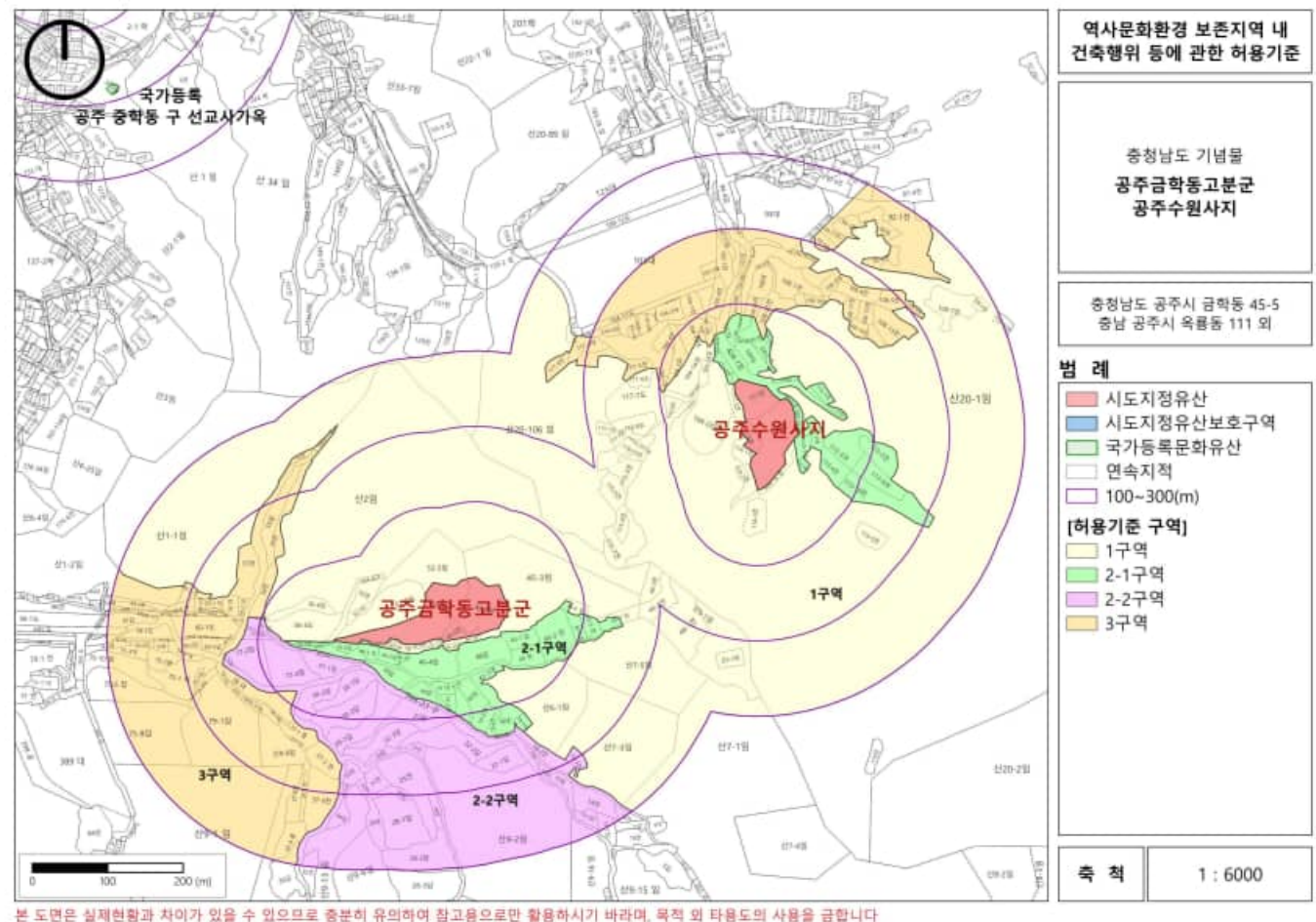
붙임 8. 옥녀봉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개별검토	
3구역	3-1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3-2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로서 고도보존 및 옥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처리
	3-3	역사문화환경 보존옥성지구로서 고도보존 및 옥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개별검토 대상>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땅깍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지하 50m 이상 굴착 행위는 개별 검토함. <참고사항>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상위지역 기준을 적용함. (예: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매장유산 유존지역 발굴행위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충청남도 지사와 사전 협의함.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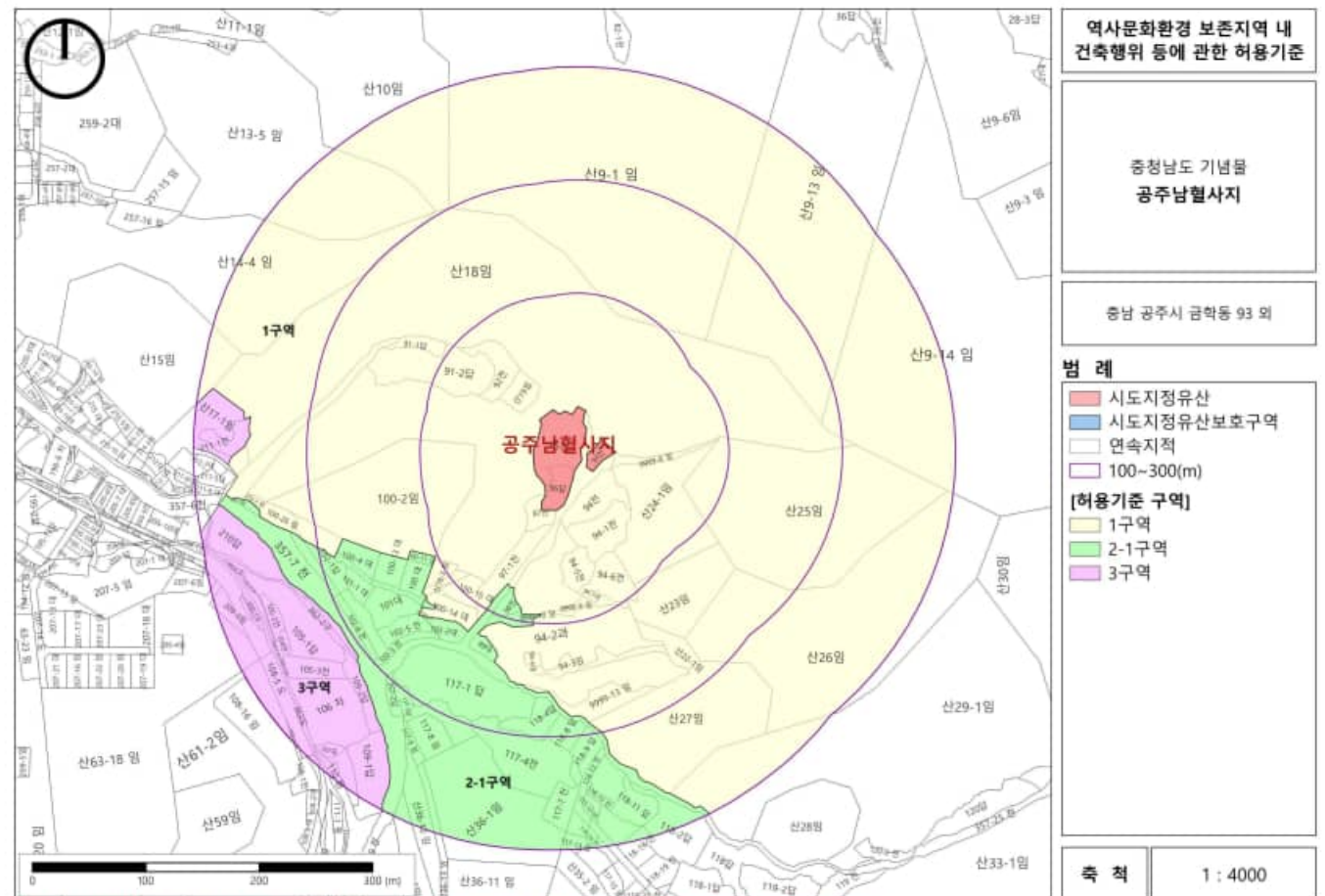
붙임 9. 공주 수원사지, 공주 금학동고분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개별검토	
구역	2-1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2-2	최고높이 14m 이하	최고높이 18m 이하
3구역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개별검토대상>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땅깍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지하 50m 이상 굴착 행위는 개별 검토함. <참고사항>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상위지역 기준을 적용함. (예: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매장유산 유존지역 발굴행위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충청남도 지사와 사전 협의함.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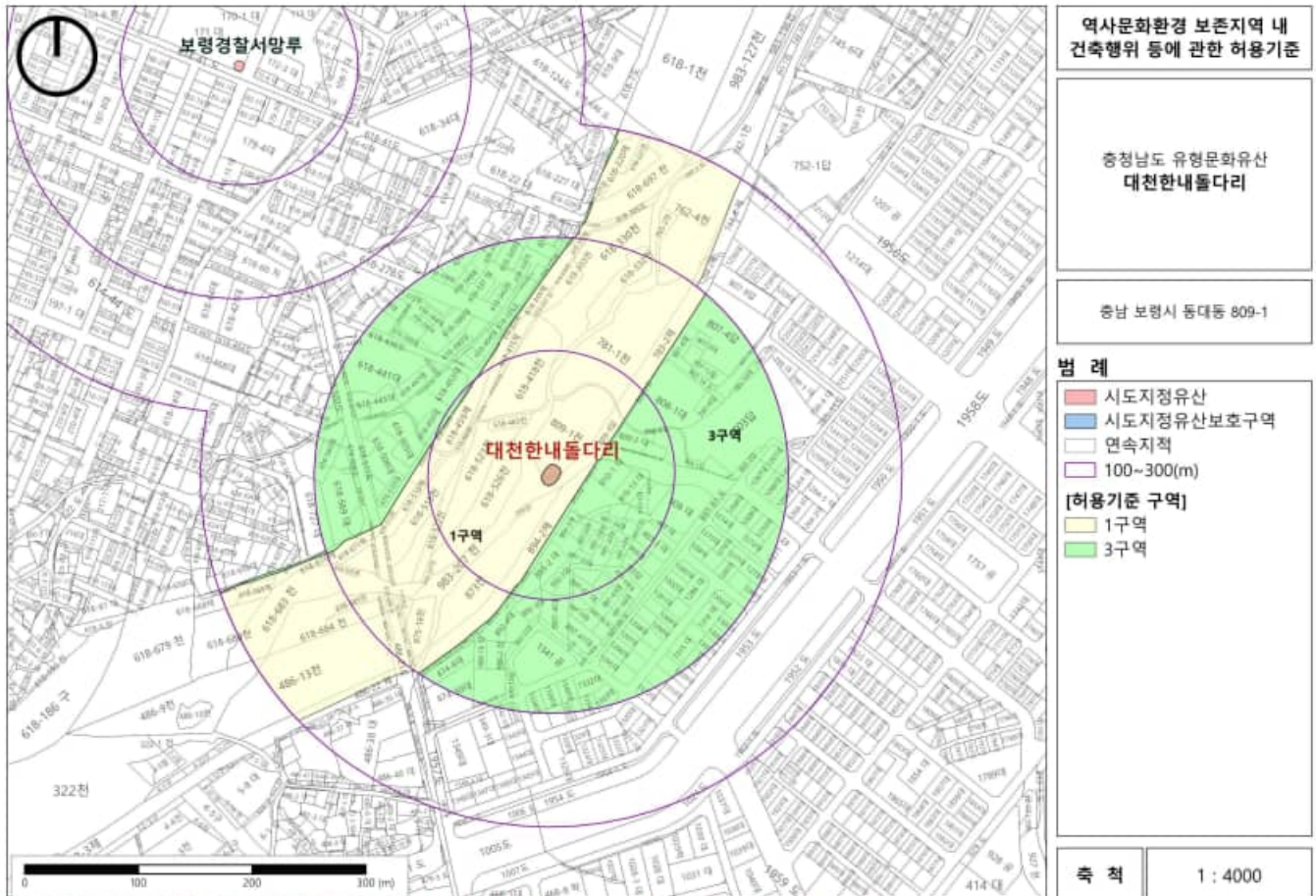
붙임 10. 공주 남혈사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개별검토	
2구역	2-1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개별검토대상>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한 번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땅깍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지하 50m 이상 굴착 행위는 개별 검토함.	
		<참고사항>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상위지역 기준을 적용함. (예: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매장유산 유존지역 발굴행위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충청남도 지사와 사전 협의함.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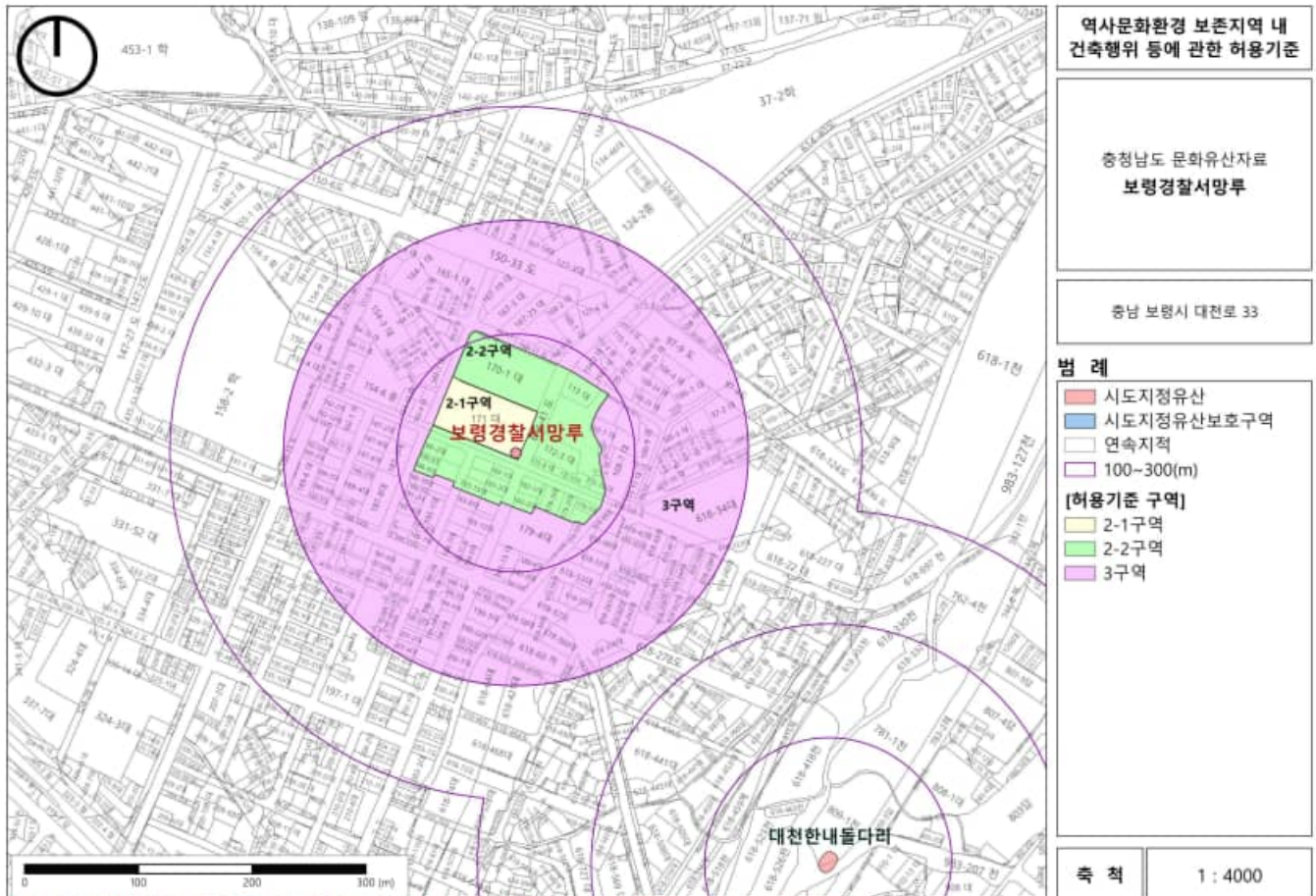
붙임 11. 대천 한내돌다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개별검토	
3구역	보령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개별검토대상>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국가유산 보호구역(보호구역이 없는 경우 국가유산)의 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의 지역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땅깍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지하 50m 이상 굴착 행위는 개별 검토함. <참고사항>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상위지역 기준을 적용함. (예: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매장유산 유존지역 발굴행위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충청남도 지사와 사전 협의함.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붙임 12. 보령 경찰서망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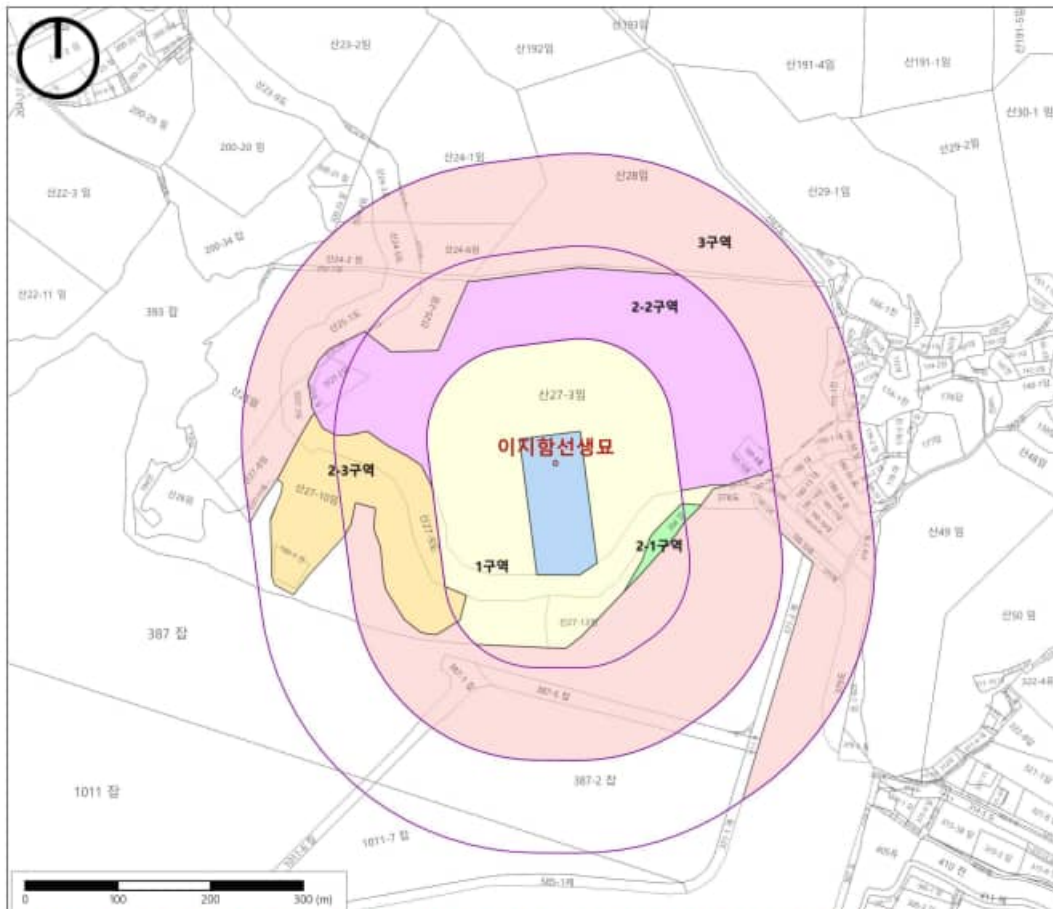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2구역	2-1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2-2	최고높이 11m 이하	최고높이 15m 이하
3구역		보령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개별검토대상>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국가유산 보호구역(보호구역이 없는 경우 국가유산)의 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의 지역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망각기·휴식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지하 50m 이상 굴착 행위는 개별 검토함. <참고사항>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상위지역 기준을 적용함. (예: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매장유산 유존지역 발굴행위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충청남도 지사와 사전 협의함.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붙임 13. 이지함선생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개별검토	
2구역	2-1	최고높이 11m 이하	최고높이 15m 이하
	2-2	최고높이 14m 이하	최고높이 18m 이하
	2-3	최고높이 17m 이하	최고높이 21m 이하
3구역		보령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개별검토대상>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국가유산 보호구역(보호구역이 없는 경우 국가유산)의 경계로부터 반경 200m 이내의 지역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땅깍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지하 50m 이상 굴착 행위는 개별 검토함. <참고사항>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상위지역 기준을 적용함. (예: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매장유산 유존지역 발굴행위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충청남도 지사와 사전 협의함.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충청남도 문화유산자료
이지함선생묘

충남 보령시 주교면 교정리 산27-3

범례

- 시도지정유산
- 시도지정유산보호구역
- 연속지적
- 100~300(m)

[허용기준 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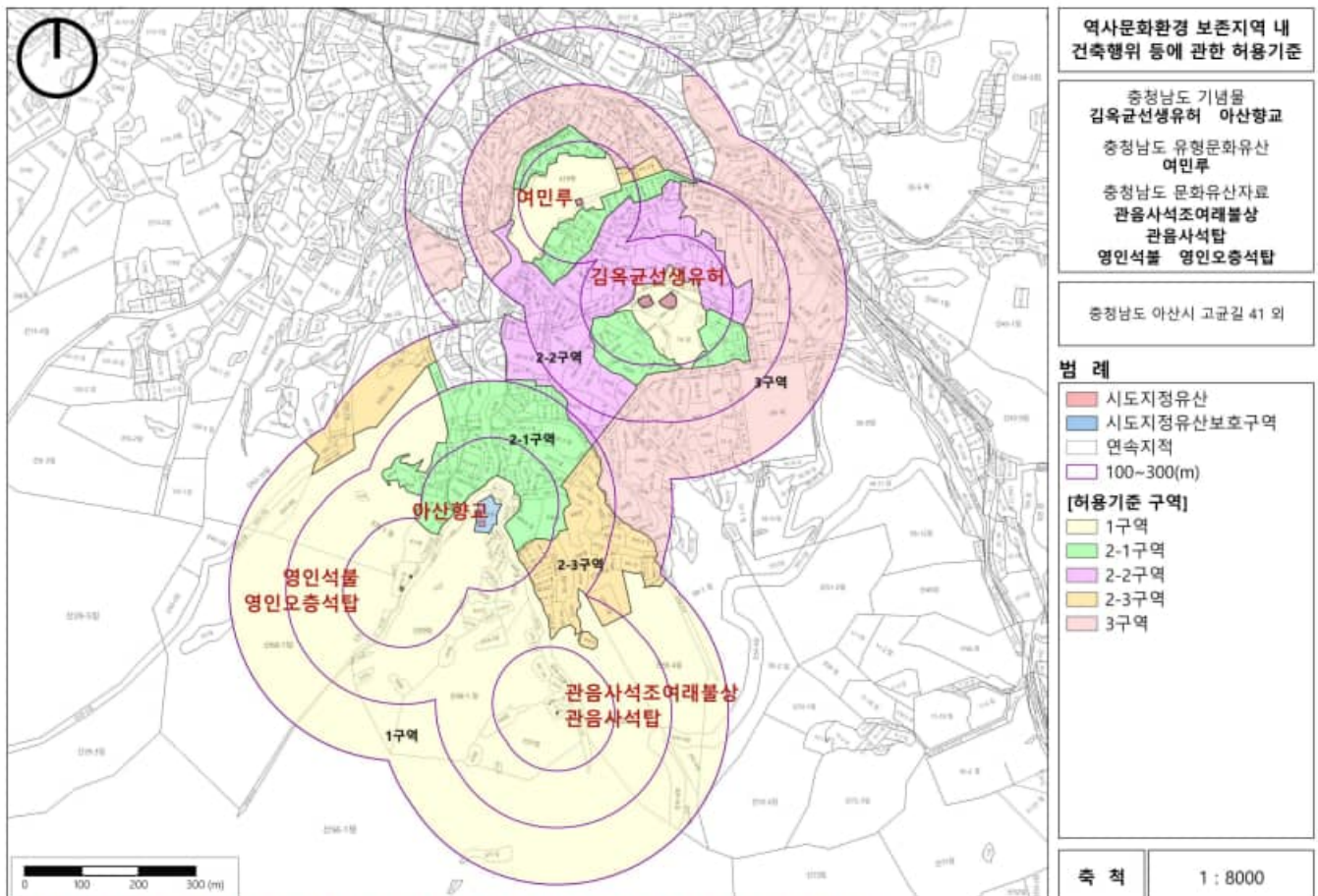
- 1구역
- 2-1구역
- 2-2구역
- 2-3구역
- 3구역

축척 1 : 5000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사용등의 사용을 금합니다

붙임 14. 김옥균선생유허 등 7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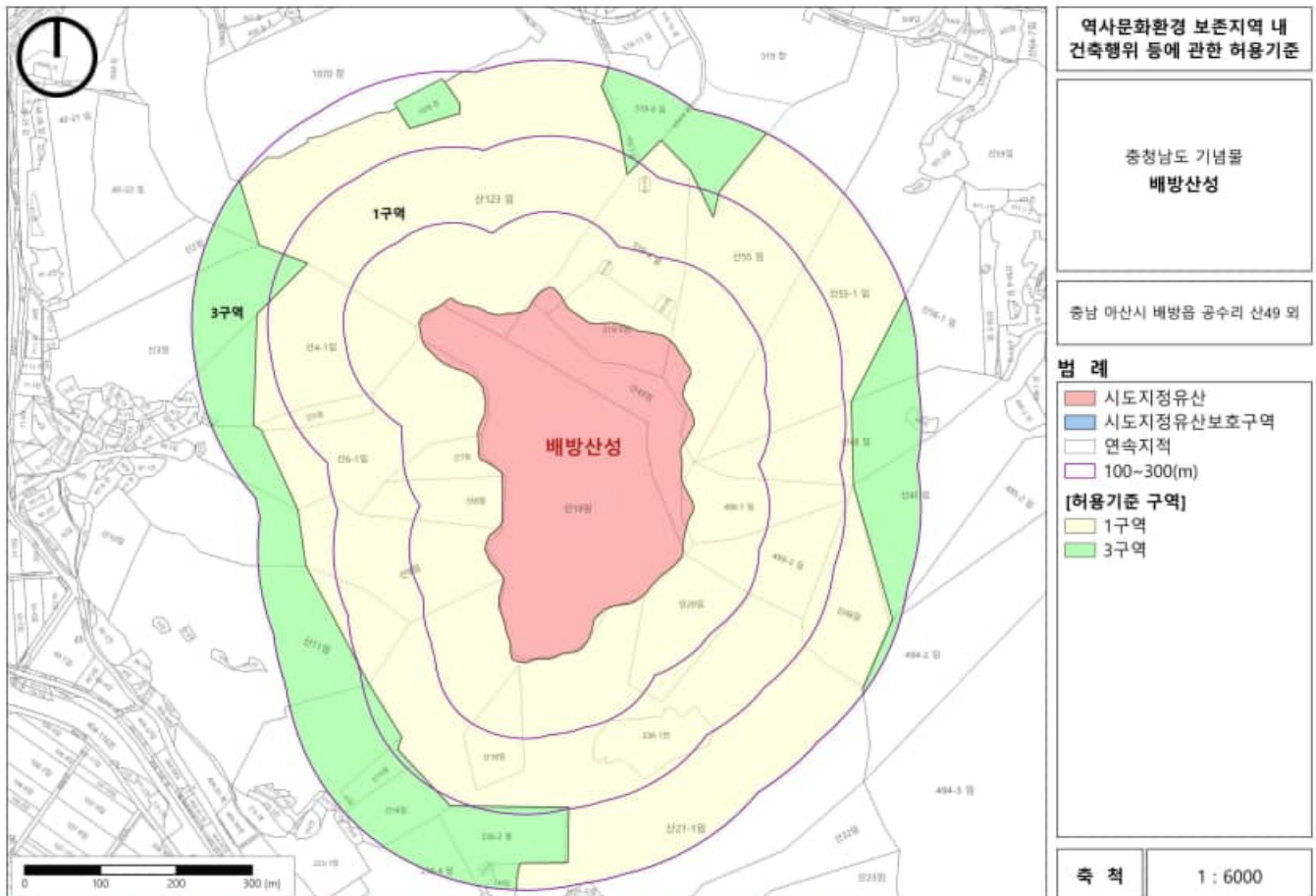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개별검토	
2구역	2-1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2-2	최고높이 11m 이하	최고높이 15m 이하
	2-3	최고높이 14m 이하	최고높이 18m 이하
3구역		아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개별검토 대상>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땅깍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지하 50m 이상 굴착 행위는 개별 검토함. <참고사항>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상위지역 기준을 적용함. (예: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매장유산 유존지역 발굴행위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충청남도 지사와 사전 협의함.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및 사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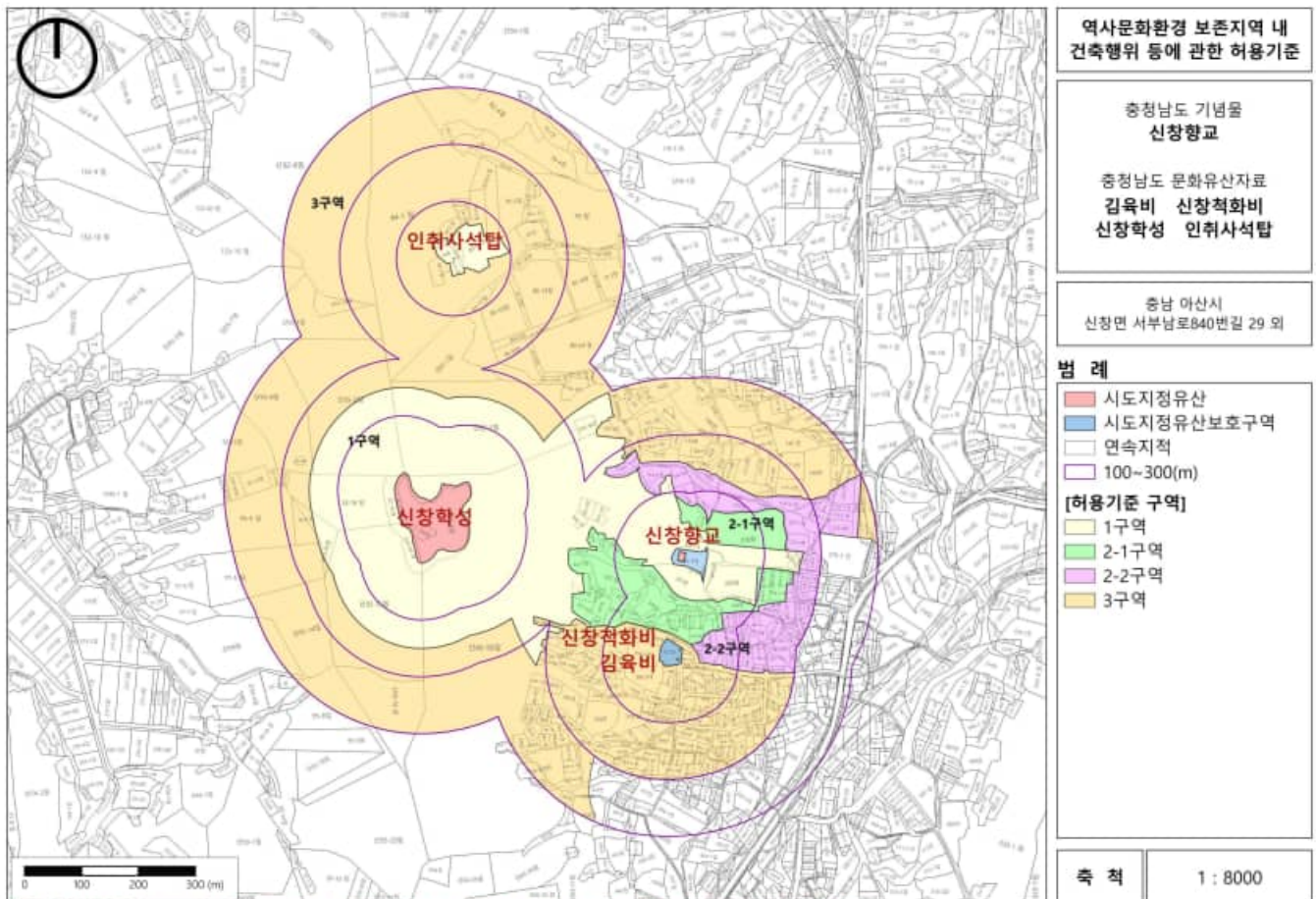
붙임 15. 배방산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개별검토	
3구역	아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개별검토 대상>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땅깁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지하 50m 이상 굴착 행위는 개별 검토함. <참고사항>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상위지역 기준을 적용함. (예: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매장유산 유존지역 발굴행위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충청남도 지사와 사전 협의함.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붙임 16. 김육비 등 3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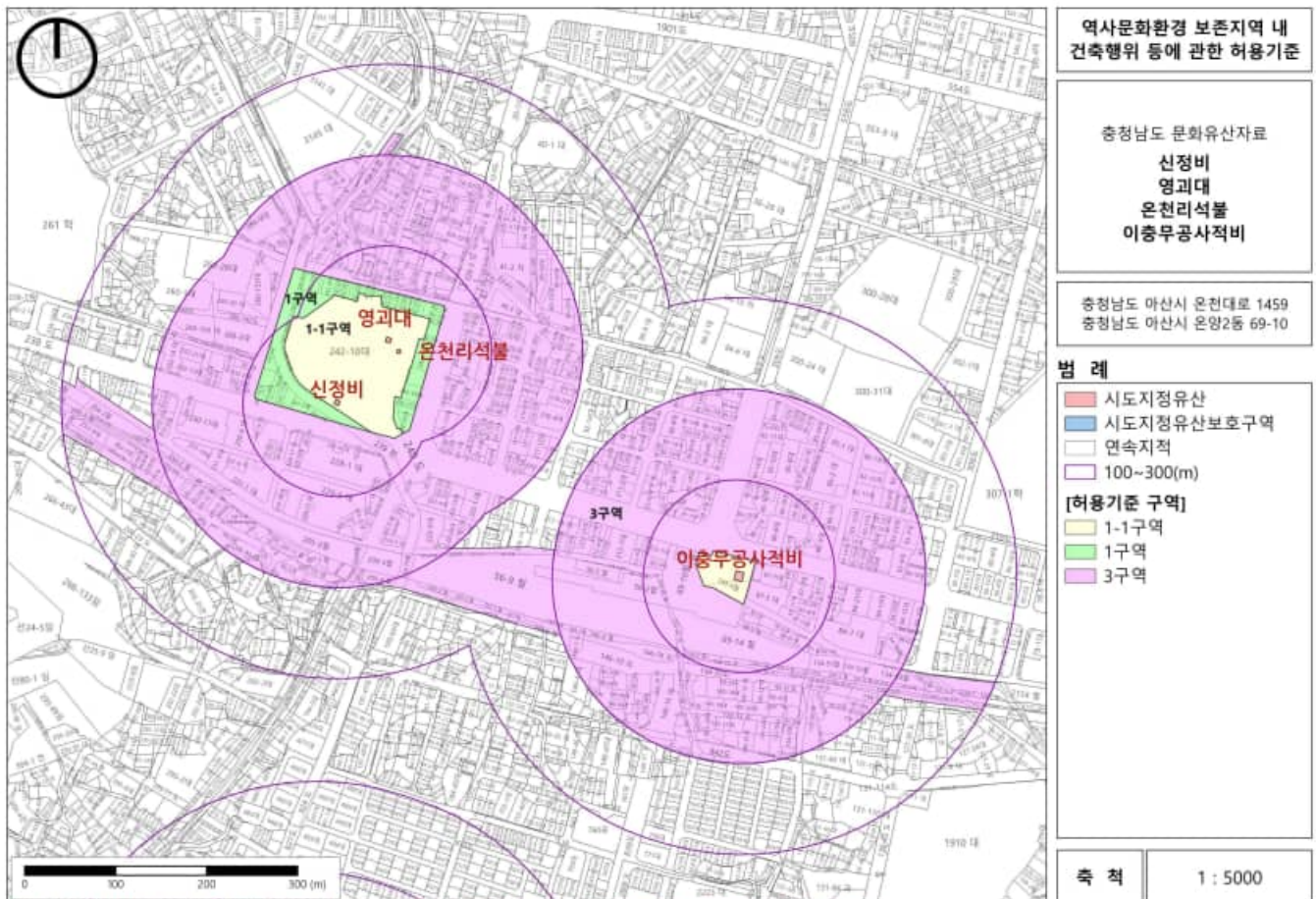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개별검토	
2구역	2-1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2-2	최고높이 17m 이하	최고높이 17m 이하
3구역		아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개별검토 대상>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땅깁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지하 50m 이상 굴착 행위는 개별 검토함. <참고사항>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상위지역 기준을 적용함. (예: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매장유산 유존지역 발굴행위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충청남도 지사와 사전 협의함.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붙임 17. 영괴대 등 4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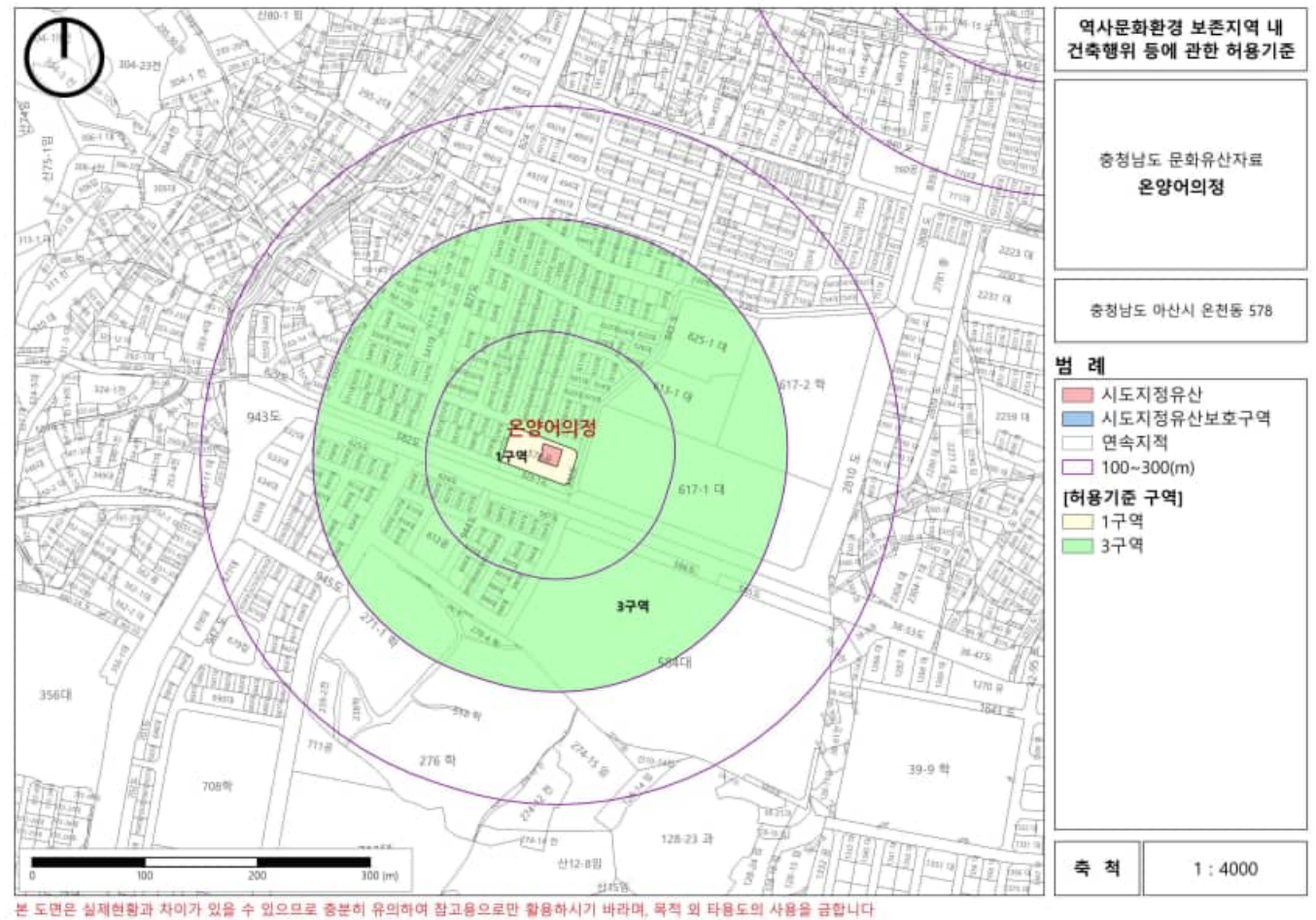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1-1	기존 건물 범위 내 개축만 허용	
	1	개별검토	
3구역		아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개별검토 대상>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땅깍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지하 50m 이상 굴착 행위는 개별 검토함.	
		<참고사항>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상위지역 기준을 적용함. (예: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매장유산 유존지역 발굴행위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충청남도 지사와 사전 협의함.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붙임 18. 온양 어의정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개별검토	
3구역	아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개별검토 대상>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땅깍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지하 50m 이상 굴착 행위는 개별 검토함. <참고사항>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상위지역 기준을 적용함. (예: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매장유산 유존지역 발굴행위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충청남도 지사와 사전 협의함.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붙임 19. 서산 객사 등 5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개별검토	
2구역	2-1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2-2	최고높이 11m 이하	최고높이 15m 이하
	2-3	최고높이 14m 이하	최고높이 18m 이하
3구역		서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개별검토 대상>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땅깁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지하 50m 이상 굴착 행위는 개별 검토함. <참고사항>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상위지역 기준을 적용함. (예: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매장유산 유존지역 발굴행위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충청남도 지사와 사전 협의함.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충청남도 문화유산자료
읍내리귀부석

충청남도 유형문화유산
서산객사
서산관아문및외동헌
서산동문동당간지주
서산동문동오층석탑

충남 서산시 동헌로 149 외

법 레

- 시도지정유산
 - 시도지정유산보호구역
 - 국가등록문화유산
 - 연속지적
 - 100~300(m)
- [허용기준 구역]
- 1구역
 - 2-1구역
 - 2-2구역
 - 2-3구역
 - 3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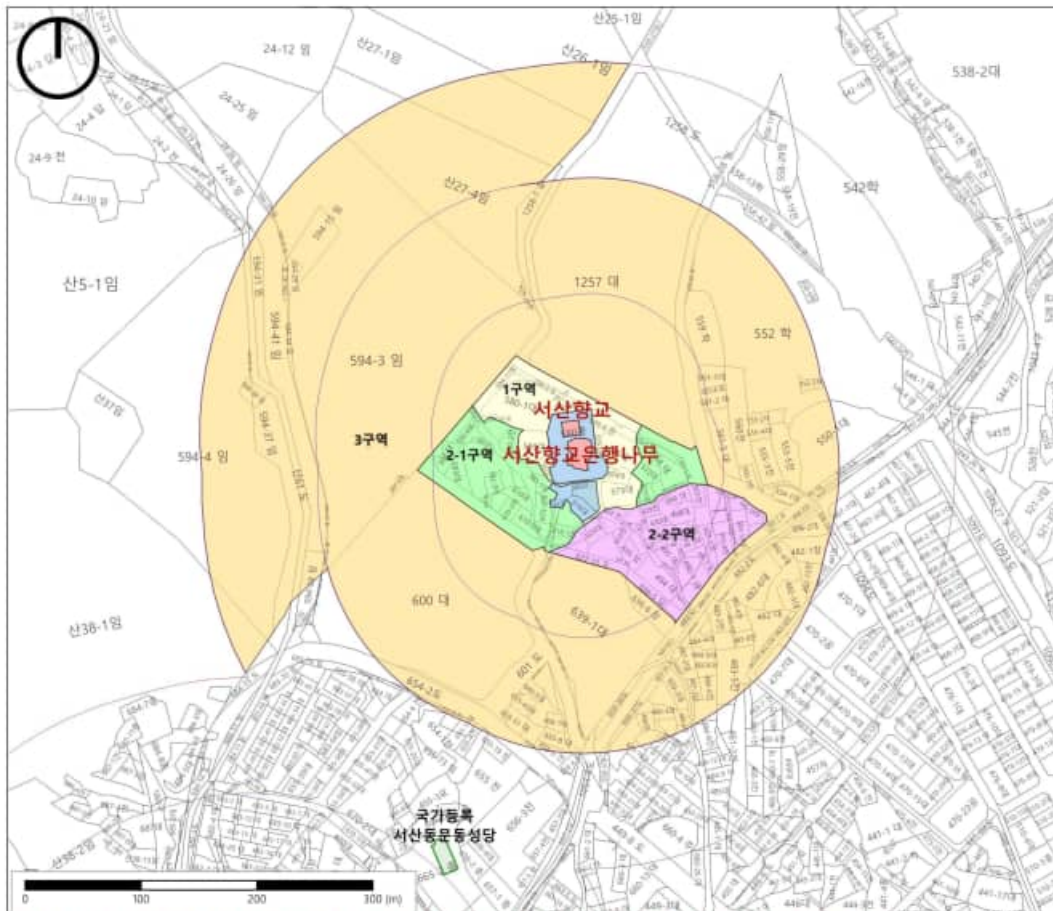
축 척

1 : 6000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및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붙임 20. 서산향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개별검토	
2구역	2-1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2-2 최고높이 14m 이하	최고높이 18m 이하
3구역	서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개별검토 대상>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 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 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땅깍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땅깍기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지하 50m 이상 굴착 행위는 개별 검토함. <참고사항>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상위지역 기준을 적용함. (예: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매장유산 유존지역 발굴행위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충청남도 지사와 사전 협의함.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충청남도 기념물
서산향교

충청남도 자연유산
서산향교은행나무

충남 서산시 향교1로 26

법 령

- 시도지정유산
- 시도지정유산보호구역
- 국가등록문화유산
- 연속지적
- 100~300(m)

[허용기준 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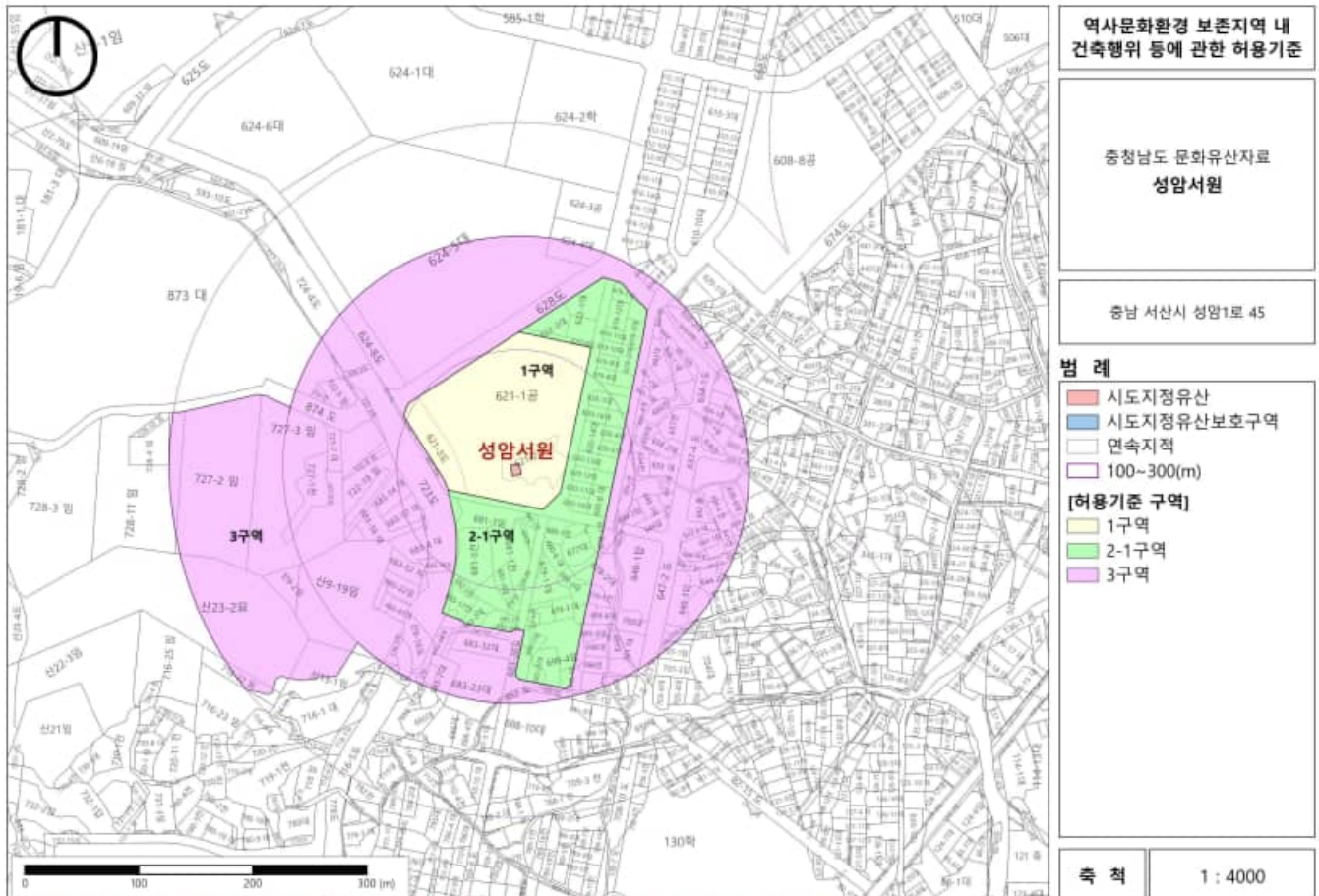
- 1구역
- 2-1구역
- 2-2구역
- 3구역

축 척 1 : 4000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및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붙임 21. 성암서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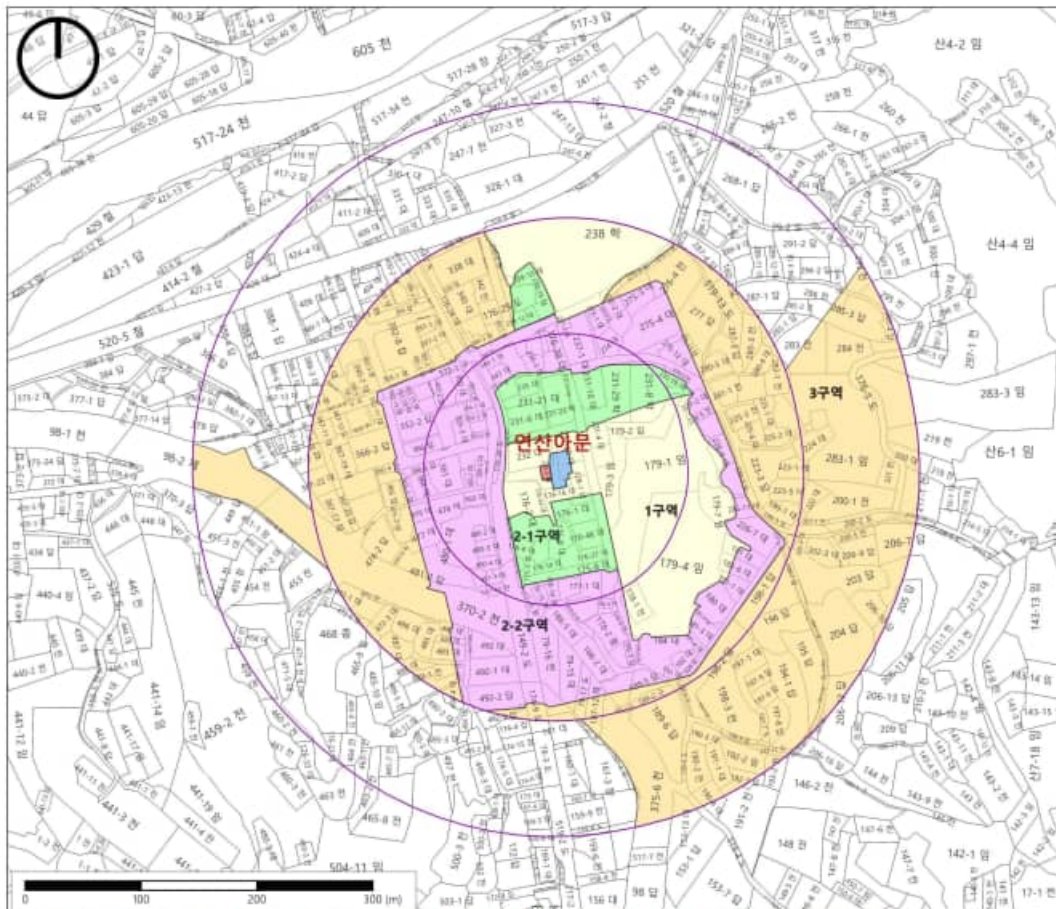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개별검토	
2구역	2-1	최고높이 14m 이하	최고높이 18m 이하
구역		서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개별검토 대상>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땅깍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지하 50m 이상 굴착 행위는 개별 검토함. <참고사항>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상위지역 기준을 적용함. (예: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매장유산 유존지역 발굴행위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충청남도 지사와 사전 협의함.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붙임 22. 연산아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개별검토	
2구역	2-1	최고높이 8m 이하 단, 굴착시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입회 하에 시행함
	2-2	최고높이 14m 이하 최고높이 18m 이하
3구역	논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개별검토 대상>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땅깍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지하 50m 이상 굴착 행위는 개별 검토함. <참고사항>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상위지역 기준을 적용함. (예: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매장유산 유존지역 발굴행위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충청남도 지사와 사전 협의함.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충청남도 유형문화유산 연산아문

충청남도 논산시 황산별로 1528-7

범례

- 시도지정유산
- 시도지정유산보호구역
- 연속지적
- 100~300(m)

[허용기준 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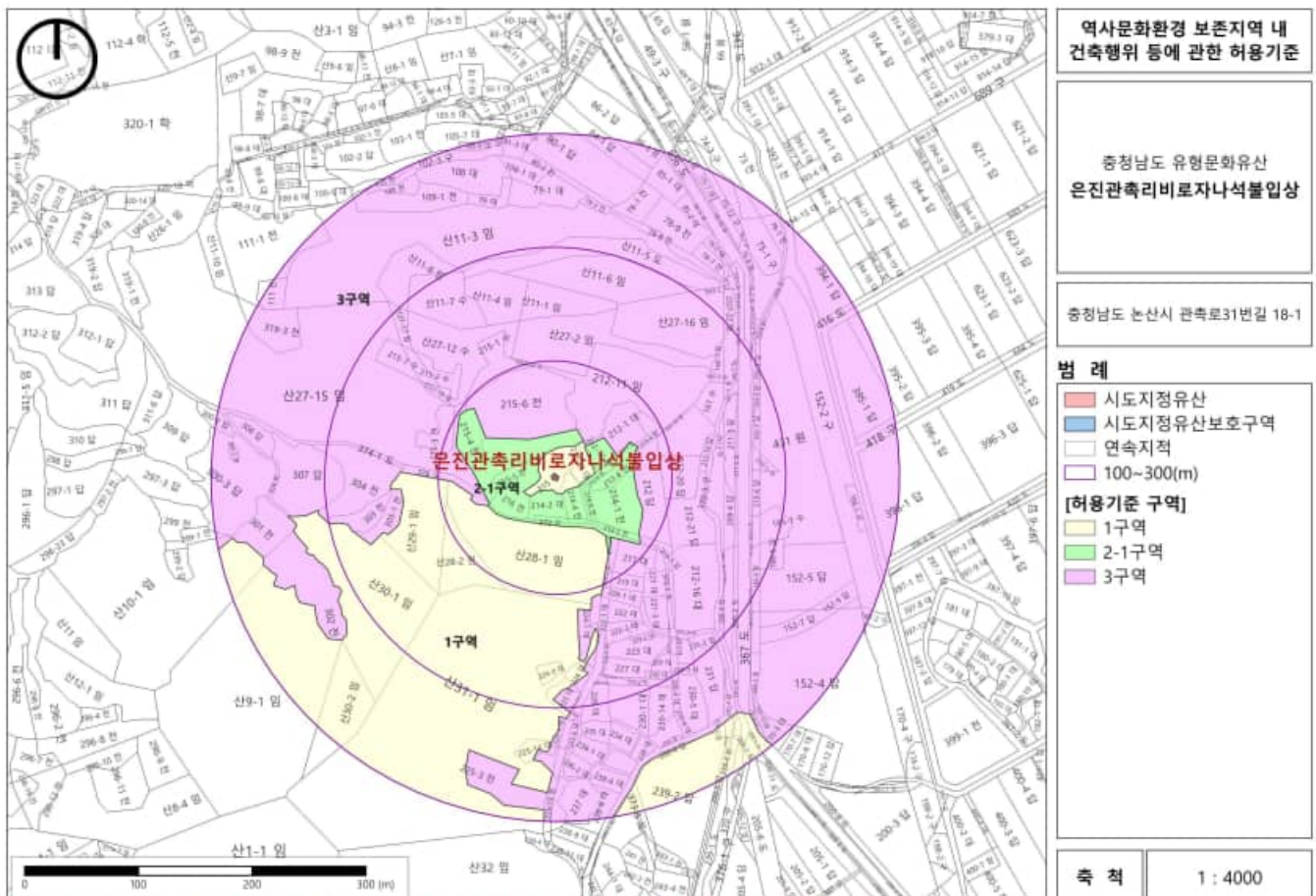
- 1구역
- 2-1구역
- 2-2구역
- 3구역

축척 1 : 4000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붙임 23. 은진 관촉리비로자나석불입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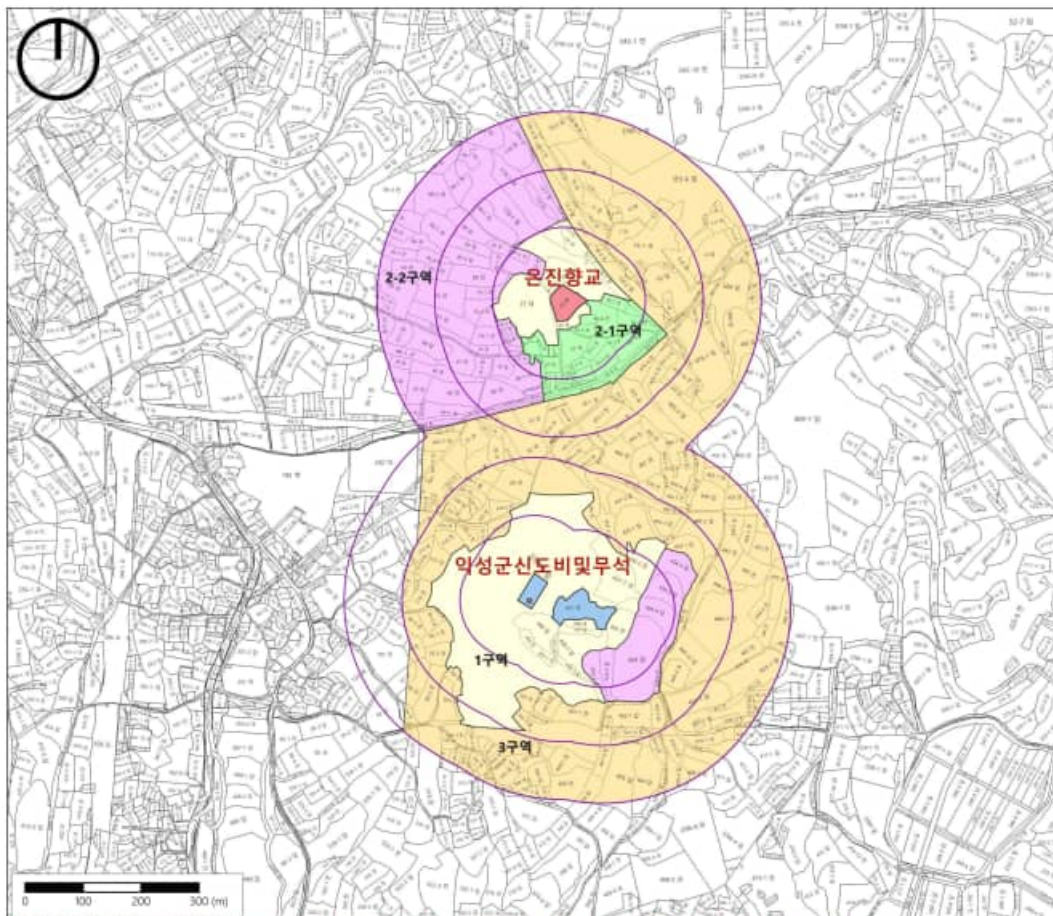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개별검토	
2구역	2-1	최고높이 12m 이하
구역	논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개별검토 대상>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땅깍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지하 50m 이상 굴착 행위는 개별 검토함. <참고사항>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상위지역 기준을 적용함. (예: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매장유산 유존지역 발굴행위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충청남도 지사와 사전 협의함.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사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붙임 24. 은진향교, 익성군신도비 및 무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개별검토	
2구역	2-1	최고높이 5m 이하	최고높이 7.5m 이하
	2-2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논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개별검토 대상>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땅깍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지하 50m 이상 굴착 행위는 개별 검토함. <참고사항>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상위지역 기준을 적용함. (예: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매장유산 유존지역 발굴행위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충청남도 지사와 사전 협의함.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충청남도 기념물
은진향교

충청남도 유형문화유산
익성군신도비및무석

충남 논산시 은진면 교촌리 19
충남 논산시 은진면 용산리 산93-3

법 레

- 시도지정유산
- 시도지정유산보호구역
- 연속지적
- 100~300(m)
- [허용기준 구역]
- 1구역
- 2-1구역
- 2-2구역
- 3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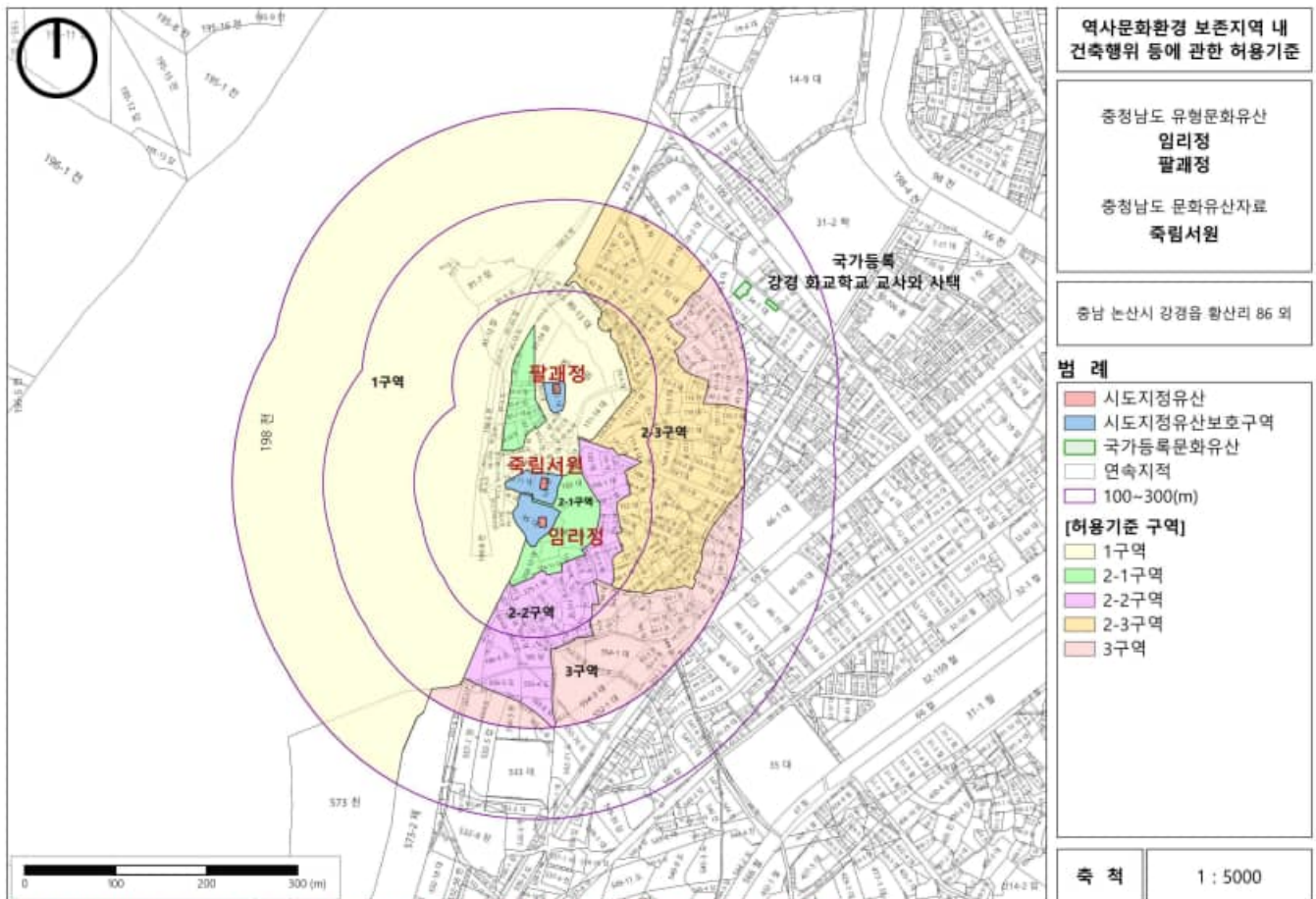
축 척

1 : 8000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붙임 25. 임리정 등 3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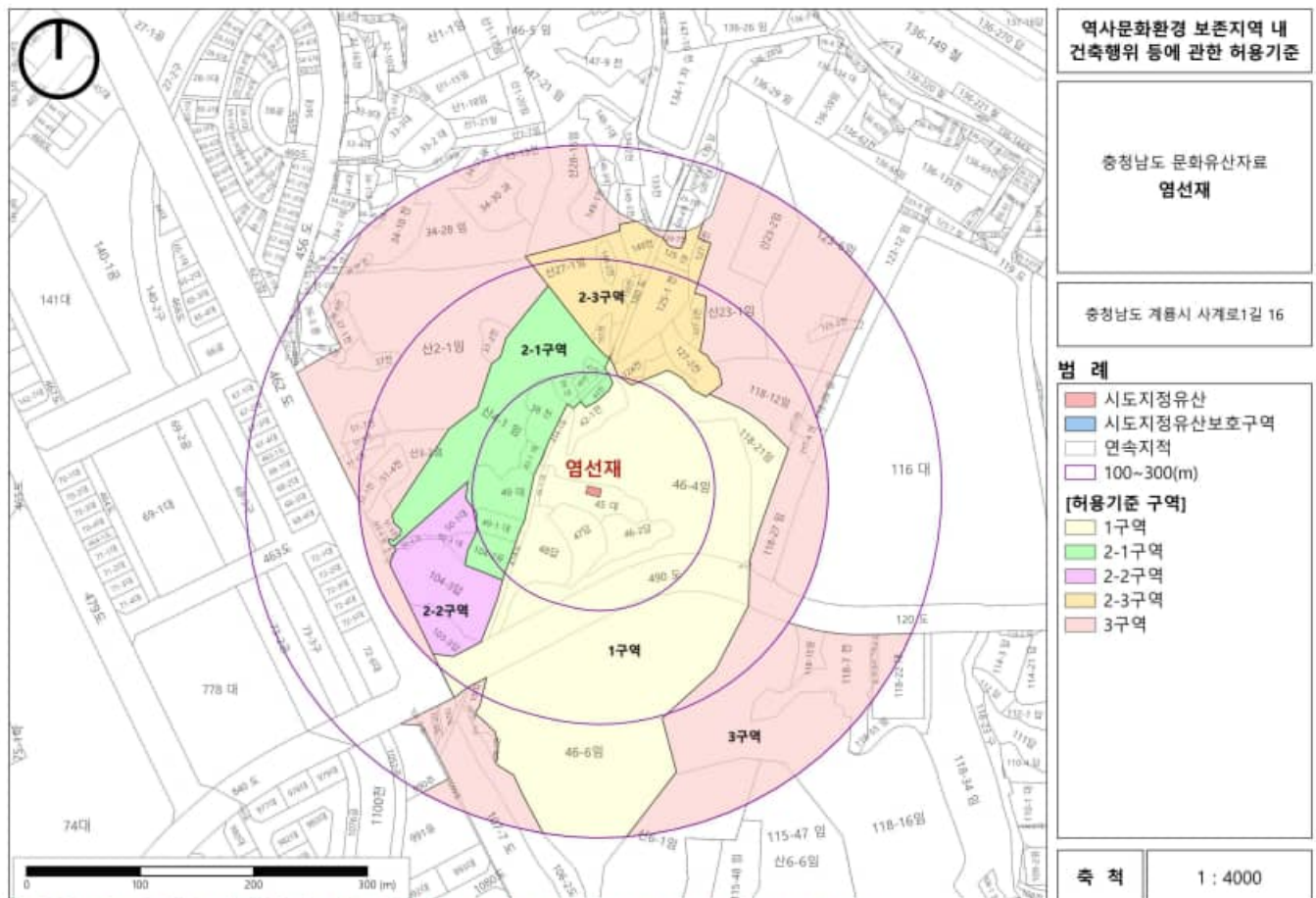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개별검토	
2구역	2-1	최고높이 5m 이하	최고높이 7.5m 이하
	2-2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2-3	최고높이 14m 이하	최고높이 18m 이하
3구역		논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개별검토 대상>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땅깍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지하 50m 이상 굴착 행위는 개별 검토함. <참고사항>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상위지역 기준을 적용함. (예: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매장유산 유존지역 발굴행위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충청남도 지사와 사전 협의함.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및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붙임 26. 염선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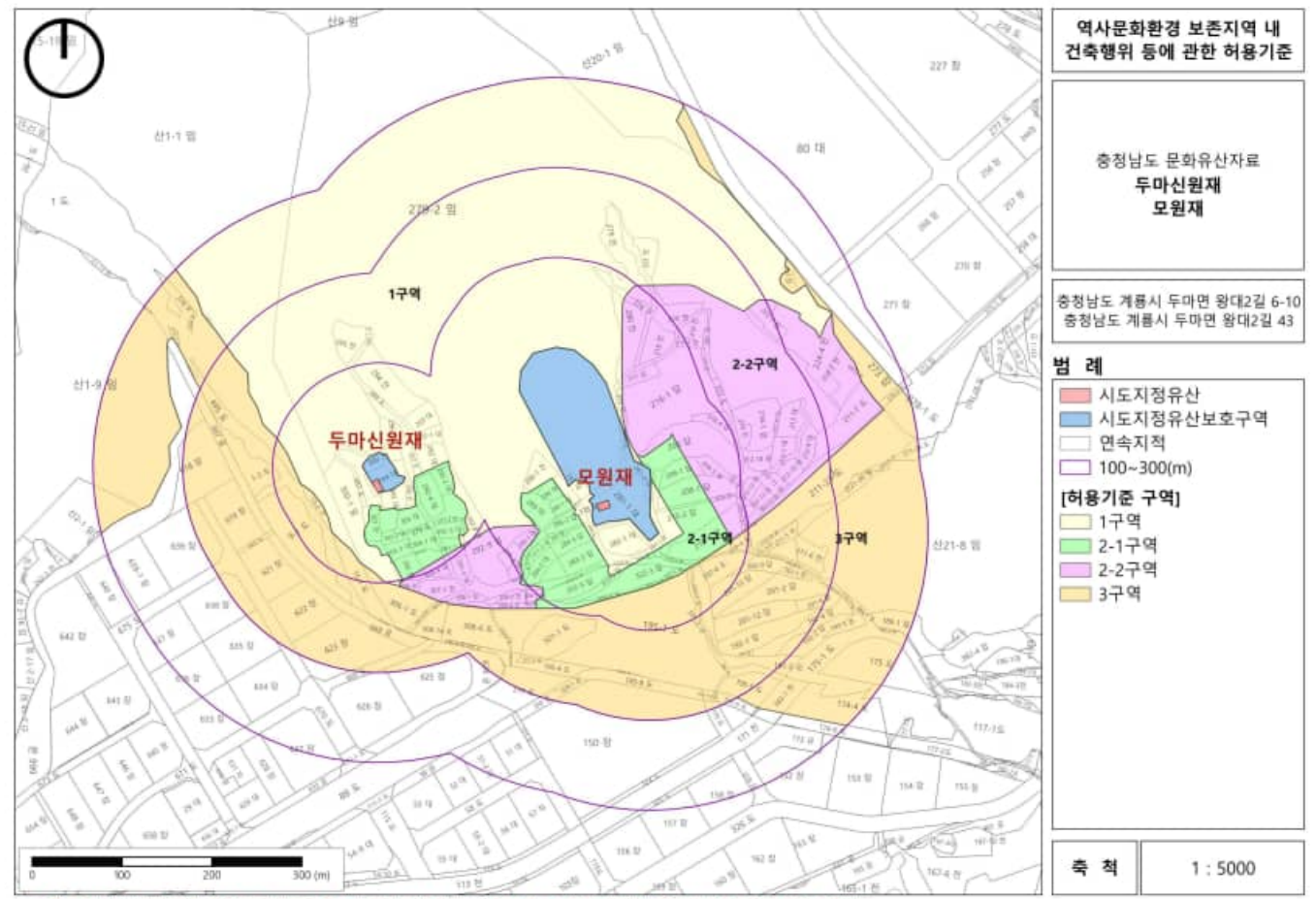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개별검토	
2구역	2-1	최고높이 5m 이하	최고높이 7.5m 이하
	2-2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2-3	최고높이 11m 이하	최고높이 15m 이하
3구역		계룡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개별검토 대상>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망각기·활쌍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지하 50m 이상 굴착 행위는 개별 검토함.	
		<참고사항>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상위지역 기준을 적용함. (예: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매장유산 유존지역 발굴행위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충청남도 지사와 사전 협의함.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붙임 27. 모원재, 두마신원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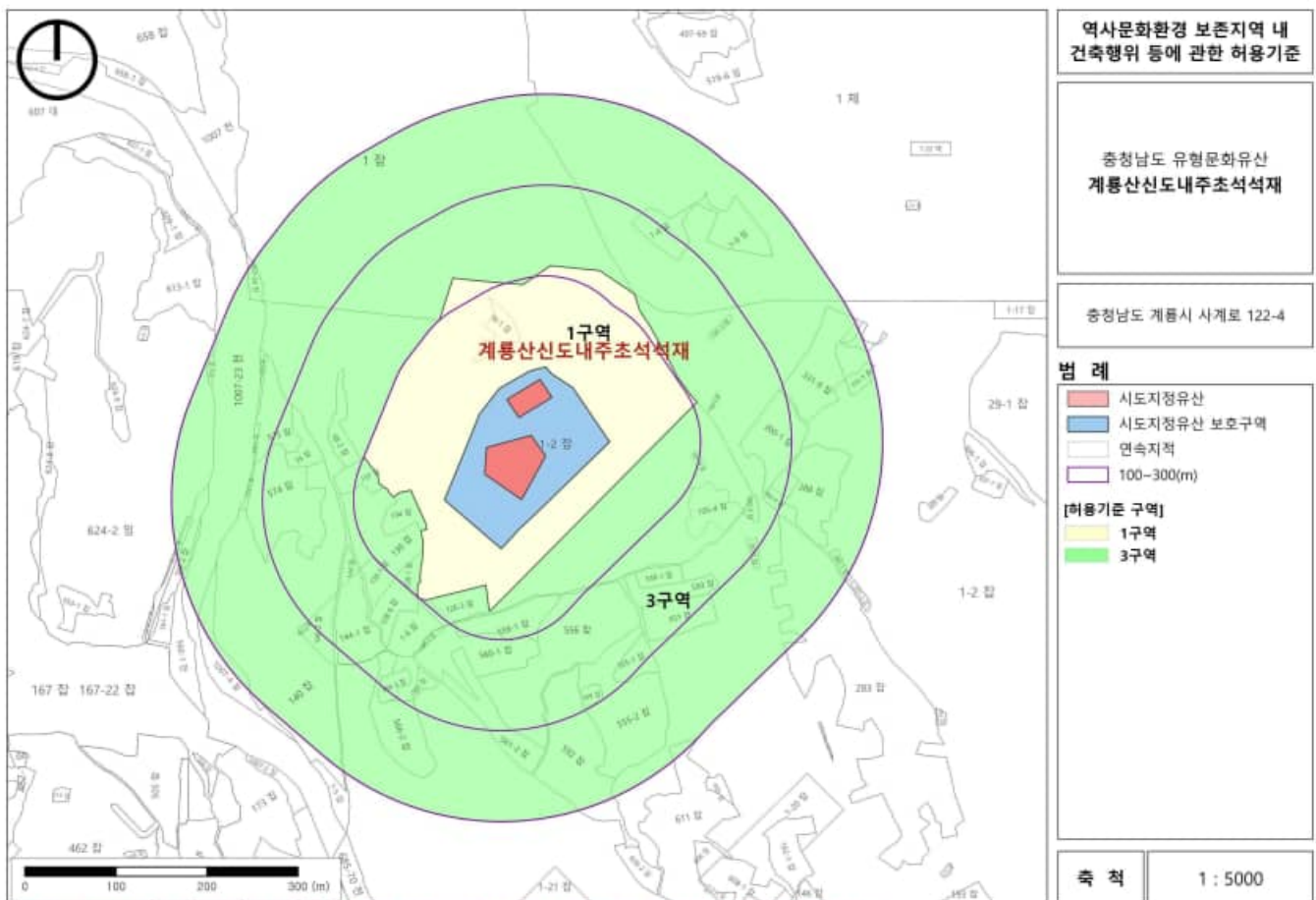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개별검토	
2구역	2-1	최고높이 5m 이하
	2-2	최고높이 8m 이하
3구역	계룡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개별검토 대상>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망각기·흡쌍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지하 50m 이상 굴착 행위는 개별 검토함. <참고사항>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상위지역 기준을 적용함. (예: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매장유산 유존지역 발굴행위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충청남도 지사와 사전 협의함.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붙임 28. 계룡산 신도내 주초석 석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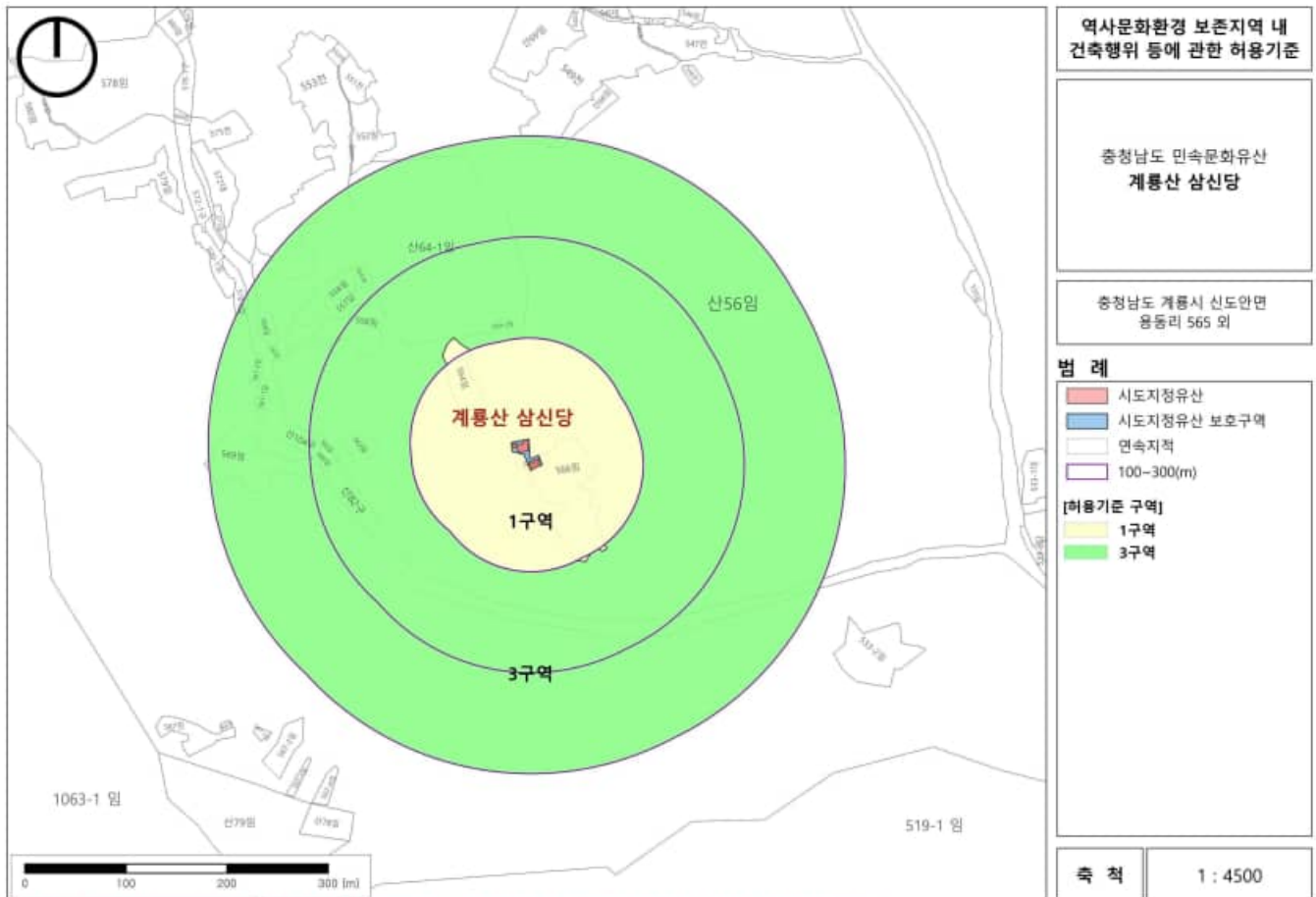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개별검토	
3구역	계룡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개별검토 대상>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땅깁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지하 50m 이상 굴착 행위는 개별 검토함. <참고사항>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상위지역 기준을 적용함. (예: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매장유산 유존지역 발굴행위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충청남도 지사와 사전 협의함.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붙임 29. 계룡산 삼신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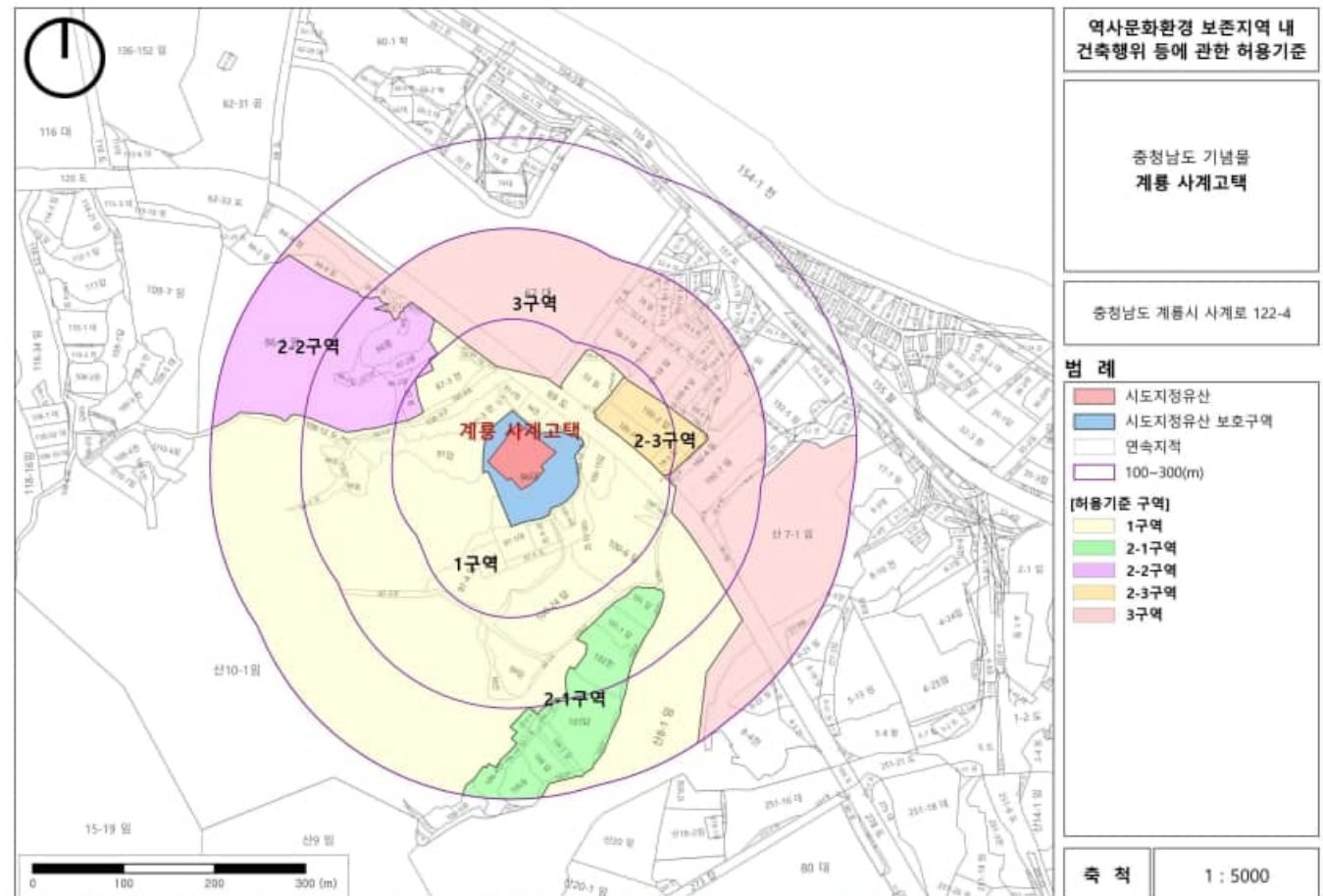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개별검토	
3구역	계룡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개별검토 대상>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m² 초과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땅깁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지하 50m 이상 굴착 행위는 개별 검토함. <참고사항>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상위지역 기준을 적용함. (예: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매장유산 유존지역 발굴행위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충청남도 지사와 사전 협의함.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본 도면은 실재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붙임 30. 계룡 사계고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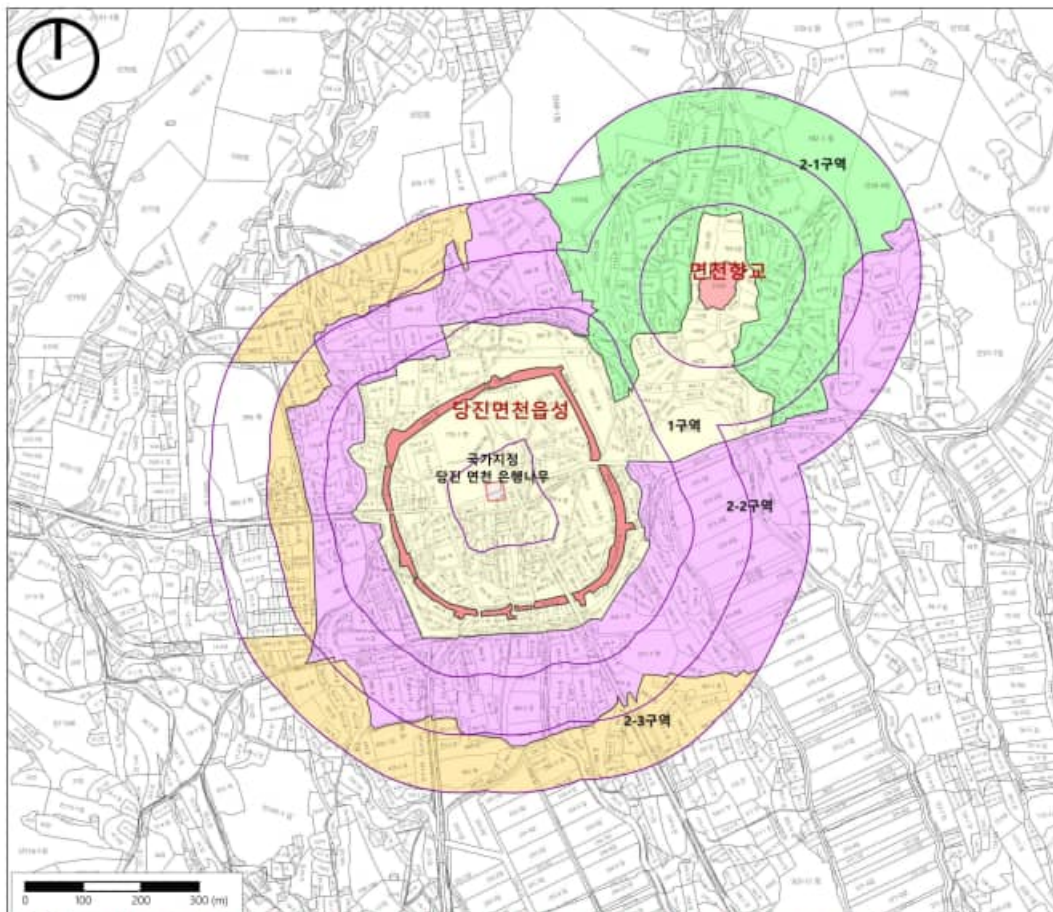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개별검토	
2구역	2-1	최고높이 5m 이하	최고높이 7.5m 이하
	2-2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2-3	최고높이 14m 이하	최고높이 18m 이하
3구역		계룡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개별검토 대상>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땅깍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지하 50m 이상 굴착 행위는 개별 검토함. <참고사항>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상위지역 기준을 적용함. (예: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매장유산 유존지역 발굴행위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충청남도 지사와 사전 협의함.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붙임 31. 당진 면천읍성, 면천향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개별검토	
2구역	2-1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2-2	최고높이 11m 이하	최고높이 15m 이하
	2-3	최고높이 17m 이하	최고높이 21m 이하
공통 사항		<개별검토 대상>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땅γκα-휴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지하 50m 이상 굴착 행위는 개별 검토함. <참고사항>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상위지역 기준을 적용함. (예: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매장유산 유존지역 발굴행위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충청남도 지사와 사전 협의함.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충청남도 기념물
당진면천읍성
면천향교

충남 당진시 동문1길 12-14 외
충남 당진시 동문2길 36-7

법 레

- 국가지정유산
- 시도지정유산
- 시도지정유산보호구역
- 연속지적
- 100~300(m)

[허용기준 구역]

- 1구역
- 2-1구역
- 2-2구역
- 2-3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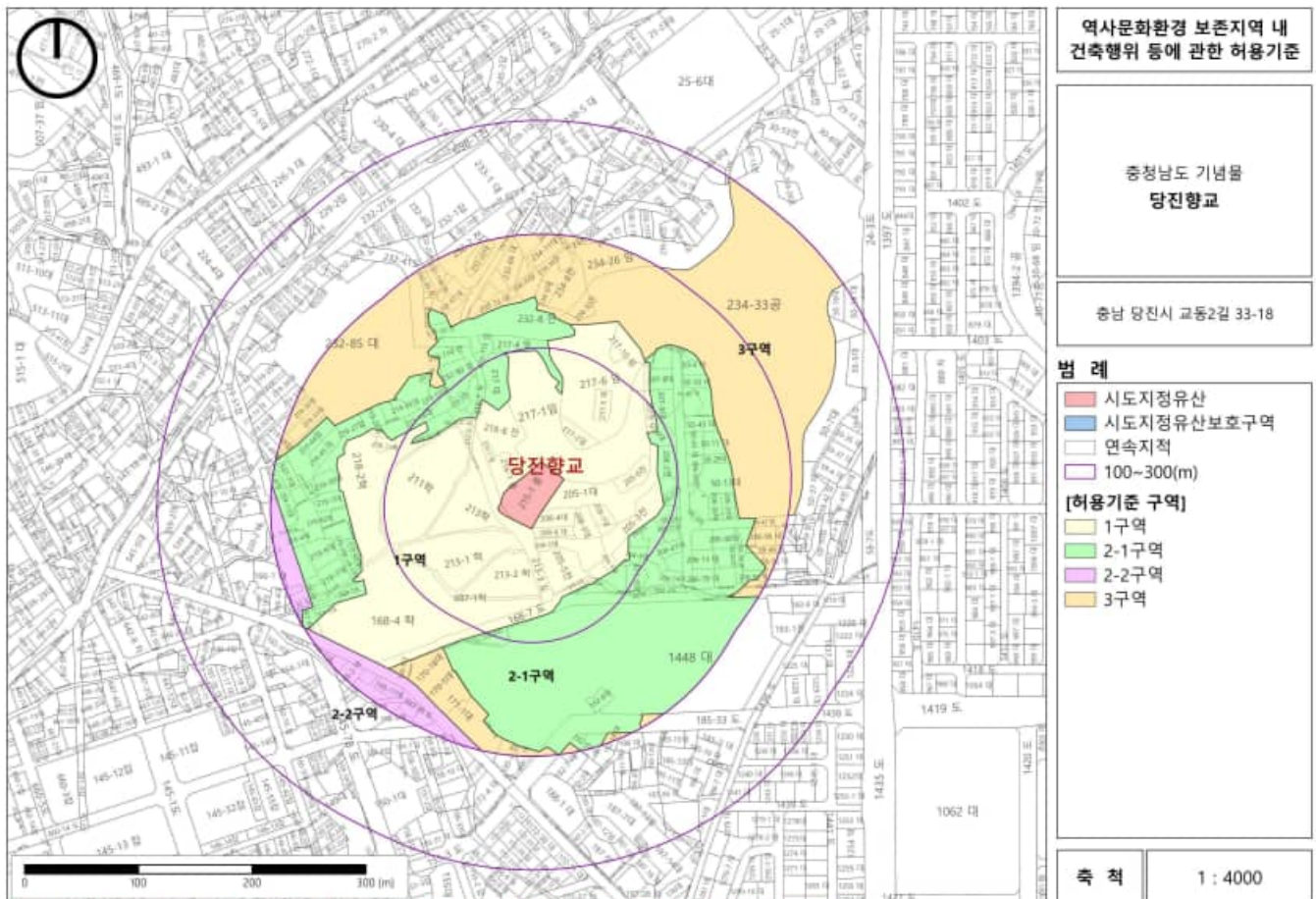
축 척

1 : 8000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붙임 32. 당진향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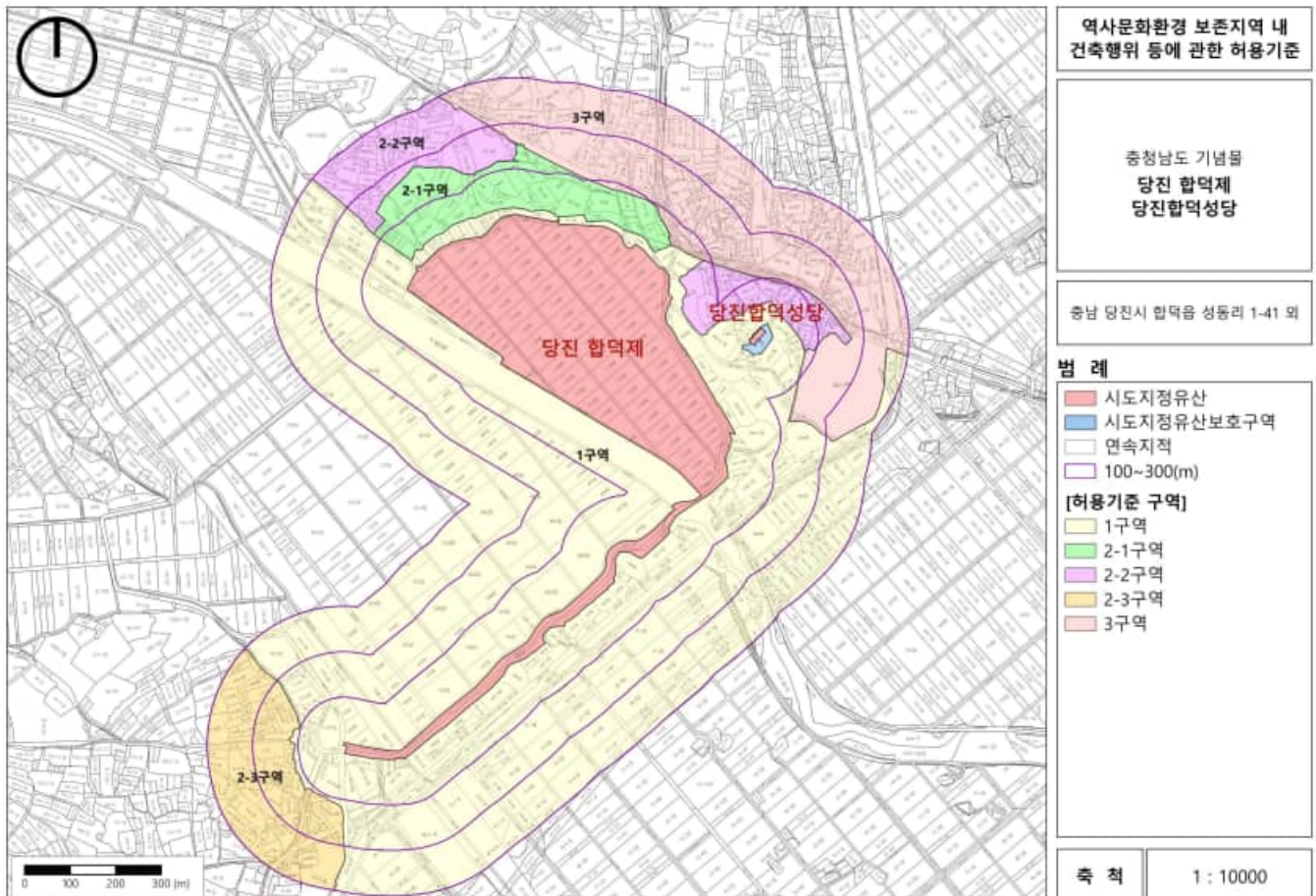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개별검토	
2구역	2-1	최고높이 14m 이하	최고높이 18m 이하
	2-2	최고높이 17m 이하	최고높이 21m 이하
3구역		당진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개별검토 대상>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땅깍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지하 50m 이상 굴착 행위는 개별 검토함. <참고사항>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상위지역 기준을 적용함. (예: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매장유산 유존지역 발굴행위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충청남도 지사와 사전 협의함.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국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붙임 33. 당진 합덕제, 당진 합덕성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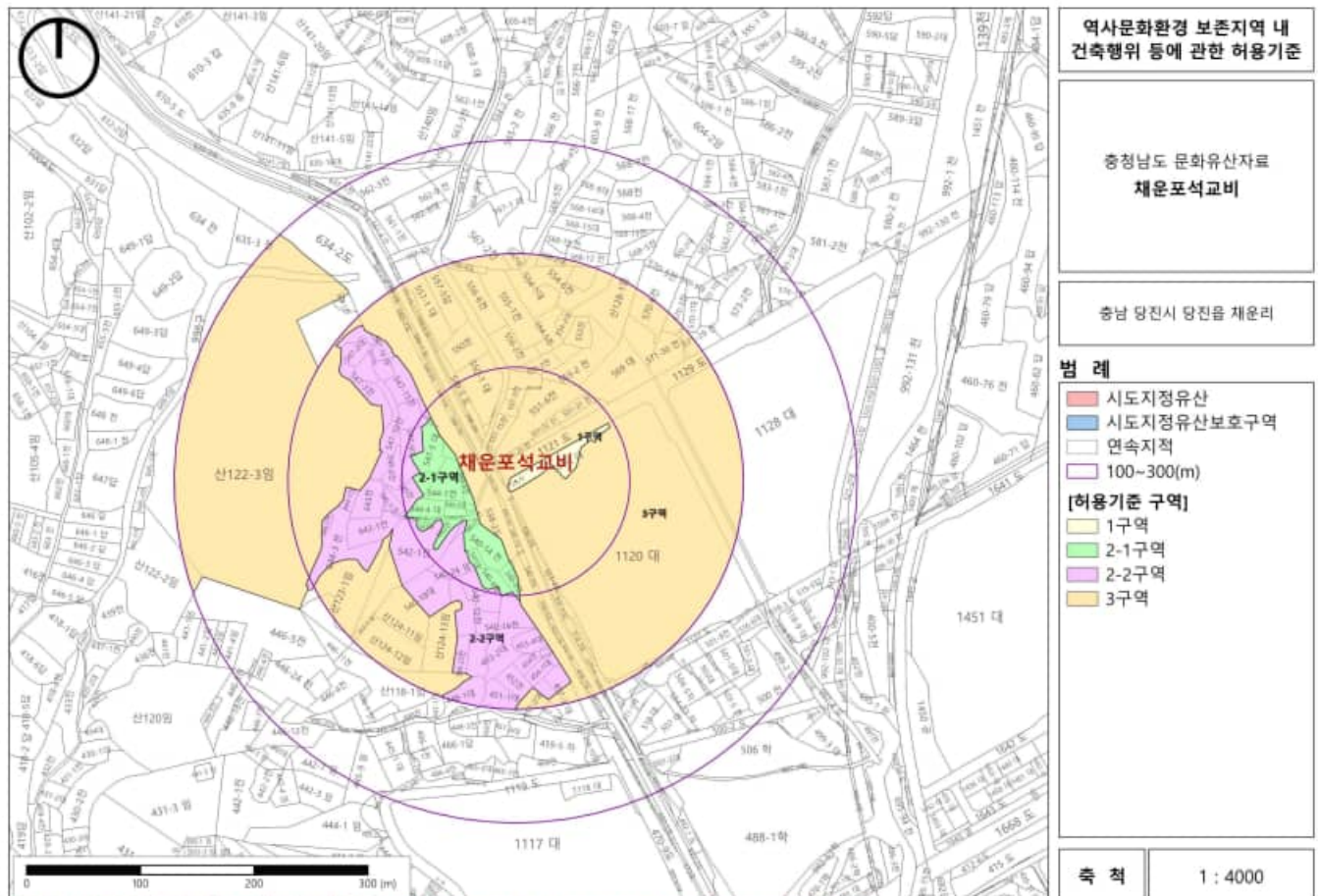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개별검토	
2구역	2-1	최고높이 5m 이하	최고높이 7.5m 이하
	2-2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2-3	최고높이 11m 이하	최고높이 15m 이하
3구역		당진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개별검토 대상>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한 번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땅깍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지하 50m 이상 굴착 행위는 개별 검토함. <참고사항>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상위지역 기준을 적용함. (예: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매장유산 유존지역 발굴행위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충청남도 지사와 사전 협의함.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붙임 34. 채운포석교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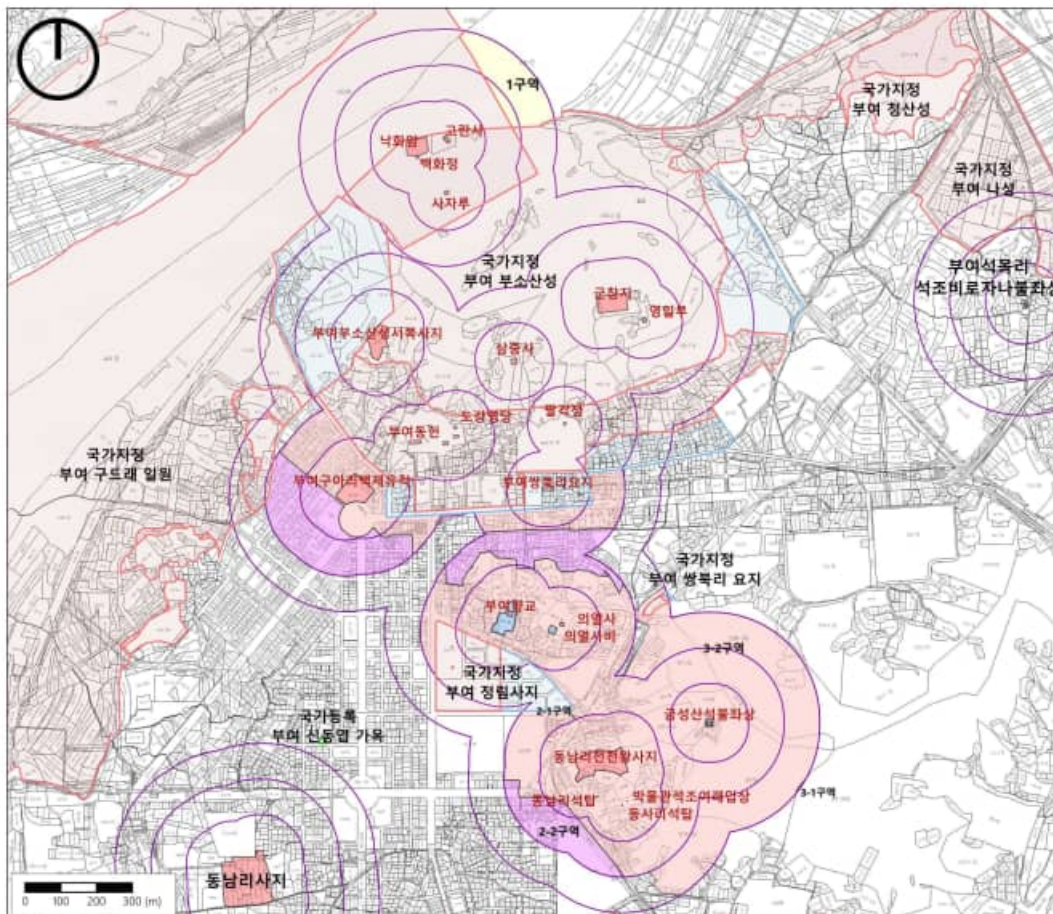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개별검토	
2구역	2-1	최고높이 11m 이하	최고높이 15m 이하
	2-2	최고높이 14m 이하	최고높이 18m 이하
3구역		당진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개별검토 대상>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땅깁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지하 50m 이상 굴착 행위는 개별 검토함. <참고사항>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상위지역 기준을 적용함. (예: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매장유산 유존지역 발굴행위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충청남도 지사와 사전 협의함.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붙임 35. 동남리 전천왕사지 등 21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개별검토	
2구역	2-1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2-2	최고높이 17m 이하	최고높이 21m 이하
3구역	3-1	부여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3-2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로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개별검토 대상>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땅깍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지하 50m 이상 굴착 행위는 개별 검토함. <참고사항>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상위지역 기준을 적용함. (예: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매장유산 유존지역 발굴행위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충청남도 지사와 사전 협의함.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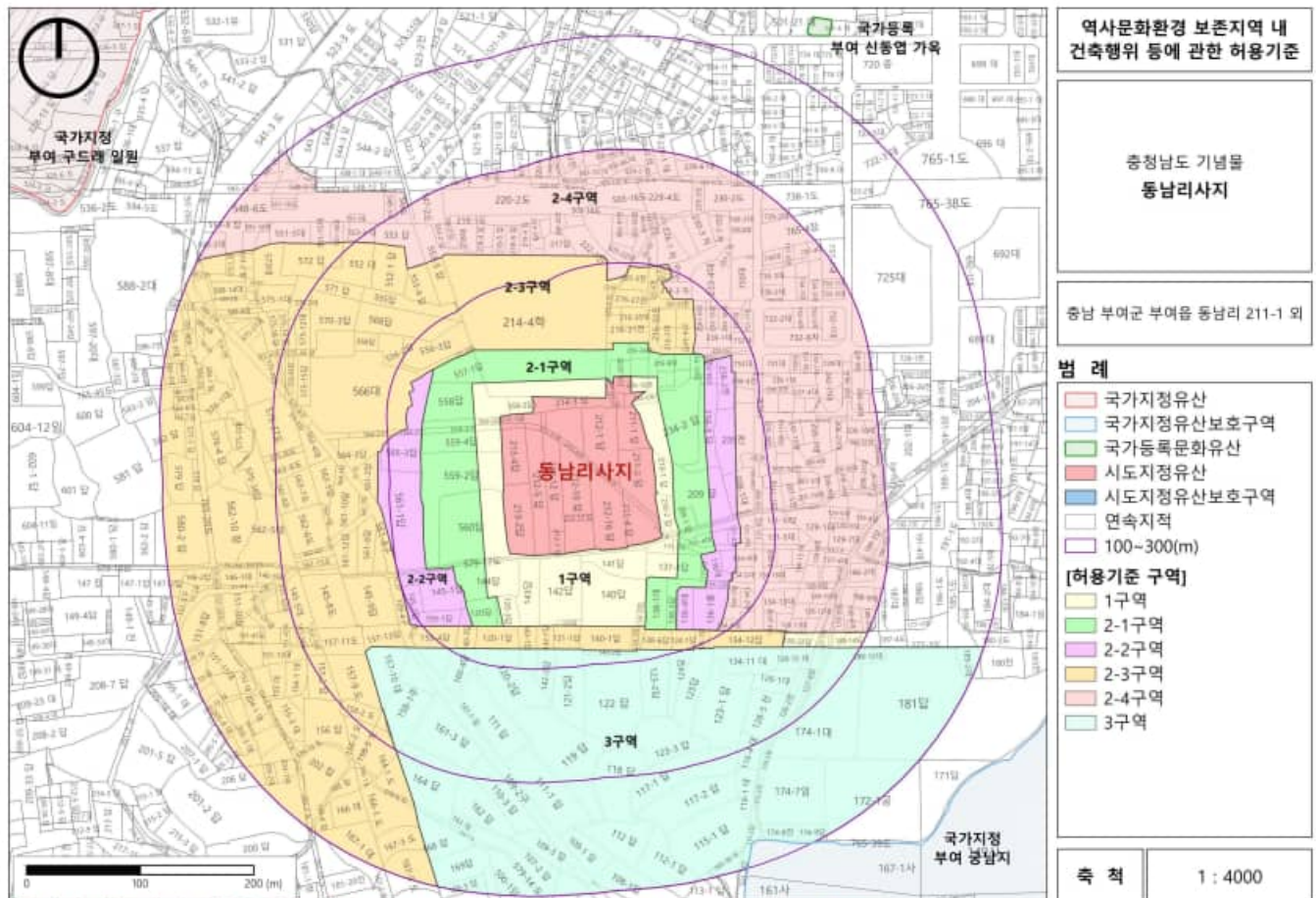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충청남도 기념물 동남리전천왕사지 부여구마리역제유역 부여부소산성지부여부소산성지 부여왕족묘지 부여왕고	충청남도 문화유산자료 고분사 군항지 도량형당 동남리석탑 동사리석탑 백동관석조여래입상 백동관석탑 석회암 사자후 상층사 연일후 의열사 필각정
충청남도 유형문화유산 금성산석불화상 부여동헌 의열사비	충청남도 자연유산자료 낙화암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211-1 외	
법 레	
국가지정유산	국가지정유산보호구역
국가지정유산보호구역	국가등록문화유산
시도지정유산	시도지정유산보호구역
연속지적	100~300(m)
[허용기준 구역]	
1구역	2-1구역
2-2구역	3-1구역
3-2구역	
축 척	1 : 13000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중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및 타도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붙임 36. 동남리사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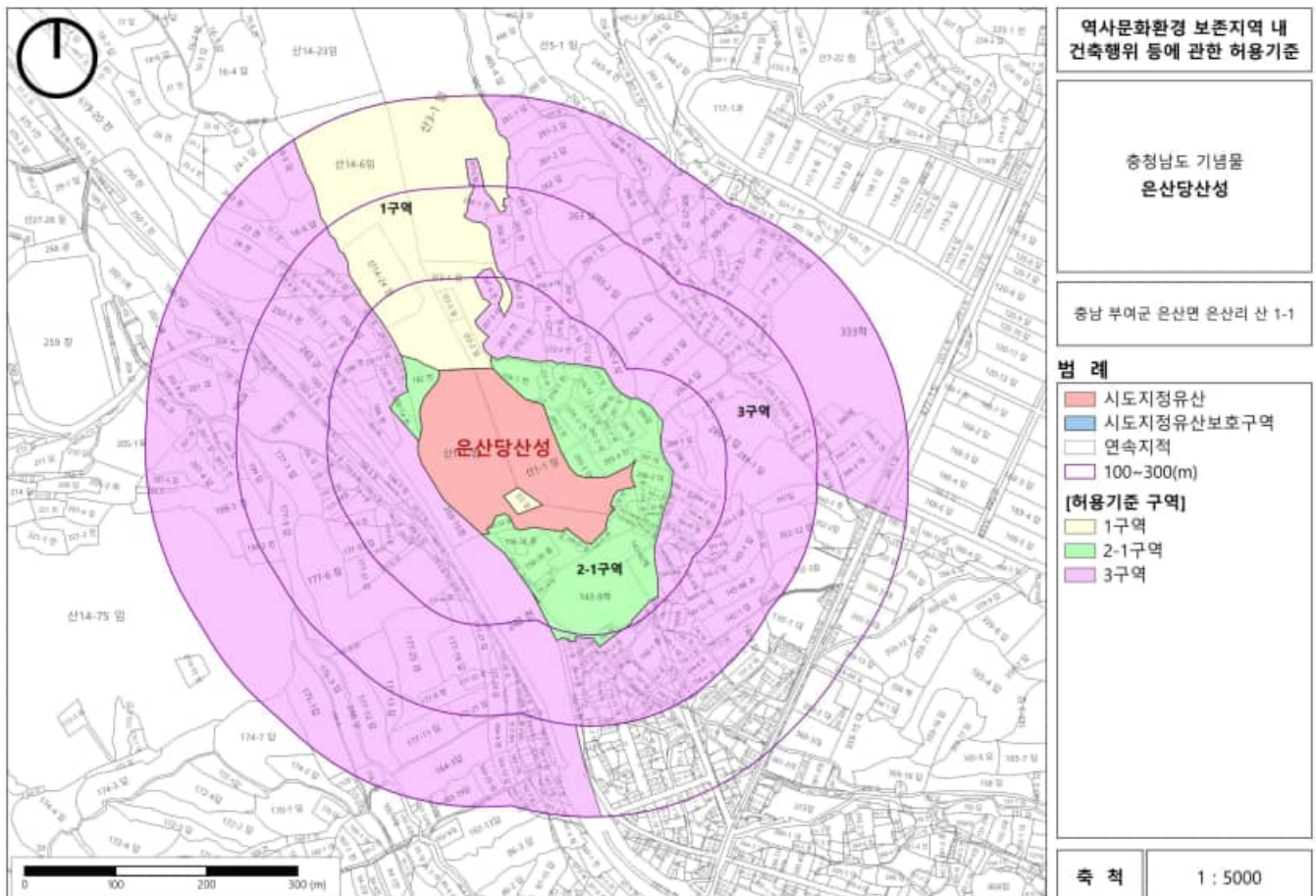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개별검토	
2구역	2-1	최고높이 5m 이하	최고높이 7.5m 이하
	2-2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2-3	최고높이 11m 이하	최고높이 15m 이하
	2-4	최고높이 17m 이하	최고높이 21m 이하
3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로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개별검토 대상>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망각기·휴향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지하 50m 이상 굴착 행위는 개별 검토함. <참고사항>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상위지역 기준을 적용함. (예: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매장유산 유존지역 발굴행위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충청남도 지사와 사전 협의함.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중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국적 및 타도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붙임 37. 은산당산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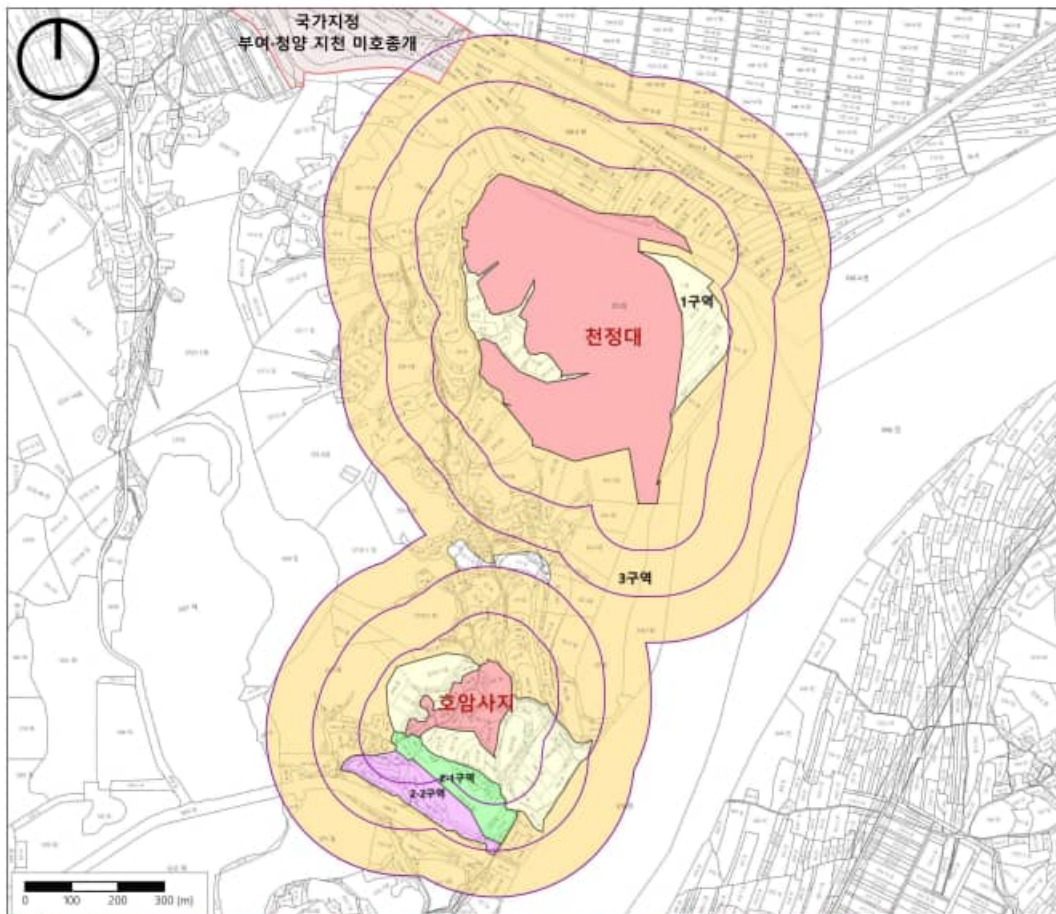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개별검토	
2구역	2-1	최고높이 8m 이하
3구역		최고높이 12m 이하
구역	부여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개별검토 대상>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땅깍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지하 50m 이상 굴착 행위는 개별 검토함. <참고사항>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상위지역 기준을 적용함. (예: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매장유산 유존지역 발굴행위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충청남도 지사와 사전 협의함.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붙임 38. 호암사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개별검토	
2구역	2-1	최고높이 5m 이하	최고높이 7.5m 이하
	2-2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부여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개별검토 대상>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땅깁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지하 50m 이상 굴착 행위는 개별 검토함. <참고사항>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상위지역 기준을 적용함. (예: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매장유산 유존지역 발굴행위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충청남도 지사와 사전 협의함.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충청남도 기념물
호암사지

충청남도 자연유산
천정대

충남 부여군 백제문화호암길 106-24
충남 부여군 규암면 호암리 156-2 외

법 레

- 국가지정유산
- 시도지정유산
- 시도지정유산보호구역
- 연속지적
- 100~300(m)

[허용기준 구역]

- 1구역
- 2-1구역
- 2-2구역
- 3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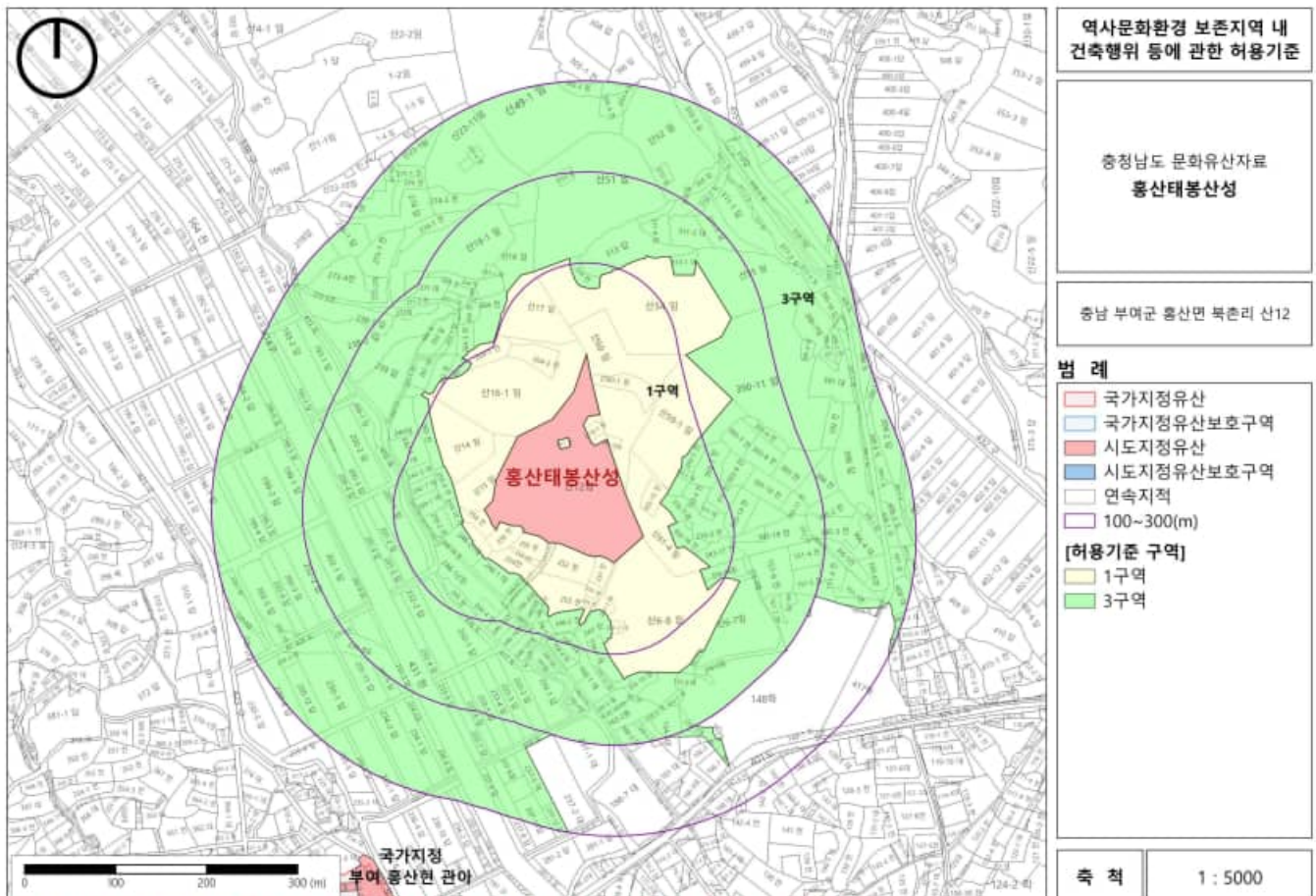
축 척

1 : 10000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붙임 39. 홍산 태봉산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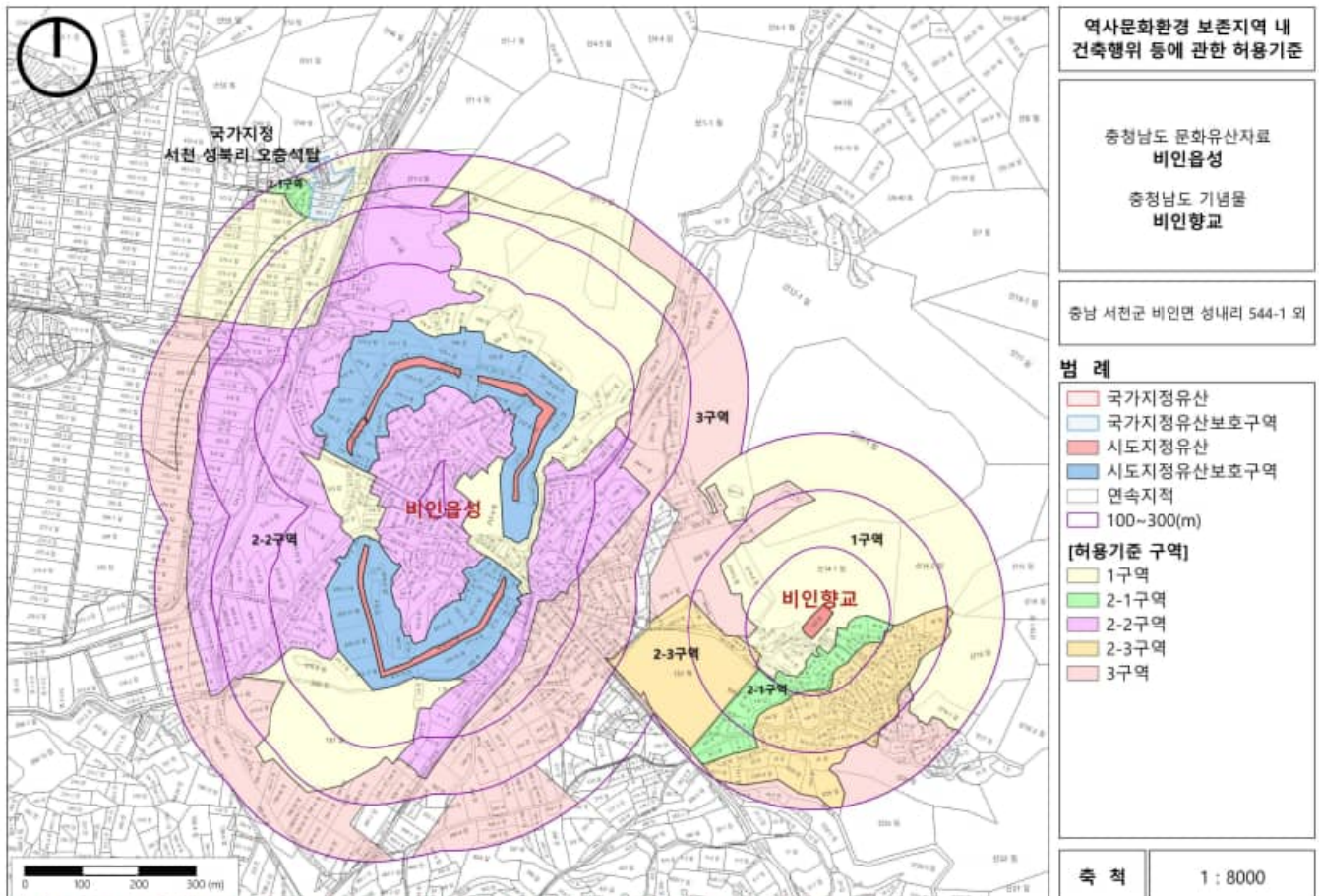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개별검토	
3구역	부여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개별검토 대상>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한 번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땅깍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지하 50m 이상 굴착 행위는 개별 검토함. <참고사항>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상위지역 기준을 적용함. (예: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매장유산 유존지역 발굴행위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홍산현 관아(사적)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준용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충청남도 지사와 사전 협의함.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붙임 40. 비인향교, 비인읍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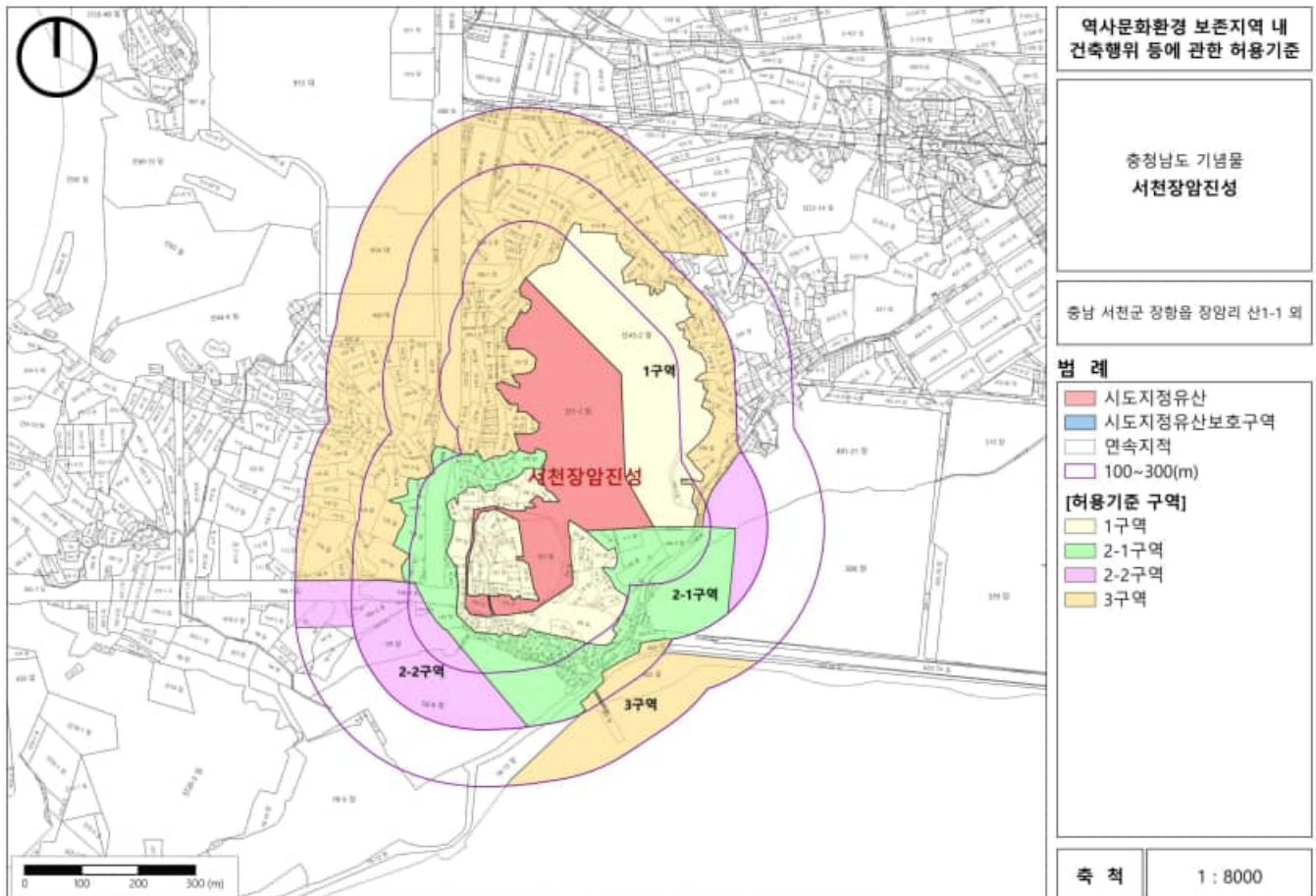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개별검토	
2구역	2-1	최고높이 5m 이하	최고높이 7.5m 이하
	2-2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2-3	최고높이 14m 이하	최고높이 18m 이하
3구역		서천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개별검토 대상>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땅깍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지하 50m 이상 굴착 행위는 개별 검토함. <참고사항>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상위지역 기준을 적용함. (예: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매장유산 유존지역 발굴행위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충청남도 지사와 사전 협의함.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붙임 41. 서천 장암진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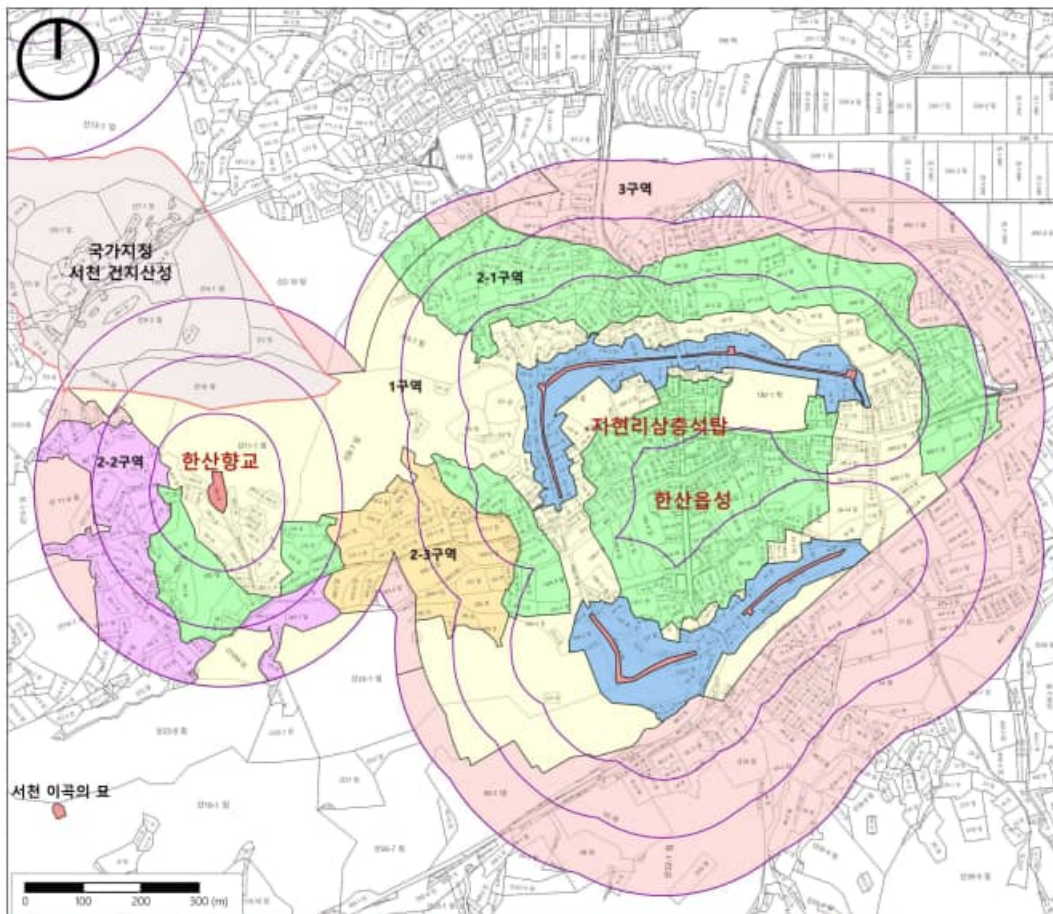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개별검토	
2구역	2-1	최고높이 5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2-2	최고높이 14m 이하	최고높이 18m 이하
3구역		서천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개별검토 대상>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한 번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땅깍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지하 50m 이상 굴착 행위는 개별 검토함.	
		<참고사항>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상위지역 기준을 적용함. (예: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매장유산 유존지역 발굴행위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충청남도 지사와 사전 협의함.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붙임 42. 한산향교 등 3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개별검토	
2구역	2-1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2-2	최고높이 14m 이하	최고높이 18m 이하
	2-3	최고높이 17m 이하	최고높이 21m 이하
3구역		서천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개별검토 대상>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한 번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땅깍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벌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지하 50m 이상 굴착 행위는 개별 검토함. <참고사항>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상위지역 기준을 적용함. (예: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매장유산 유존지역 발굴행위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충청남도 지사와 사전 협의함.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충청남도 기념물
한산향교

충청남도 문화유산자료
자연리삼층석탑
한산읍성

충남 서천군 한산면 지현리 152-3 외

범례

- 국가지정유산
- 시도지정유산
- 시도지정유산보호구역
- 연속지적
- 100~300(m)
- [허용기준 구역]
- 1구역
- 2-1구역
- 2-2구역
- 2-3구역
- 3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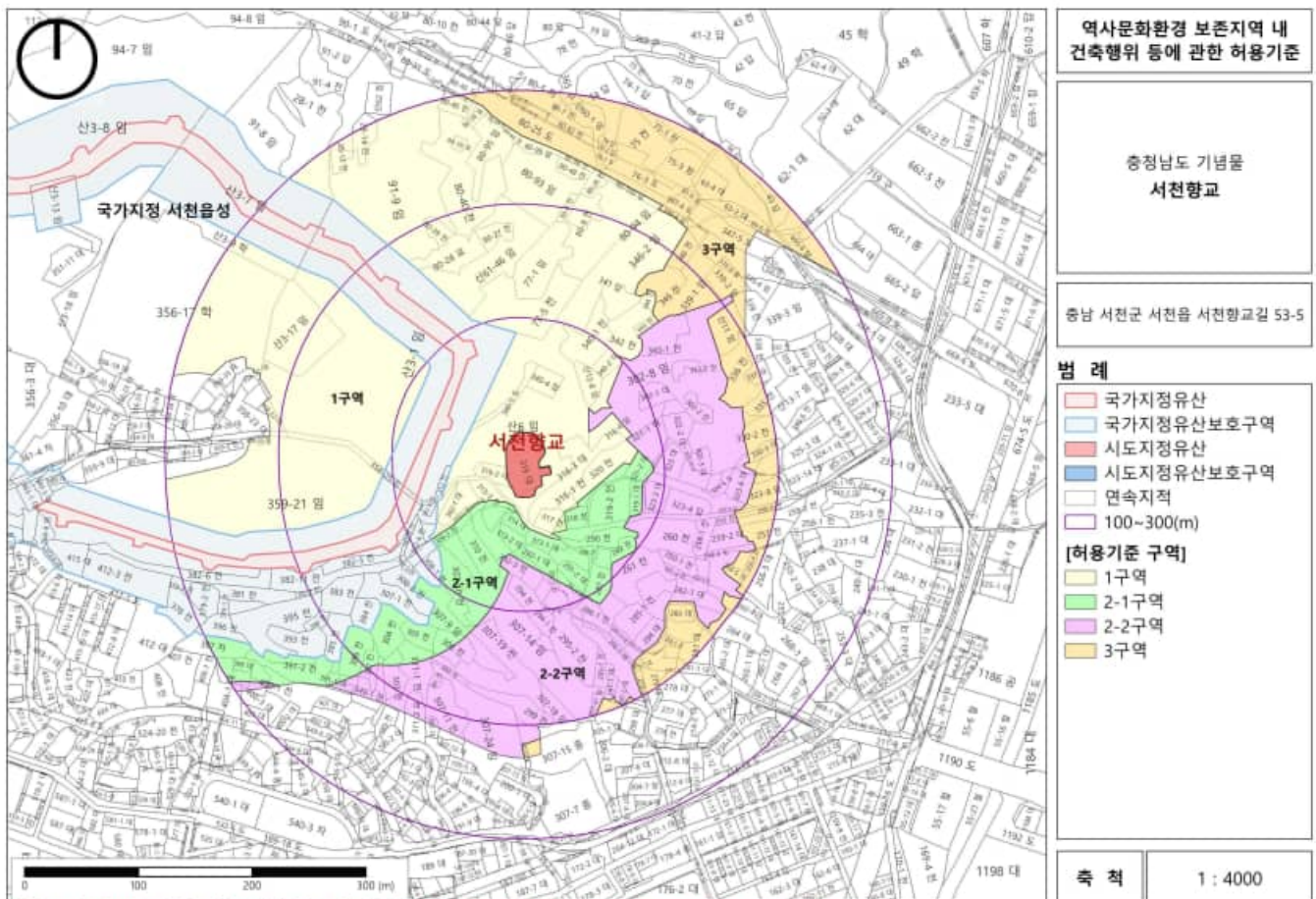
축척

1 : 8000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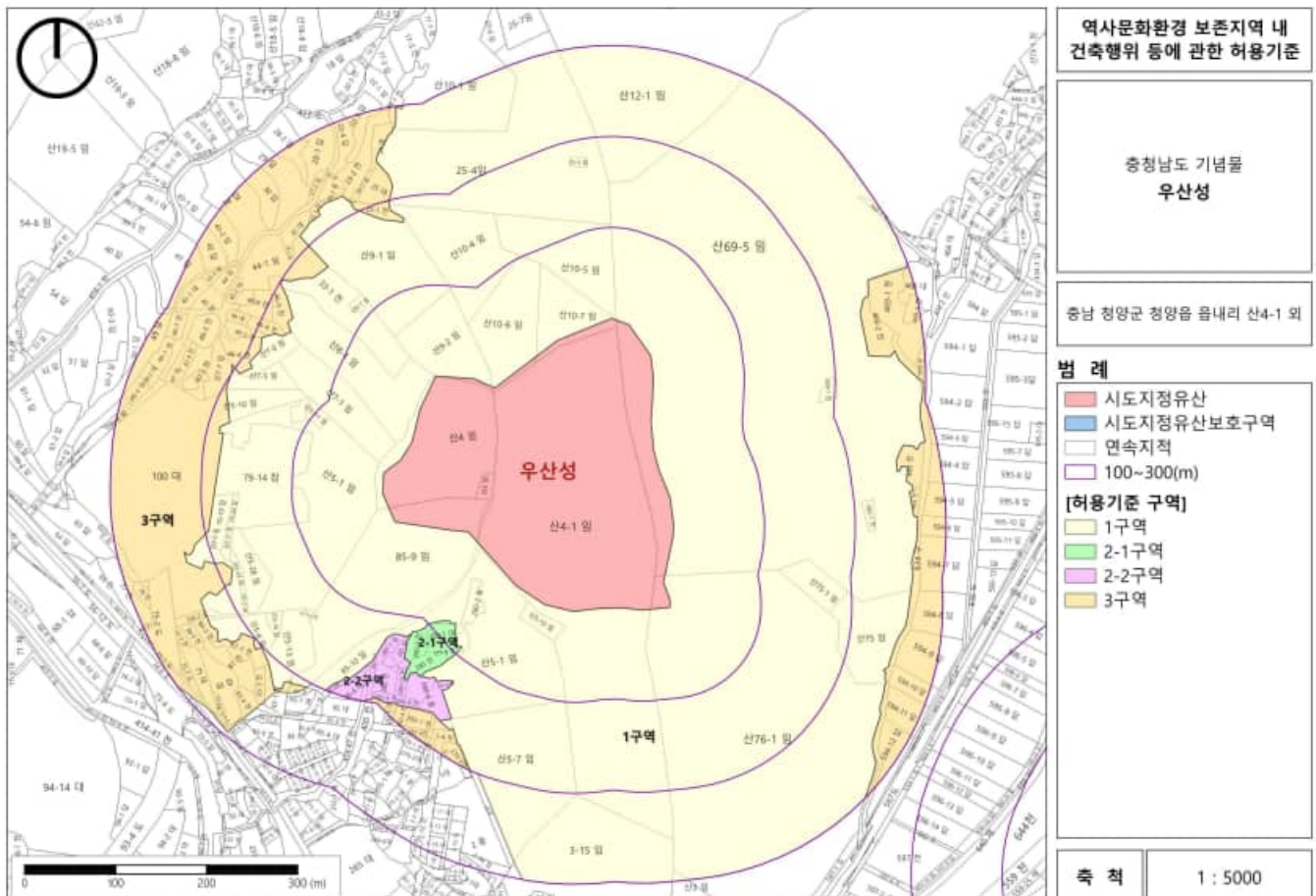
붙임 43. 서천향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개별검토	
2구역	2-1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2-2	최고높이 17m 이하	최고높이 21m 이하
3구역		서천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개별검토 대상>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땅깍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지하 50m 이상 굴착 행위는 개별 검토함. <참고사항>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상위지역 기준을 적용함. (예: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매장유산 유존지역 발굴행위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충청남도 지사와 사전 협의함.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붙임 44. 우산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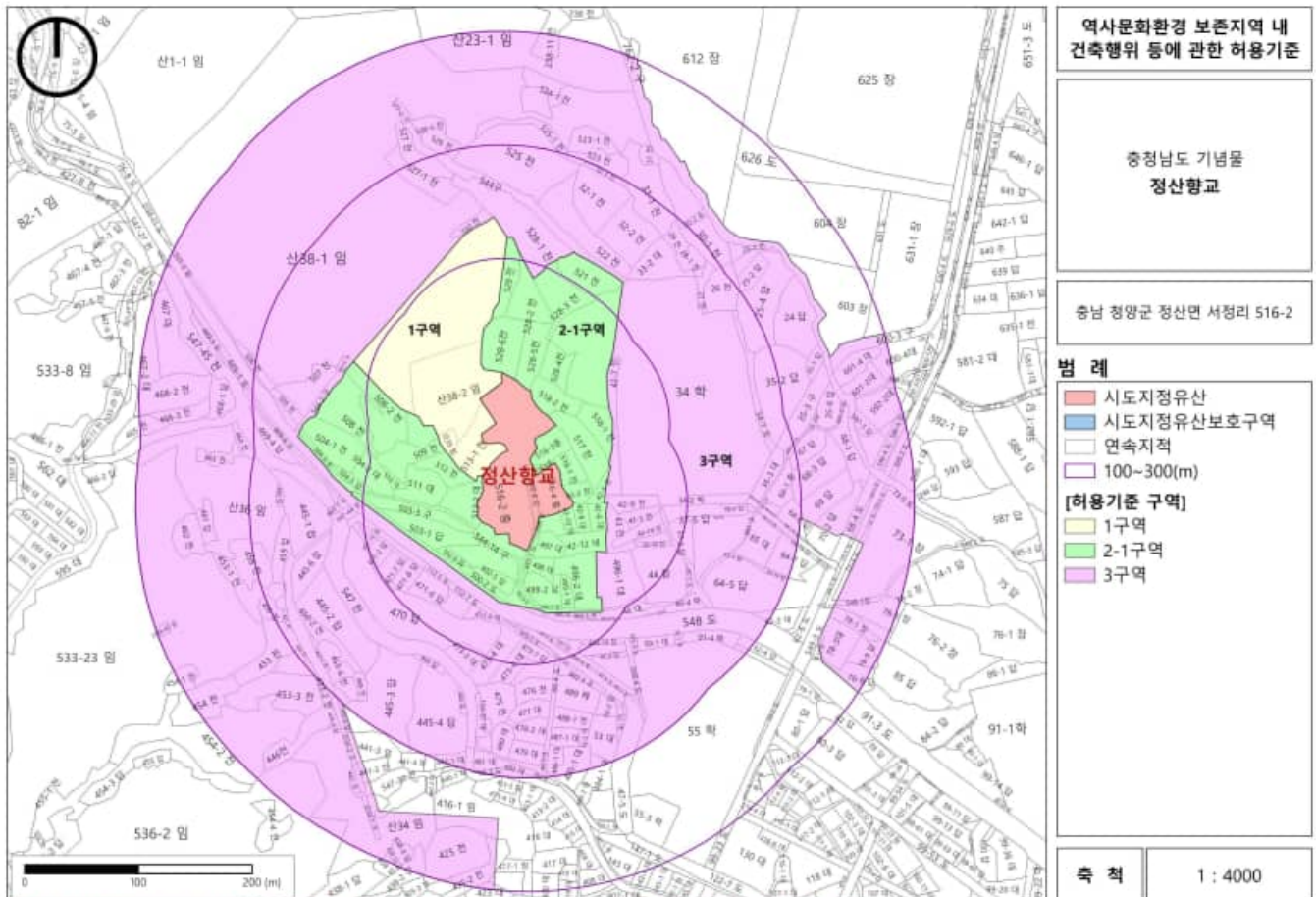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개별검토	
2구역	2-1	최고높이 5m 이하	최고높이 7.5m 이하
	2-2	최고높이 11m 이하	최고높이 15m 이하
3구역		청양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개별검토 대상>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땅깍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지하 50m 이상 굴착 행위는 개별 검토함. <참고사항>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상위지역 기준을 적용함. (예: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매장유산 유존지역 발굴행위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충청남도 지사와 사전 협의함.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붙임 45. 정산향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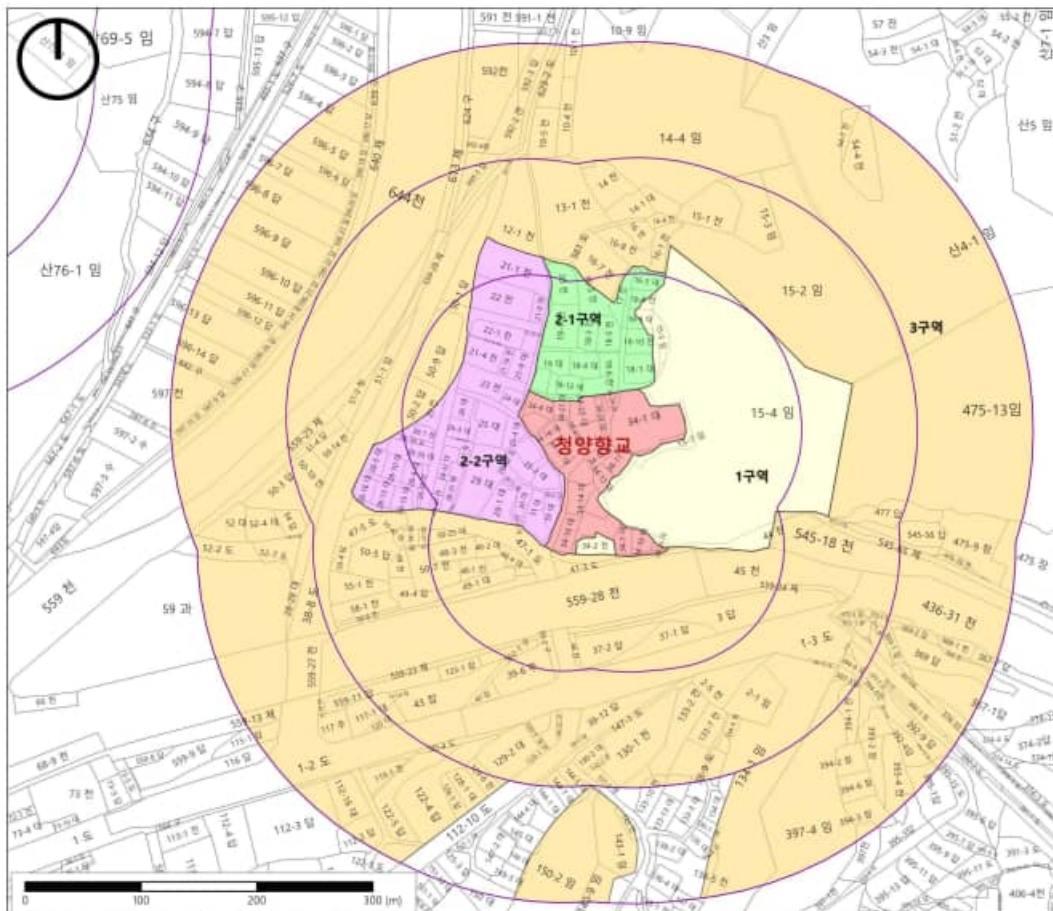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개별검토	
2구역	2-1	최고높이 5m 이하
3구역		최고높이 7.5m 이하
구역	청양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개별검토 대상>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땅깍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지하 50m 이상 굴착 행위는 개별 검토함. <참고사항>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상위지역 기준을 적용함. (예: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매장유산 유존지역 발굴행위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충청남도 지사와 사전 협의함.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붙임 46. 청양향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개별검토	
2구역	2-1	최고높이 5m 이하	최고높이 7.5m 이하
	2-2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청양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개별검토 대상>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땅깍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지하 50m 이상 굴착 행위는 개별 검토함. <참고사항>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상위지역 기준을 적용함. (예: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매장유산 유존지역 발굴행위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충청남도 지사와 사전 협의함.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충청남도 기념물
청양향교

충남 청양군 청양읍 교필리 34-1 외

범 례

- 시도지정유산
- 시도지정유산보호구역
- 연속지적
- 100~300(m)

[허용기준 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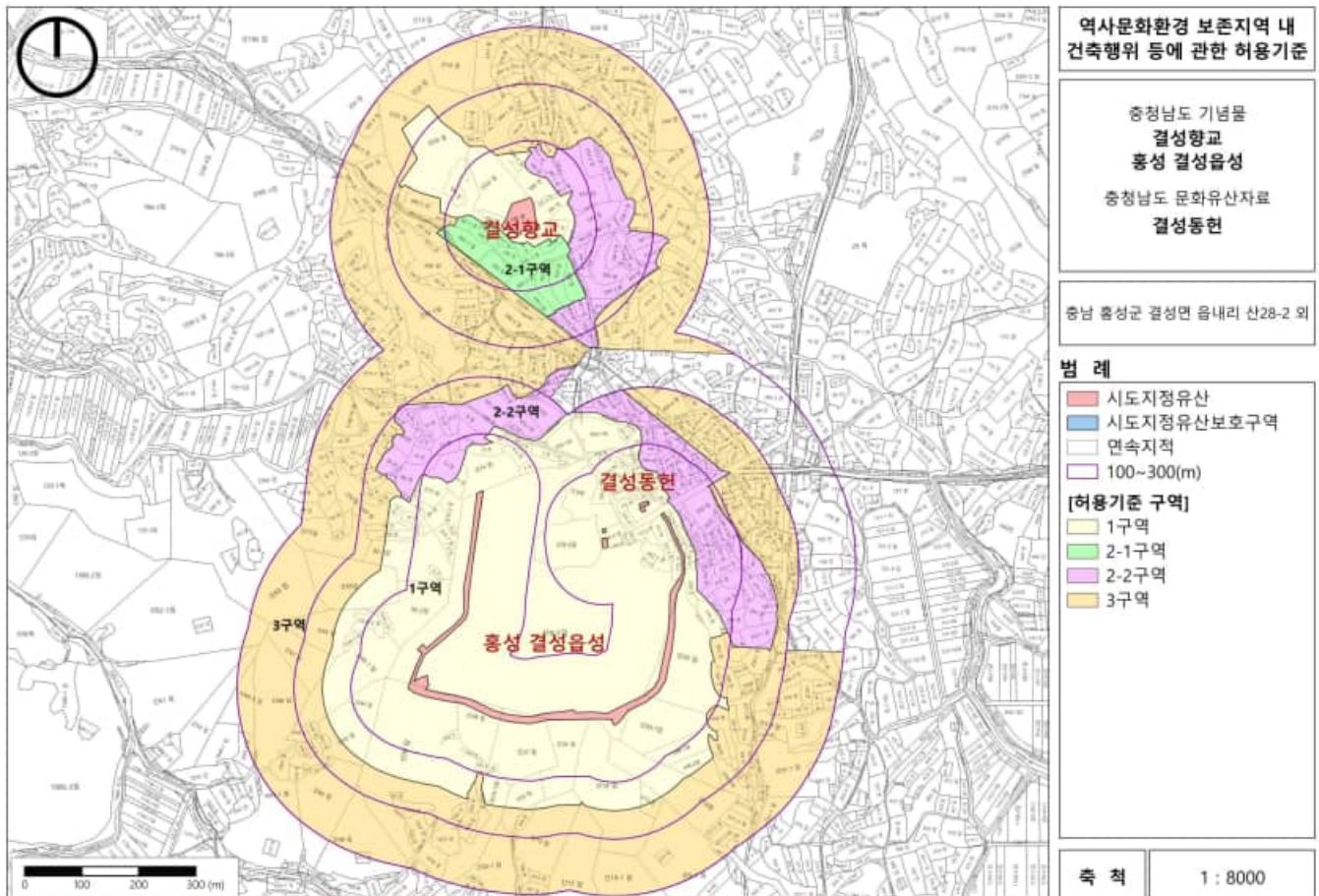
- 1구역
- 2-1구역
- 2-2구역
- 3구역

축 척 1 : 4000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붙임 47. 결성향교 등 3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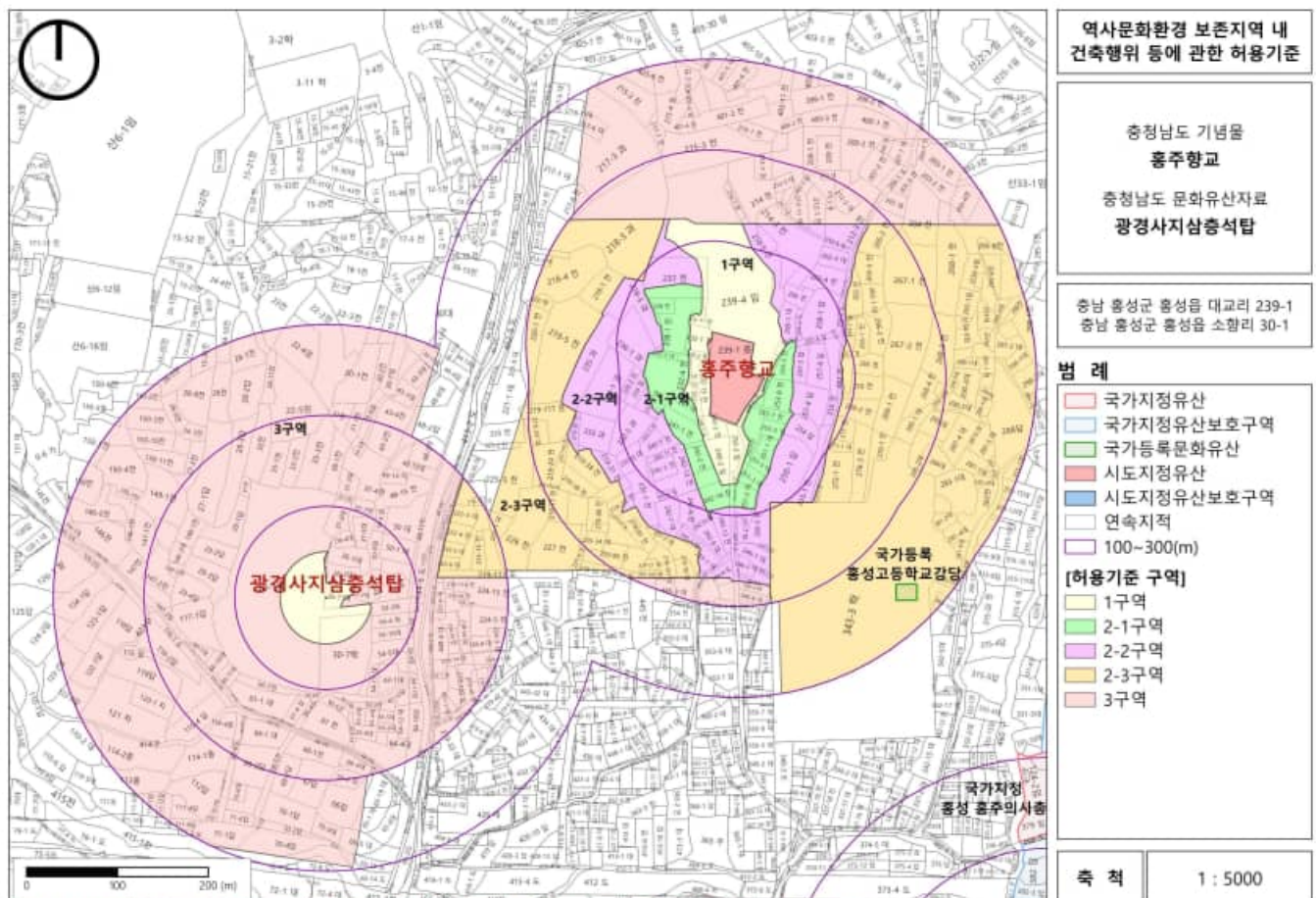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개별검토	
2구역	2-1	최고높이 5m 이하	최고높이 7.5m 이하
	2-2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홍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동 사항		<개별검토 대상>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땅깍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지하 50m 이상 굴착 행위는 개별 검토함.	
		<참고사항>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상위지역 기준을 적용함. (예: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매장유산 유존지역 발굴행위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충청남도 지사와 사전 협의함.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붙임 48. 홍주향교, 광경사지 삼층석탑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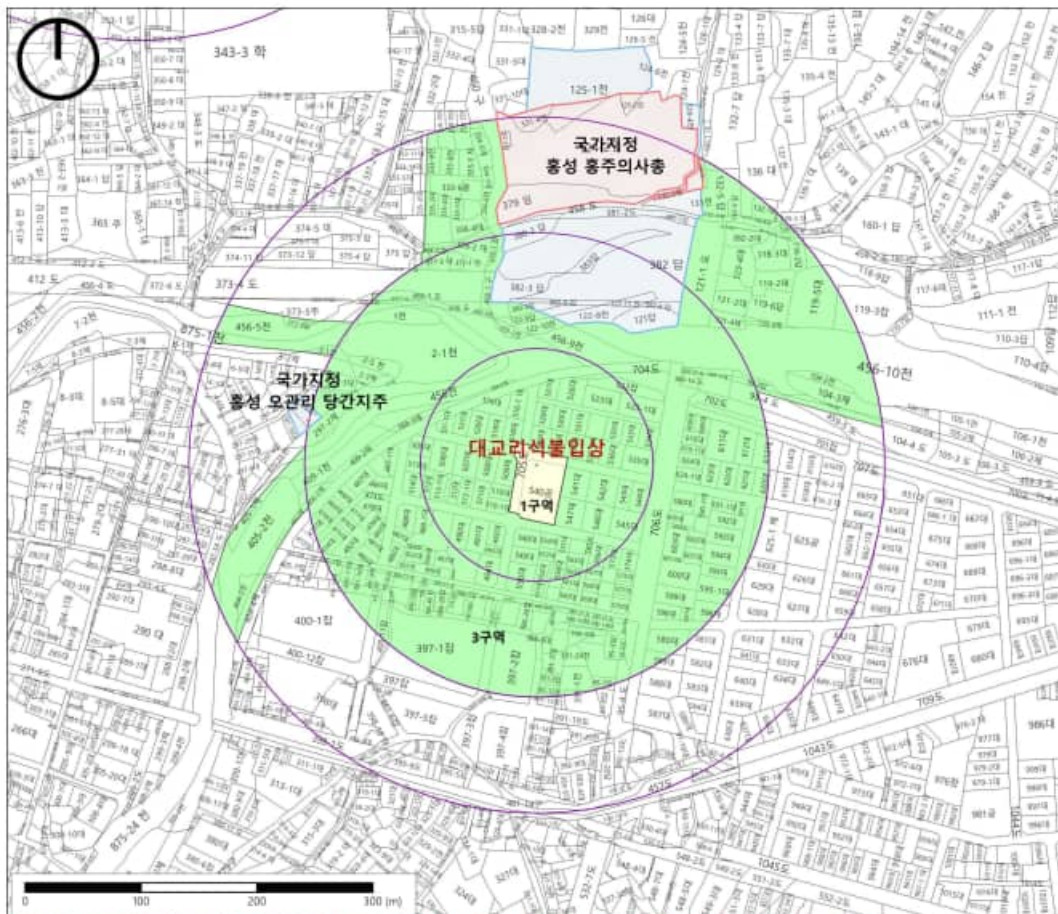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개별검토	
2구역	2-1	최고높이 5m 이하	최고높이 7.5m 이하
	2-2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2-3	최고높이 14m 이하	최고높이 18m 이하
3구역		홍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개별검토 대상>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땅깍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철도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지하 50m 이상 굴착 행위는 개별 검토함. <참고사항>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상위지역 기준을 적용함. (예: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매장유산 유존지역 발굴행위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충청남도 지사와 사전 협의함.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중부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사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붙임 49. 대교리 석불입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개별검토	
3구역	홍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개별검토 대상>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땅깁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지하 50m 이상 굴착 행위는 개별 검토함. <참고사항>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상위지역 기준을 적용함. (예: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매장유산 유존지역 발굴행위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충청남도 지사와 사전 협의함.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충청남도 문화유산자료
대교리석불입상

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540

법 레

- 국가지정유산
- 국가지정유산보호구역
- 시도지정유산
- 시도지정유산보호구역
- 연속지적
- 100~300(m)

[허용기준 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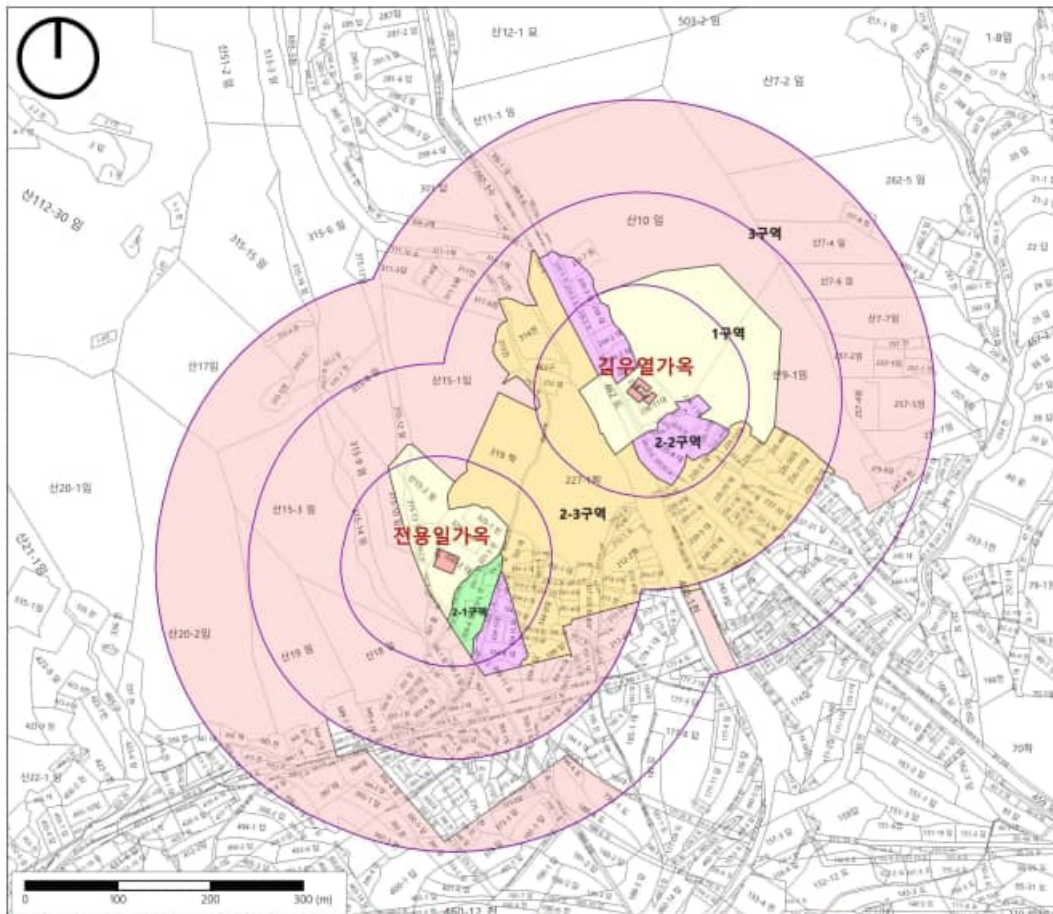
- 1구역
- 3구역

축 척 1 : 4000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및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붙임 50. 김우열가옥, 전용일가옥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개별검토	
2구역	2-1	최고높이 5m 이하	최고높이 7.5m 이하
	2-2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2-3	최고높이 14m 이하	최고높이 18m 이하
3구역		홍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개별검토 대상>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땅깍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지하 50m 이상 굴착 행위는 개별 검토함. <참고사항>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상위지역 기준을 적용함. (예: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매장유산 유존지역 발굴행위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충청남도 지사와 사전 협의함.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충청남도 민속문화유산 김우열가옥 전용일가옥

충남 홍성군 갈산로 79
충남 홍성군 상촌로9번길 21-1

법 레

- 시도지정유산
- 시도지정유산보호구역
- 연속지적
- 100~300(m)

[허용기준 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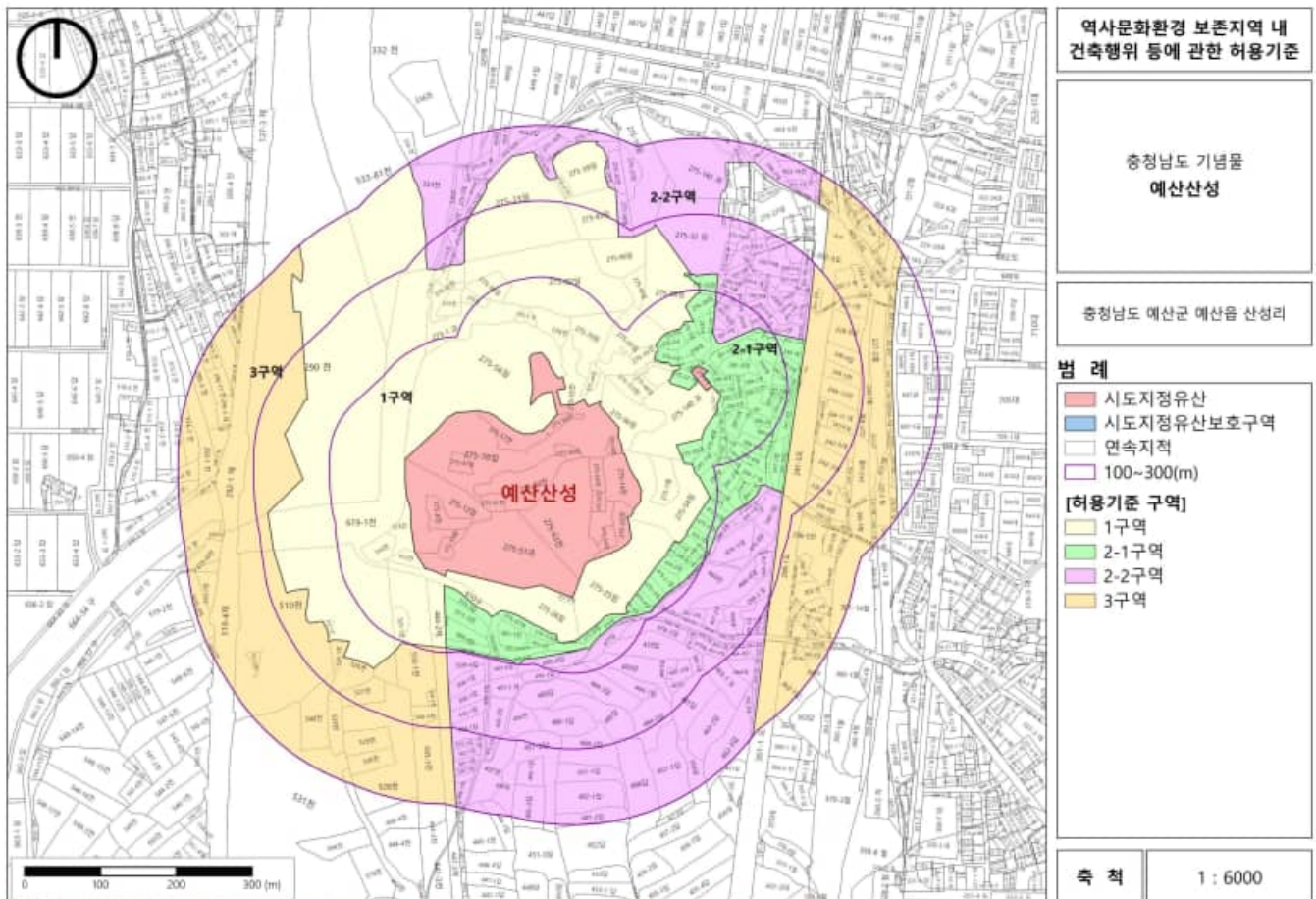
- 1구역
- 2-1구역
- 2-2구역
- 2-3구역
- 3구역

축 척 1 : 5000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붙임 51. 예산산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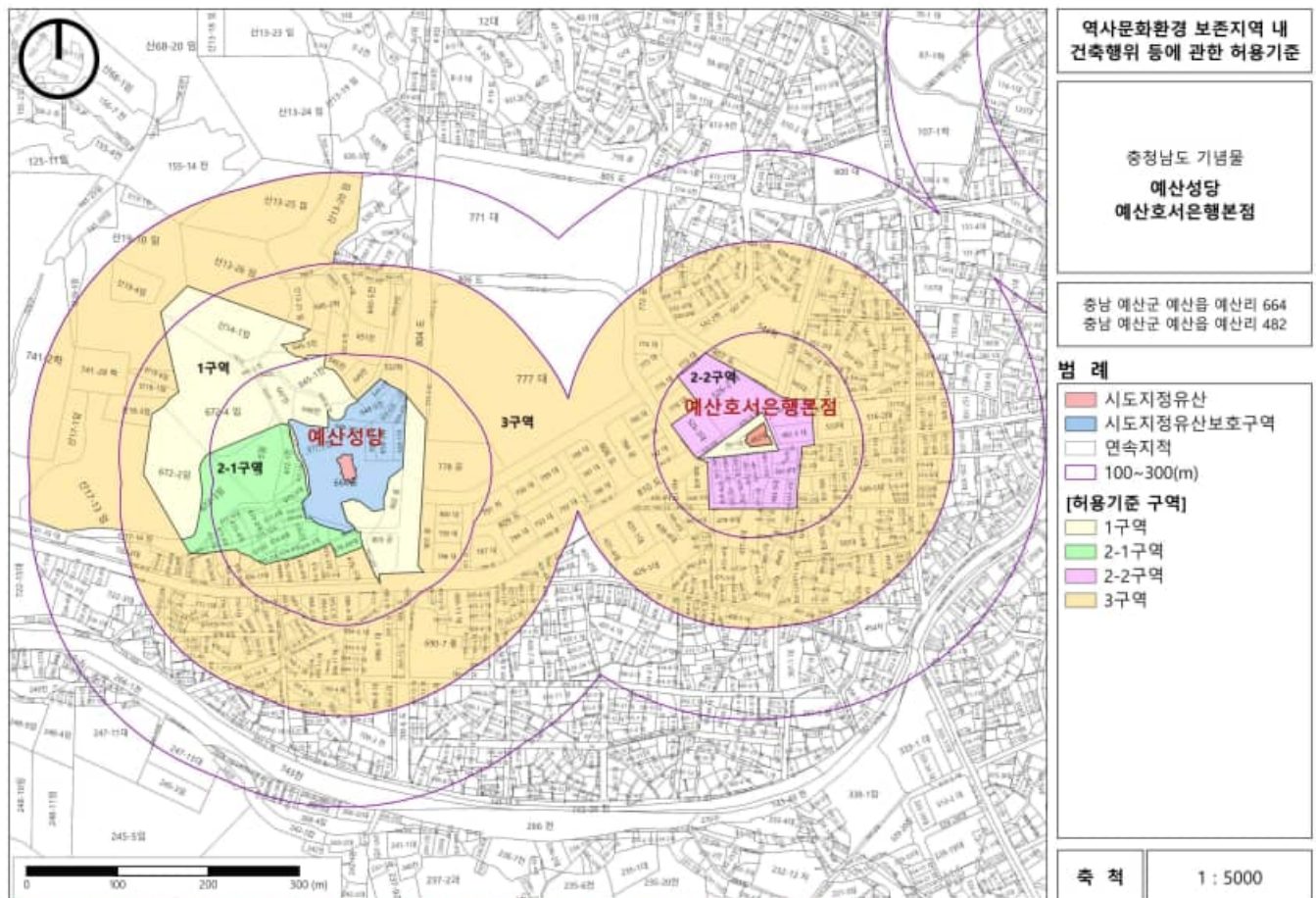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개별검토	
2구역	2-1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2-2	최고높이 14m 이하	최고높이 18m 이하
3구역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개별검토 대상>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땅깍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지하 50m 이상 굴착 행위는 개별 검토함. <참고사항>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상위지역 기준을 적용함. (예: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매장유산 유존지역 발굴행위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충청남도 지사와 사전 협의함.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붙임 52. 예산성당, 예산호서은행본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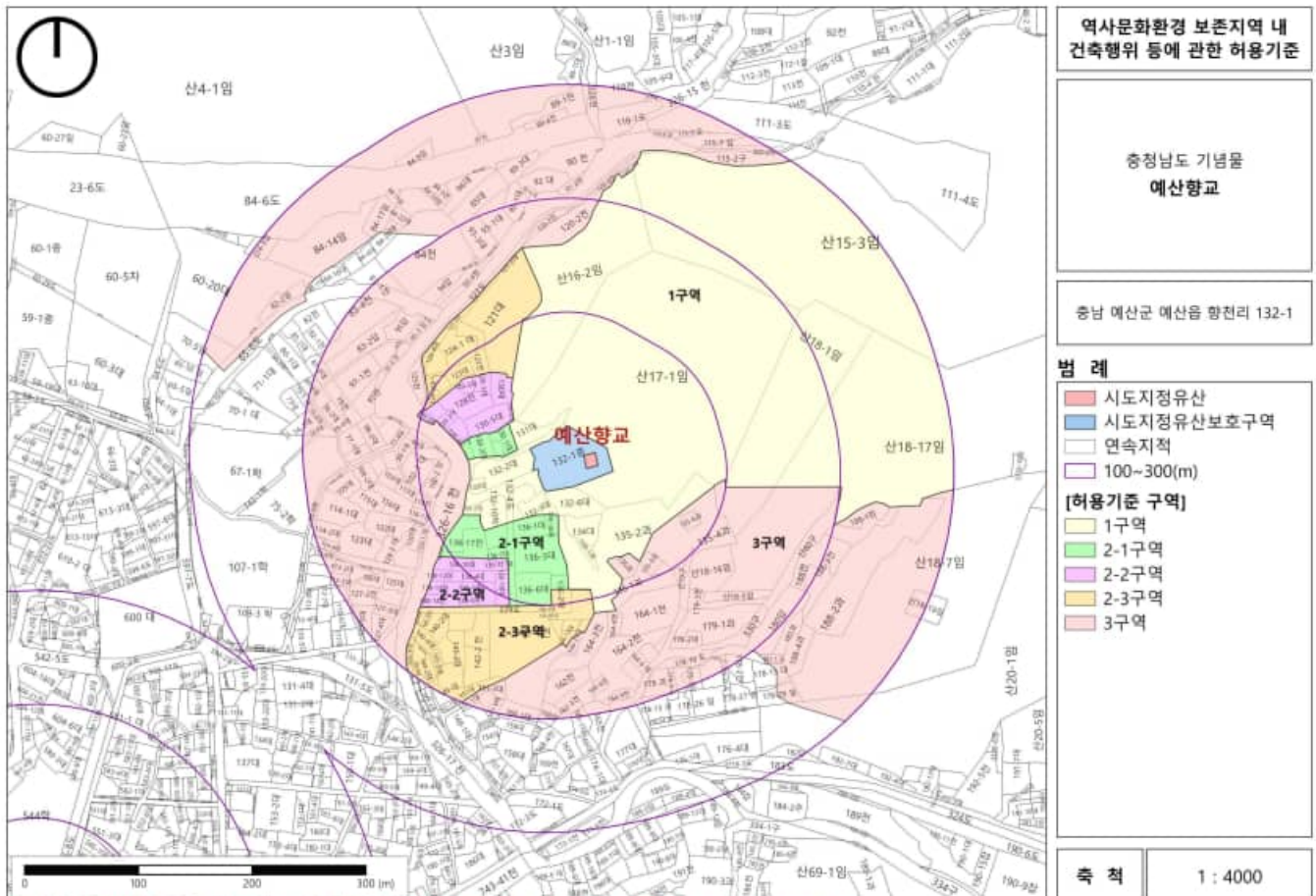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개별검토	
2구역	2-1	최고높이 8m 이하
	2-2	최고높이 14m 이하
3구역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개별검토 대상>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한 번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땅깍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지하 50m 이상 굴착 행위는 개별 검토함. <참고사항>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상위지역 기준을 적용함. (예: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매장유산 유존지역 발굴행위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충청남도 지사와 사전 협의함.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중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붙임 53. 예산향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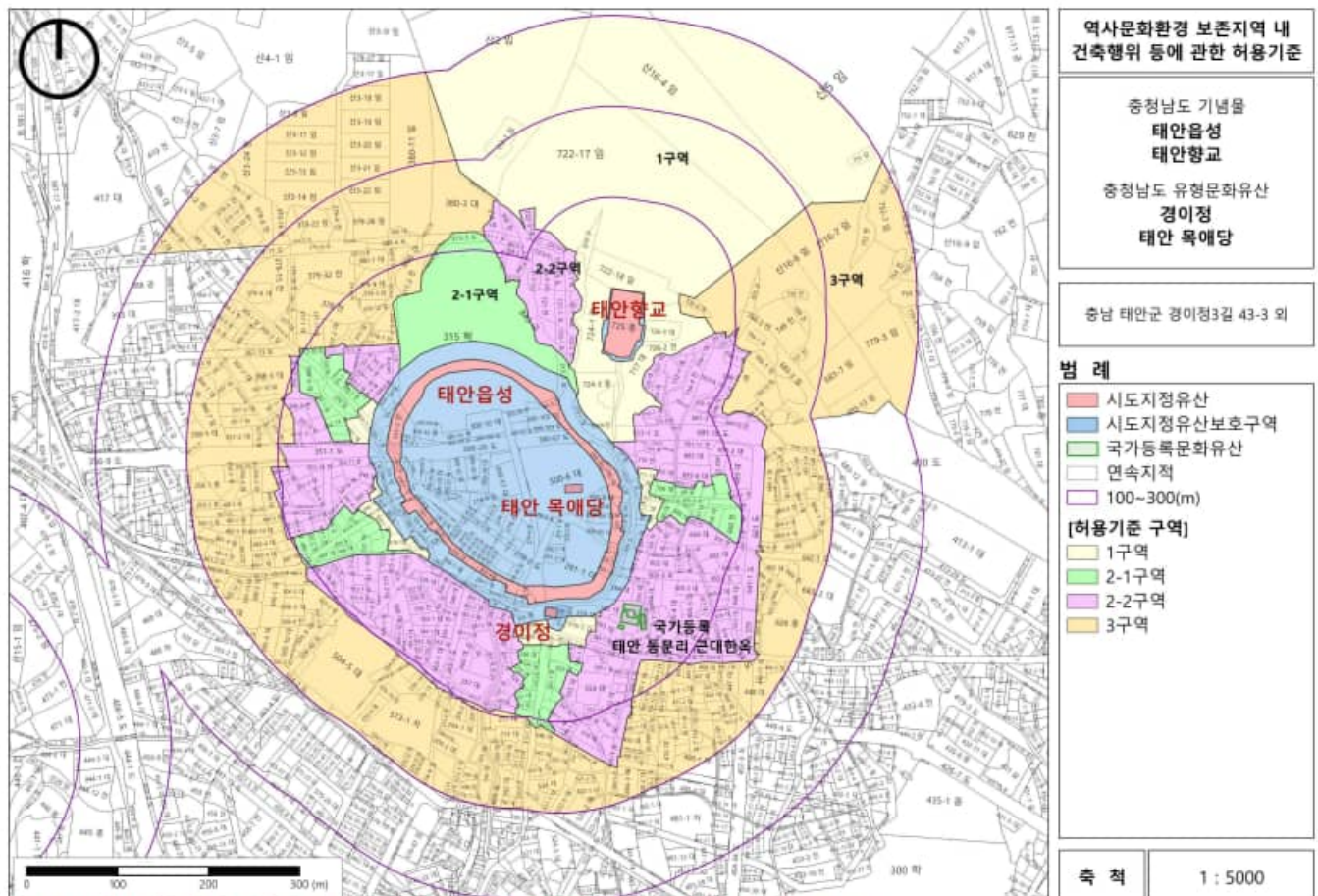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개별검토	
2구역	2-1	최고높이 5m 이하	최고높이 7.5m 이하
	2-2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2-3	최고높이 14m 이하	최고높이 18m 이하
3구역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개별검토 대상>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땅깍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지하 50m 이상 굴착 행위는 개별 검토함. <참고사항>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상위지역 기준을 적용함. (예: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매장유산 유존지역 발굴행위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충청남도 지사와 사전 협의함.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붙임 54. 태안읍성 등 4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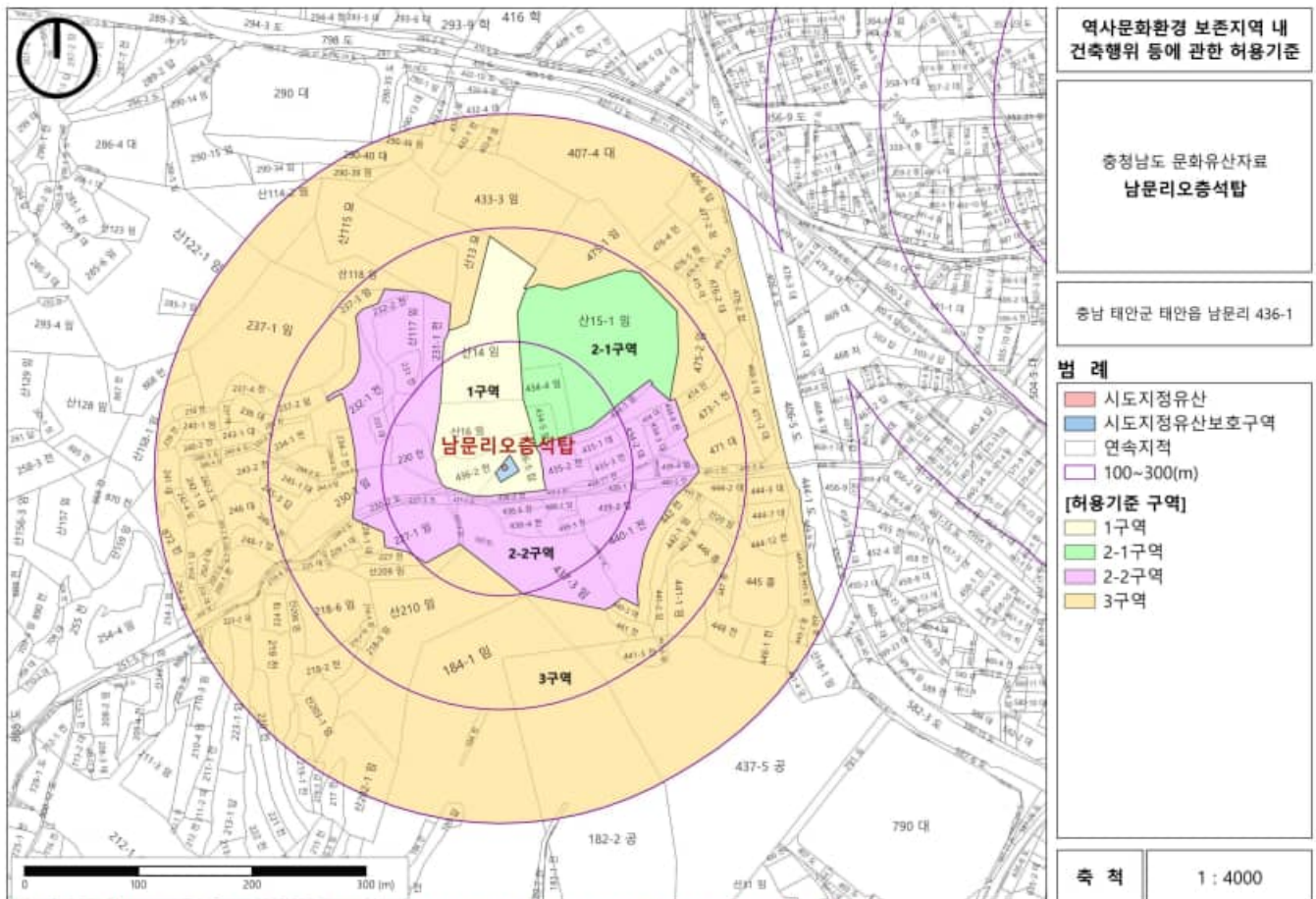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개별검토	
2구역	2-1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2-2	최고높이 11m 이하	최고높이 15m 이하
3구역		태안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개별검토 대상>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축죽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땅깁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지하 50m 이상 굴착 행위는 개별 검토함. <참고사항>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상위지역 기준을 적용함. (예: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매장유산 유존지역 발굴행위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충청남도 지사와 사전 협의함.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붙임 55. 남문리 오층석탑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개별검토	
2구역	2-1	최고높이 5m 이하	최고높이 7.5m 이하
	2-2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태안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개별검토 대상>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땅깍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지하 50m 이상 굴착 행위는 개별 검토함. <참고사항>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상위지역 기준을 적용함. (예: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매장유산 유존지역 발굴행위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충청남도 지사와 사전 협의함.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